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

박창현·박은정·김경희·이금규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

저 자

박창현, 박은정, 김경희, 이금규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 창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경 희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이 금 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인턴)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05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

발행일 2023년 10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청사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자인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53-4 9337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정부는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을 확대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보 분리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을 하는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만 3-5세 유아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무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된 환경에서 장애영아 무상교육과 장애유아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생애초기부터 평생교육까지 이음새 없이 연결하는 로드맵을 그리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유보통합 시 쟁점이 되는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분석, 해외사례 분석, 유아특수 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모쪼록 국정과제 추진의 기초자료로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자문으로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과 다양한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3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25
3. 연구방법	26
4. 용어의 정의	30
5.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30
6. 선행연구	31
II.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 및 제도 현황	37
1. 관련 정책 및 제도	39
2. 관련 통계	53
3. 해외사례	71
III.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에 관한 의견 분석	97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99
2. 정책토론회 및 자문회의 의견 결과 분석	142
IV. 장애영유아 국가책임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149
1. 정책 방향과 과제	151
2.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로드맵	173
참고문헌	177
부록	183
1. 1차 전문가델파이 조사지	183

2. 2차 전문가델파이 조사지	187
3.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연구 델파이조사 전문가 명단	201



표 목차

〈표 Ⅰ-1- 1〉 선행연구 주요내용	34
〈표 Ⅱ-1- 1〉 유보통합 추진 방향(안)	40
〈표 Ⅱ-1- 2〉 유아특수-장애영유아보육 비교	48
〈표 Ⅱ-1- 3〉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관련 법 및 지침 비교	49
〈표 Ⅱ-1- 4〉 유치원 정교사 및 보육교사 관련 법 및 지침 비교	50
〈표 Ⅱ-1- 5〉 장애영유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배치 기관 및 교사 배치 기준 ..	51
〈표 Ⅱ-1-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유형 차이	52
〈표 Ⅱ-2- 1〉 2022년 장애영유아의 유형별 장애 등록 현황 (’22년 12월 말 기준)	55
〈표 Ⅱ-2- 2〉 시도별 장애등록 영유아의 장애 유형 현황 (’22, 12월 말 기준)	56
〈표 Ⅱ-2- 3〉 2022년 특수교육 및 보육통계에 따른 기관 이용 장애영유아 수	57
〈표 Ⅱ-2- 4〉 2022년 시도 및 기관별 장애영유아 수 및 비율	58
〈표 Ⅱ-2- 5〉 특수교육 및 장애영유아보육 기관 및 이용자 수	61
〈표 Ⅱ-2- 6〉 2023년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영유아 학교 수 및 학급 수	61
〈표 Ⅱ-2- 7〉 연도별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2013~2022년)	63
〈표 Ⅱ-2- 8〉 연도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수 변화 추이	63
〈표 Ⅱ-2- 9〉 유아특수교사 및 보육 특수교사 현황	63
〈표 Ⅱ-2-10〉 2023년 기관유형별·교사자격별 교사 수	64
〈표 Ⅱ-2-11〉 2022년 설립주체별·유형별 특수보육교직원 수	65
〈표 Ⅱ-2-12〉 2022년 특수보육어린이집 유형별 특수보육교직원 분류별 수 ..	65
〈표 Ⅱ-2-13〉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발급 현황 (2015~2021년)	66
〈표 Ⅱ-2-14〉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 (2015~2023년)	66

〈표 II-2-15〉 2023년 특수교육 총예산	67
〈표 II-2-16〉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67
〈표 II-2-17〉 2023년 시도별 공사립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68
〈표 II-2-18〉 2023년 시도별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현황	69
〈표 II-2-19〉 2023년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70
〈표 II-2-20〉 2023년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예산 지원	71
〈표 II-3- 1〉 해외 유보통합/유보분리 국가의 유아특수 및 장애영유아 제도 (관계부처, 법령, 대상연령, 특성)	72
〈표 II-3- 2〉 노르웨이 ECEC 서비스 연령, 학교급, ISCED 단계	75
〈표 II-3- 3〉 청양대학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79
〈표 II-3- 4〉 핀란드의 유치원교사양성 프로그램	83
〈표 II-3- 5〉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형과 지원내용	88
〈표 II-3- 6〉 일본의 장애아 지원 내용	92
〈표 III-1- 1〉 1차,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N=40)	100
〈표 III-1- 2〉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100
〈표 III-1- 3〉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102
〈표 III-1- 4〉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결과표	112
〈표 III-1- 5〉 유보통합의 방향에 관한 분석결과표	114
〈표 III-1- 6〉 교사 자격·양성체계에 관한 분석결과표	116
〈표 III-1- 7〉 기관운영에 관한 분석결과표	120
〈표 III-1- 8〉 자원·재정지원체계에 관한 분석결과표	124
〈표 III-1- 9〉 행정 및 전달체계에 관한 분석결과표	126
〈표 III-1-10〉 법제도에 관한 분석결과표	130
〈표 III-1-11〉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에 관한 분석결과표	133
〈표 III-1-12〉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에 관한 분석결과표	136
〈표 III-1-13〉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에 관한 분석결과표	138
〈표 IV-1- 1〉 정책 우선 순위 및 차순위 정책 과제 요약	151
〈표 IV-2- 1〉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과제 실행 로드맵	173



그림 목차

[그림 Ⅰ-3- 1] 정책핵심관계자 정책토론회 포스터 1차(유아특수계)	28
[그림 Ⅰ-3- 2] 정책핵심관계자 정책토론회 포스터 1차(장애영유아보육계)	29
[그림 Ⅱ-2- 1] 연도별 전체 아동 대비 장애 등록 아동 수 및 비율 추이 (2013-2022년)	53
[그림 Ⅱ-2- 2] 연도별 전체 영유아 대비 장애 등록 영유아 수 및 비율 추이(2013-2022년)	54
[그림 Ⅱ-2- 3] 연도별·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수(2019-2023년)	59
[그림 Ⅱ-2- 4]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영유아) 신청자 및 배치자 수(2014-2023년)	59
[그림 Ⅱ-2- 5] 2022년 시도 및 보육기관별 장애영유아 수	60
[그림 Ⅱ-2- 6] 2022년 설립주체별·유형별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현황	62
[그림 Ⅱ-3- 1] 대만의 유아특수교사자격 취득 과정	78
[그림 Ⅲ-1- 1]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결과 LFF	113
[그림 Ⅲ-1- 2] 유보통합의 방향에 관한 분석결과 LFF	115
[그림 Ⅲ-1- 3] 교사 자격·양성체계에 관한 분석결과 LFF	119
[그림 Ⅲ-1- 4] 기관운영에 관한 분석결과 LFF	123
[그림 Ⅲ-1- 5] 재원·재정지원체계에 관한 분석결과 LFF	125
[그림 Ⅲ-1- 6] 행정 및 전달체계에 관한 분석결과 LFF	129
[그림 Ⅲ-1- 7] 법제도에 관한 분석결과 LFF	132
[그림 Ⅲ-1- 8]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에 관한 분석결과 LFF	135
[그림 Ⅲ-1- 9]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에 관한 분석결과 LFF	137
[그림 Ⅲ-1-10]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분석결과 LFF	138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필두로, 돌봄 정책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함. 하지만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의 분리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을 하는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의 격차가 있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3-5세 유아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의무교육에서 중요한 양질의 교사 배치와 학급 구성 및 예산 지원 등의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권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통한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필수적임. 유보통합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 환경과 체제 개편을 하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자 함.
- 유보통합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조기중재 측면에서 특히 중요함. 만 0-2세를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의무교육에서 중요한 양질의 교사 배치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격차를 해소해야 함.
- 현재 동일연령 만 3-5세 유아들은 교육부 소속인지, 보건복지부 소속인지에 따라 통계 산출이 달리 되어 정책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우며 장애 유형을 통합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음. 또한 전달체계가 연계되지 않아 생애 초기부터 초등 직전까지 건강, 의료, 교육, 보육서비스가 분절되어 있음. 더불어 장애영유아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측면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격차를 줄여 교육부 내에서 통합을 해야 함. 이때 생애주기별 장애영유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을 고려하여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음.
- 장애영유아 교육권 확보와 교육과 돌봄이 초등교육까지 이음새 없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비장애 영유아와의 완전통합 교육이 가능한 유보통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특수교육분과를 만들어 장애영유아 종합지원대책 연계, 장애발견 초기부터 치료, 교육, 방과후돌봄까지 연결되는 더 나은 체계

마련이 필요함. 하지만 현재 유보통합 추진방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방향이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연구가 시급해 보이며, 초등교육 및 방과후 돌봄과 연계하여 장애영유아 통합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된 환경에서 장애영아 무상교육과 장애유아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생애초기부터 평생교육까지 이음새 없이 연결하는 로드맵을 본 연구에서 마련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유아특수 및 장애영유아 관련 기관(시설), 교사(자격 등), 법 제도 등에 관한 선행연구 및 현황/실태를 분석함.
- 유보통합시 유아특수교육과의 연계, 필요한 인력 및 수급계획,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체계 분석,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 분석 등을 실시함. 이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 시 지원체계와 시설, 법, 초등 취학(유예) 전달체계 등의 구체화된 로드맵을 제공함.
- 유아특수 및 장애영유아 영역에서의 주요 쟁점 및 이슈를 분석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이슈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해결점을 모색함.
- 전문가 의견 조사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유보통합 구체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요구 및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정책 방안을 제안함.
- 장애영유아 및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국가책임교육 강화방안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함.

다.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연구설계 및 연구 결과 타당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함.
 - 유아특수 및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의 배경 및 법 제도, 통계 현황 정리를 통하여 이론적 고찰을 함. 특수교육통계, 보육통계, 장애인통계, 교육통계 등을 분석하여 장애영유아 현장의 현황을 파악함.

- 해외 7개국(유보통합/유보분리 국가)의 유아특수 및 장애영유아 제도의 특징을 분석함.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각국의 특성을 알아보고, 국내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함.
- 연구설계 및 연구결과 타당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함.

□ 전문가 의견조사

- 유보통합 시 쟁점이 되는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유아특수 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2회 실시함. 유아교육, 보육, 특수교육, 장애영유아보육 전문가 등 40명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 연구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진행을 통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정책핵심관계자 정책 토론회 개최

- 학계, 행정가, 현장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쟁점과 갈등, 해결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공개 발표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유보통합은 이슈 자체가 예민하여 유아특수와 장애영유아 보육 간 정책핵심관계자들의 입장이 크게 달라 갈등수준도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유아특수계와 장애영유아보육계의 핵심관계자 대상 토론회를 각각 따로 개최함.

라. 선행연구

□ 장애영유아 관련 선행연구

-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외(2021a)는 장애영유아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적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와 정책 전략을 제안함.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능 역량의 강화와 치료 재활 서비스의 국가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함.
- 서해정, 박경애, 이선화(2021)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전산관리시스템

에 활용할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해 주요 사업평가지표를 전산관리시스템 안에 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김동일, 이주영, 안예지(2022)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효과성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및 욕구 실태를 분석하고 발달재활서비스 효과성 지표 개발 및 성과 분석 제언,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의 주요 개선방향을 제시함.
- 석말숙, 최진희, 강정배 외(2022)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기능에 따른 공적 및 유관기관과의 전달체계 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역장애 아동지원센터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전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황주희, 이한나, 김현승 외(2022)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포괄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애아동 지원 체계의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센터 설치 방식을 도출하고자 함.
- 강은진, 권미경, 박창현 외(2022)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교사들이 조기 선별해 필요한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조기선별 검사 도구와 교사 지원 안내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함.

2.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 및 제도 현황

가. 관련 정책 및 제도

□ 국가책임 유보통합 정책

-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가교육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유보통합 정책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하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유아특수-장애영유아보육 관련 정책과 제도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아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아동과 비교하여 동등한 교육 및 지원

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아동 통계의 통합을 통해 기관 유형의 차이에 관계없이 장애아동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장애유형에 대한 항목의 차이 해소 등)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통계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수교육통계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됨.

나. 관련 통계

□ 장애영유아 현황

- 2022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수는 만 2세 이하 영아 1,103명, 만 3-5세 8,131명으로 총 9,234명이었음.
- 장애 유형별로 구분한 통계를 살펴보면, 뇌병변 27.73%, 자폐성 22.88%, 언어장애 18.69%로 나타남.
- 지역별로 구분한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2,509명, 서울에 1,369명, 경남에 685명의 장애아동이 등록되어 있었음.
- 2023년 4월 1일 기준 교육부 산하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수는 9,188명으로 다음과 같음. 특수학교(유치원)를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수는 1,069명, 유치원 특수학급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 수는 5,676명, 유치원 전일제 통합학급에는 2,149명,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 중인 영아는 294명임.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수는 13,315명으로 다음과 같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는 6,170명, 장애 통합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는 6,143명, 일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영유아는 1,002명임.

□ 기관 및 교사 현황

- 2023년 기준 교육부 산하의 특수교육 기관은 총 2,685개로 특수학교(유치원) 169개 중 영아 대상은 31개, 유치원 특수학급은 1,539개, 일반학급인 전일제 통합학급은 1,407개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97개(장애학급, 교육지원 참여 장애영아, 순회교육 지원 장애영아)임.

-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은 총 2,371개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177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1,393개, 장애아 보육을 하는 일반어린이집이 801개임.
- 2023년 기준 교육부 산하의 교사는 총 1,505명으로 특수학교(유치원)의 특수학교 1급 정교사가 281명, 특수학교 2급 정교사가 94명, 일반교사가 7명임. 유치원(일반학교)의 특수학교 2급 정교사가 654명, 특수학교 1급 정교사가 836명, 일반교사가 69명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가 142명, 특수학교 1급 정교사가 202명, 일반교사가 4명임.
-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교사는 총 2,190명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특수교사가 906명, 치료사가 553명, 보육교사(장애아반)가 1,212명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는 599명, 치료사는 101명, 보육교사(장애아반)는 1,490명임.

□ 유아특수 및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예산 현황

- 2022년 기준 전국 공립유치원 지원은 평균 1인 최고지원액이 173천원, 사립유치원은 평균 1인 최고지원액이 472천원임.
- 2023년 장애아 보육 예산 지원은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1인당 월 559천원이고, 기관보육료는 장애아 1인당 장애아반 월 559천원, 장애아 방과후반 월 557천원이 지원됨.

다. 해외사례

□ 유보통합 국가

- 스웨덴, 노르웨이, 대만, 핀란드는 유보통합 국가로 대상연령은 모두 0-6세임. 관계부처, 법령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스웨덴: 주무부처는 교육부이고, 학교법을 따르고 있으며 부모가 preschool, family day care, staying at home을 선택할 수 있음.
 - 노르웨이: 주무부처는 교육연구부이고, 유치원법을 따르고 있음. 원비에 대한 부모부담상한제가 있으며 유치원법에서는 1세 이상 모든 아동의 유치원 입학권을 보장하면서 장애아동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입학 우선 순위를 허용함.
 - 대만: 관계부처가 교육부이고, 특수교육법을 따르고 있으며, 유아특수교사는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을 모두 전공해야 하고 자격 취득 시험으로 교

사자격관리가 철저함.

- 핀란드: 관계부처는 교육부이고, 기초교육법을 따르고 있으며, 유아교육자들이 포괄적인 통합교육 교수법을 배우는 것이 특징임.

□ 유보분리 국가

- 프랑스, 미국, 일본은 대표적인 유보분리 국가로 주무부처, 법령, 대상연령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프랑스: 복지부, 교육부에서 모두 0-6세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법을 따름. 독립적 원스톱 창구인 MDPH를 중심으로 종합사정 체계를 구축함.
- 미국: 복지부에서는 만 0-2세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부에서는 만 3-6세를 대상으로 함. 모두 장애인 교육법을 따르며 연령에 따른 법제가 세분화되어 있음.
- 일본: 내무성에서는 만 0-2세를 대상으로, 문부성에서는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은 ‘보육소보육지침’과 ‘유치원을 위한 교육요령’이라는 교육과정을 적용함. 문부성에서는 만 0-5세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인정어린이원을 운영중임. 모두 아동복지법(보육소), 학교교육법(유치원) 법령을 따르고 있음.

□ 시사점

- 유럽국가들은 유아교육의 질을 우선시 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가 교육부 단일 부처로 이관되었음. 그러나 교육과 보육 서비스는 연령, 영유아의 발달 특성, 영유아가 속한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영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 이는 교육과 보육의 분리가 아닌 통합적 개념을 통해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 조사한 선진국에서는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영유아에게 제한이 있는 공적 지출을 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수당과 유급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유아교사자격은 대부분 3-3.5년의 교육기간을 요구하나 특수교사의 경우는 일반교사 자격 취득 후 시험을 치루거나 상위과정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또는 분리 운영 국가 모두 장애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있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의 자격 조건, 교사교육,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장애영유아와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 운영과 기관의 유형과 상관없이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지원되어야 함.

3.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에 관한 의견 분석

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 조사 개요

- 응답자 특성
 - 유아특수-장애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 40명을 선정함. 선정된 전문가 패널 40명은 유아특수-장애영유아 관련 연구 경험자, 관련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현장 전문가,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등으로 구성됨. 유아특수/유아교육 전문가 20명, 장애영유아보육/보육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함.
 - 응답자 40명의 성별은 여성 35명(87.5%), 남성 5명(12.5%)이며 소속은 학자 및 교수 19명(47.5%), 현장 전문가 14명(35.0%), 행정가 5명(12.5%), 기타(부모대표 등) 2명(5.0%)임.
- 조사절차 및 조사지 내용 구성
 -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유보통합의 주요 요소와 정책대안에 개방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 동안 1차 조사가 진행됨.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 교사자격·양성체계, 기관 운영, 재원·재정지원 체계, 행정체계, 법제도,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 참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디지털 인프라 개발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문항에 대해 e-mail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짐.
 -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제시된 조사항목에 대한 양적 의견 조사로 문항에 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동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함. 2023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일 동안 2차 조사가 진행되었음.
- 조사방법 및 통계처리

-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하였고, 질적분석을 통해 2차 전문가 델파이 문항을 추출함.
-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평균, 내용타당성 비율, 변이계수를 도출함. 전문가 델파이의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각각의 평균과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문항으로서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교차하여 LEF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결과

-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

-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12개 항목 중, 유보통합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5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만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법적 당위성 실현, 둘째, 장애영유아의 교육권/교육평등성 보장, 셋째, 교육-보육-특수분야 공공성 강화, 넷째, 특수교육대상자/발달 지연 아동 증가, 다섯째,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임.
- 유보통합의 방향에 해당하는 16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4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영유아 실태조사(통계자료) 통합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둘째,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해소(치료지원비, 통학비 등), 셋째,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초등수요조사 및 입학유예자 문제해결, 넷째, 일반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유아특수교육과의 협력적 지원 강화 문항이 해당됨.

- 교사 자격·양성 체계

-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에 해당하는 25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3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4년제 유아특수교사 자격, 양성체계는 현행 유지(별도의 교사양성기관을 마련하기보다 현재 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이 합의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 둘째,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영아 발달, 영아교육 및 지원 등 장애영아 관련 교과목 신설, 셋째, 유아특수교육과 학부 재입학/편입학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한 자격 획득 (지역별 유아특수교육과가 없는 경우, 방통대 유아특수교육과 신설 가능,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경력인정으로 실습기간 단축 가능) 문항이 해당됨.

- 기관 운영

- 기관운영에 해당하는 36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8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유아학교 모델 강화, 둘째, 영아학급 및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지원책 마련(현재 영아학급 영아교실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근거만 있음), 셋째, 기존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방과후과정 제도 개선(지원인력 지원, 방학 등원, 긴급돌봄 등 돌봄운영시간 최적 지원 등), 넷째, 특수학급만의 방과후과정, 긴급돌봄, 돌봄교실이 아닌 통합학급 영유아들과 함께 운영되는 형태를 지향, 다섯째, 연령별 유아특수교사 배치, 여섯째, 일반·특수 공동담임제 운영(서울 더공감교실 참조), 일곱째, 기관장 자격기준에 특수교육과정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 과정 포함, 여덟째, 중도장애 영유아 담당 및 일과 중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배치 필요 문항이 해당됨.

- 재원·재정지원체계

- 재원·재정지원체계에 해당하는 8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4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 지원의 균등화, 둘째, 0-2세 장애 영아 지원(0-2세 장애영아 조기 선별 및 지원 업무 수행 경비 지원체계 마련), 셋째,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통일, 지도점검 동일 적용, 넷째, 특수교육 관련 예산의 각급 유치원 교부 시 목적사업비로 교부 문항이 해당됨.

- 행정 및 전달체계

- 행정 및 전달체계에 해당하는 17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8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 대상자 선정 체계 일원화, 둘째, 장애 조기 선별과 조기 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셋째,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적검사, 추가검사 등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장애조기선별을 위한 진단평가 의무화, 넷째,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지연의심 아동에 대한 교육청 정보 연계, 다섯째, 유아특수교육 행정 담당 전문직 구성(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시 교육청의 특수교육과에 유아특수교육 행정담당 장학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여섯째, 교육부 내 유아교육정책과/국립특수교육원/지역교육청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

치 또는 특수교육정책과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일곱째, 4세대 나이스의 오류 해결 및 유아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 여덟째,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현재 진단평가 접수, 결과지 출력의 기능, 이름검색 불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엑셀로 명부관리 중) 문항이 해당됨.

- 법제도

- 법제도에 해당하는 18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문항은 7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장특법의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 명시, 둘째, 장특법(제 19조 제2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 삭제, 의무교육 제도 재정비,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 셋째,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의 지위 명시(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양자에 모두 자격 기준을 명시), 넷째,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강화,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법안 마련, 다섯째, (가칭) 통합 영유아교육법을 만든다면, 유아특수, 장애영유아 근거조항 반드시 포함, 여섯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진단평가 후 관리 대상자 인원 증가 대비, 행정인력 지원 강화, 일곱째, 지원금 제공과 함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제화 문항이 해당됨.

-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에 해당하는 14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3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깜깜이 유보통합’, ‘답정너 유보통합’이 아닌,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중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활동 필요, 둘째,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유특 전문가 포함, 셋째,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교육, 유아특수 전문가 보완 문항이 해당됨.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에 해당하는 12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5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둘째, 유아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IEP 수립 연구 강화 및 정책적 활성화, 셋째,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 교사용 지도서에는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환경수정 방안 포함, 넷째, UDL(보편적 학습 설계) 관점의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고려, 다섯째,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영역별 삽화 자

료등이 포함된 놀이자료 개발 문항이 해당함.

-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에 해당하는 6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항목 3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이 필요(장애 영역별, 정도별, 특성과 흥미별 맞춤형 개별수업 중심), 둘째, 유아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앱 개발(인공지능 포함), 셋째,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문항이 해당됨.

나. 정책토론회 및 자문회의 의견 결과 분석

□ 장애영유아 보육계 의견

- 정책핵심 관계자

- 유보통합 시 연령별 이원화(0-2세/3-5세)에 반대함. 학문적으로 유아교육 대상자는 0-8세이고, 장애영아가 포함되어야 하며 초중등과의 연계성, 통합적 지원 체계를 고려하여 유보통합 방향성을 설정해야 함.
 - 유보통합 시 의료, 교육, 재활치료 지원이 함께 제공되는 원스톱 시스템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통합 학급을 운영하는 완전통합 방향을 지향해야 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학위제도(국가자격시험, 특수 직무교육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기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는 (가칭)통합교육지원사로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장애전담어린이집의 장점이 재활치료까지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통합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함.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평생교육 관점에서 장애영유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특법, 장복법, 정부조직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함.
- 원장 및 장애영유아 관련 협회(부모단체) 포함
- 연령통합 의견: 조기발견, 조기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연계가 될 수 있

도록 연령을 분리하면 안 됨.

- 연령분리 의견: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영아, 유아로 연령을 분리한 통합을 해야 함.
- 장애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지역은 소규모 통합기관이나 거점 통합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특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중증 장애아) 편성의 개수를 정하여 교사 당 3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을 제안함.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육대학원에서 유아특수학과를 전공하여도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임.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특별양성과정과 같은 형태로 교육부의 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에 낮은 장애인식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유아특수교사 또한 영아보육 관련 보육을 추가 이수하여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유아학교로 설립을 하여 상향 평준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예. 경사로, 엘리베이터, 특수화장실 등 설치).

- 교사

- 장애영유아 교사자격 통합 논의 이전에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통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시험제도를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음.

□ 유아특수교사 측 의견

- 원장 및 장애영유아 관련 협회(부모단체)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장된 교육기관 근거리 배치 원칙을 준수하여 가까운 곳에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들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유아특수교사는 모자라지 않으며 교육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임용되는 교사수가 적기 때문에 유아특수교육기관 확대 및 유아학교 설립을 통한 유아특수교육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실 및 순회교육,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 등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체계가 필요함.

- 학계

- 3-5세 특수교육 대상자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유아수용계획에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어떤 유형의 교육기관에 배치되든 교육지원 내용에 통합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선별과 선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의 선별 과정, 교육기관에서의 선정 과정 등을 통해 선별과 진단에 대한 부모의 충격이나 망설임이 교육의 지연이 되지 않아야 함.
- 유아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학교에 통합을 위한 유아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아특수교사 과정의 선수과목을 듣고 대학원에 입학하여 전공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을 해야 함.

- 교사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있는 중앙부처를 먼저 통합하고 관리 소통체계를 하나로 만든 후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보통합이 시행되어야 함.
- 학급 형태 및 교육과정 운영, 교사 근무형태에 대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특수교육대상 영아교육은 영아를 직접 관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별화 가족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입학절차를 통해 특수교육, 유아교육,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4. 장애영유아 국가책임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가. 정책 방향과 과제

□ 정책우선순위 및 차순위 정책과제 요약

〈표 IV-1-1〉 정책 우선 순위 및 차순위 정책 과제 요약

국가책임교육 기반,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실현	
유보통합의 필요성	유보통합의 방향
- 만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법적 당위성 실현 - 장애영유아의 교육권/교육평등성 보장 - 교육-보육-특수분야 공공성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발달지연 아동 증가 -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 (정책차순위) - 장애영유아의 공교육 확대 및 정착지원(국공립 기관 신증설 등)	-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영유아 실태조사(통계자료) 통합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해소(치료지원비, 통학비 등), -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초등수 요조사 및 입학유예자 문제 해결, - 일반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유아특수교육과의 협력적 지원 강화 (정책차순위) - 초중등과의 연계 강화, 생애주기별 제도 마련 - 유치원(유아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구분	정책 주제	정책과제
교사 자격양성 체계	자격, 양성, 정원 방향	• 4년제 유아특수교사 자격, 양성체계는 현행 유지 •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영아발달, 영아교육 및 지원 등 장애영아 관련 교과목을 신설
	장애영유아보육교 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 획득 방법	• 유아특수교육과 학부 재입학/편입학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한 자격 획득
기관운영	기관유형 및 신설	•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유아학교 모델 강화
	0-2세 장애영아	• 영아학급 및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지원책 마련 (현재 영아학급 영아교실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근거만 있음)
	교육과정/방과후 과 정 운영	• 기존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방과후과정 제도 개선(지원인력 지원, 방학 등원, 긴급돌봄 등 돌봄운영시간 최적 지원 등) • 특수학급만의 방과후 과정, 긴급돌봄, 돌봄교실이 아닌 통합학급 영 유아들과 함께 운영되는 형태 지향
	교직원 배치/운영	• 연령별 유아특수교사 배치 • 일반·특수 공동담임제 운영(서울에서 ‘더글감교실’ 예시) • 기관장 자격기준에 특수교육과정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 과정 포함 • 중도장애 영유아 담당 및 일과 중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배치

구분	정책 주제	정책과제
재원·재정지원 체계	재원·재정지원 체계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 지원의 균등화 0-2세 장애 영아 지원: 0-2세 장애영아 조기 선별 및 지원 업무 수행 경비 지원체계 마련 -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통일, 지도점검 동일 적용 - 특수교육 관련 예산 각급 유치원에 교부시 목적사업비로 교부 (정책 차순위) - 지원금 미지급 규제 마련(에듀파인/나이스 미도입, 감사거부 기관)
	장애조기선별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 대상자 선정 체계 일원화 - 장애조기선별과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적검사, 추가검사 등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장애조기선별을 위한 진단평가를 반드시 의무화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지연의심 아동에 대한 교육청 정보연계 (정책 차순위)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유아특수교사 진단평가 담당자를 두고 장애조기 선별을 위한 '찾아가는 진단평가' 프로그램 운영
행정 및 전달체계	지원센터/지자체-지역교육청/교육부-교육청/부처간 통합 연계	- 유아특수교육 행정담당 전문직 구성(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시 교육청의 특수교육과에 유아특수교육 행정담당 장학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성) - 교육부 내 유아교육정책과/국립특수교육원/지역교육청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또는 특수교육정책과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정책 차순위) - 장애영유아와 일반유아의 학비를 모두 유아학비로 지원하는 법 제도가 필요
	행정 시스템 전문화	4세대 나이스의 오류 해결 및 유아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 -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현재 진단평가 접수, 결과지 출력의 기능, 이름검색 불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엑셀로 명부관리 중) (정책 차순위) - 어린이집 정보공시 장애 영유아를 위한 항목 추가
	법제도	- 장특법의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을 명시 필요 - 장특법(제 19조 제2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 삭제, 의무교육 제도 정비,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 -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의 지위 명시(유아교육법 및 초·중·고등학교 양자에 모두 자격기준을 명시) -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법안 마련
법제도	통합법 마련시	(가칭) 통합법을 만든다면, 유아특수, 장애영유아 근거 조항을 반드시 포함
	정부조직법 개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진단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 인원 증가대비 행정인력 지원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지원금 확대와 함께 회계 투명성 보장을 위한 법제화 필요

구분	정책 주제	정책과제
정책결정과 정/부모 및 국민참여	유보통합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참여 문제	-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중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활동 필요 (정책차순위) -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더라도 함께 하는 토론회가 필요 (정책차순위) - 법적으로 무상 및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 및 간담회 필요 (정책차순위) -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토론회와 YouTube 생중계 진행으로 해당 시간 내에 참여하지 못하는 관련인들(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 자문단, 정책연구기관 의사결정과정 및 구성/대표성의 문제점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유아특수 전문가 포함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교육, 유아특수 전문가 보완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 유아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IEP 수립 연구 강화 및 정책적 활성화 -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사용 지도서에는 반드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환경수정의 방안 포함 - UDL(보편적 학습 설계)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영역별 삽화 자료 등이 포함된 놀이자료의 개발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이 필요(장애영역별, 정도별, 특성과 흥미별 맞춤형 개별수업 중심) - 유아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앱 개발(인공지능 포함) -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정책차순위) -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공학기기 개발

나.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로드맵

□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과제 실행 로드맵

정책과제	추진시기			담당
	단기 (1-2 년)	중기 (5-6 년)	장기 (~10 년)	
①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1-1. 특수교육통계로 일괄 통합, 장애영유아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
1-2. 장애영유아의 초등연계 및 입학유예자 문제해결,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포괄하는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주도의 범부처 협의회 구축				교육부 관계부처합동
1-3. 0-5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법제화를 통한 교사지원, 지원금 의무화				교육부 시·도교육청
1-4. 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특수교육대상자 재정의, 법령 등) 정비 및 재정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교육부 시·도교육청
1-5. 0-2세 장애영아 교육과 돌봄 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				교육부 시·도교육청
1-6. 0-2세 장애영유아 부모의 가정교육 및 부모교육(어머니 무류학교) 강화, 자녀양육수당과 유급 육아휴직제도 안착				교육부, 관계부처합동
② 교사 자격양성 체계				
2-1. 현행 자격과 양성체계를 유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의 교원 자격을 획득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교육부
2-2. 0-5세 (영)유아학교 교원 정원, 자격, 처우 등에 관한 정책 연구 및 구제안 마련				교육부
2-3.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영아발달, 영아교육 및 지원 등 장애영아 관련 교과목을 신설				교육부
③ 기관 운영				
3-1.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영)유아학교 모델 강화				교육부
3-2. 영아학급 및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지원책 마련				교육부
3-3.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제도 개선				교육부 시·도교육청
3-4. 특수학급만의 방과후 과정, 긴급돌봄, 돌봄교실이 아닌 통합학급 영유아들과 함께 운영되는 형태 지향				교육부 시·도교육청
3-5. 연령별 유아특수교사 배치, 일반·특수 공동담임제 운영(서울에서 '더공감교실' 예시)				교육부
3-6. 기관장 자격 기준과 연수과정에 특수교육과정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 과정 포함				교육부 시·도교육청
3-7. 중도장애 영유아 담당 및 일과 중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배치				교육부 시·도교육청

정책과제	추진시기			담당
	단기 (1-2 년)	중기 (5-6 년)	장기 (~10 년)	
④ 재원·재정지원 체계				
4-1.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 지원의 균등화				교육부 시·도교육청
4-2. 0-2세 장애 영아 지원: 0-2세 장애영아 조기 선별 및 지원 업무 수행 경비 지원체계 마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4-3.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통일, 지도점검 동일 적용, 특수교육 관련 예산 각급 유치원에 교부시 목적사업비로 교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⑤ 행정 및 전달체계				
5-1.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대상자 선정 체계 일원화				교육부 시·도교육청
5-2. 장애조기선별과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교육부
5-3.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적검사, 추가검사 등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장애조기선별을 위한 진단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교육부
5-4.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지연의심아동에 대한 교육청 정보연계				교육부 시·도교육청
5-5. 교육부-교육청 내 유아특수교육담당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시·도교육청
5-6.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교육부
⑥ 법제도				
6-1. 장특법에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기준 명시 필요				교육부
6-2. 장특법(제 19조 제2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 삭제, 의무교육 제도 재정비,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				교육부
6-3.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의 지위 명시				교육부
6-4.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법안 마련				교육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6-5.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진단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 인원 증가대비 행정인력 지원 필요				교육부 시도교육청
⑦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7-1.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중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활동 필요				교육부
7-2.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추진단에 유아특수 전문가 보완 및 포함				교육부
⑧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8-1.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제도화				교육부
8-2. 교육과정/IEP 수립연구 강화, IFSP 실행 근거 확보				교육부

정책과제	추진시기			담당
	단기 (1-2 년)	중기 (5-6 년)	장기 (~10 년)	
8-3.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사용 지도서에는 반드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환경수정의 방안)				교육부
⑨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9-1.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 필요				교육부
9-2. 유아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앱 개발(인공지능 포함)				교육부
9-3.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교육부
(재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 시·도 자체 예산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청
(법령) 장특법, 유아교육법, 통합법 등 제·개정				교육부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용어의 정의
- 05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 06 선행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 정부는 유보통합을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1단계('23~'24)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을 마련하며, 2단계인 '25년 이후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합하고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교육부, 복지부, 2023).

2023년 12월 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 사무의 교육부 이관이 확정되었고,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합법 등을 개정하여 나머지 영유아보육 업무의 이관 준비를 하고 있다(교육부, 2023c, pp. 6-12).

유보통합 정책은 20대 대통령 선거의 양당 대선 공약이었으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84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46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으로 다루어졌다(교육부, 복지부, 2023, p.3).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을 통해 장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는 교육 및 돌봄 기회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교육부, 2023c, p. 4).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30일 정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서도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룰 때, 장애영유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였다(교육부, 복지부, 2023, p. 8).

정부는 저출생 위기 및 영유아 교육·돌봄의 획기적 변화 요구, 이원화 체계에서 기관 선택에 따른 차이가 아동 간 격차 해소, 초등 취학전 교육·돌봄 격차 누적 해소,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 교육·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에게 맞는 질 높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유보통합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교육부, 복지부, 2023, pp. 1-2).

정부가 제시한 이상의 유보통합의 추진 배경에 모두 동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5세 유아의 교육 평등성의 확보와 교육개혁으로서의 유보통합, 의무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 3-5세 유아의 교육기본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유보통합은 의미있는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는 지역이나 성별, 장애, 소득수준 등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특히 장애영유아의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체계 접근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며, 모든 장애아동은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현재 3-5세 어린이집에 소속된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어 교육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특히 의무교육에서 중요한 양질의 교사 배치와 학급 구성 및 예산 지원에서 그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유보통합을 통한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 환경과 체제 개편을 하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재편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체제 개편의 과정에서 유-보 분리 체제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영유아를 위한 정책 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3-5세 장애 유아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통계도 관리된다. 이에 동일연령의 정책 대상자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힘들고, 장애 유형도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유보 분리로 장애 영유아 지원 전달체계도 연계되지 않아, 생애 초기부터 초등직전까지 건강, 의료, 교육, 보육서비스가 분절되어 있다.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에서 이미 차별이 존재하므로, 차이로 발생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장애영유아 종합지원체계를 고려하며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2023. 1. 30)(교육부 보도자료, 2023. 1. 30일자)에도 장애영유아에 관한 유보통합 방안이 필요함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영유아 의무교육과 국가책임 방안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 상태이므로, 현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한 갈증이 높은 상태이다.

교육부-교육청 단위로 어린이집이 이관된다면 특수교육대상자 중심의 영유아 체제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강화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유아 공교육 체제

하에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교육 내용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유보통합 정책을 통해 유보 분리 체계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3-5세 장애유아에게 의무교육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유보통합을 통해 조기중재의 교육적 측면을 강화하고, 0-2세 영아를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양질의 교사 배치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영유아에 누려야할 교육권을 되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부는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현장 TF'를 운영하여 유보통합에 따른 특수교육 종합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쟁점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관련 양성과정은 4년제 이상 학과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방법 검토 및 장애조기 발견과 조기개입으로 인한 장애영유아 치료 및 발달지원 등을 검토하고 하며 질 높은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2023).

유보통합에서는 특히 장애영유아 교육권 확보와 교육과 돌봄이 초등교육까지 이음새 없이 연결되며, 비장애 영유아와의 완전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발견 초기부터 치료, 교육, 방과후 돌봄에 이르기까지 장애영유아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유보통합과정에서 장애영유아 정책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특수교육본과를 만들어 비장애 유아 정책과 통합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가장 좋겠으나, 아직까지는 장애영유아에 관한 그림이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생애초기부터 평생교육까지 이음새 없이 연결하는 정책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된 환경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과 장애영아 무상교육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특수 및 장애영유아 관련 기관(시설), 교사(자격 등), 법 제도 등에 관

한 선행연구 및 현황/실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유보통합시 유아특수교육과의 연계, 필요한 인력 및 수급계획,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체계 분석,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 분석 등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 시 지원체계와 시설, 법, 전달체계 등의 자료들은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유아특수 및 장애영유아 영역에서의 주요 쟁점 및 이슈 분석을 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이슈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해결점을 모색하였다.

넷째, 전문가 의견 조사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유보통합의 구체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며, 수렴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장애영유아 및 장애위험 유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국가책임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분석

연구설계 및 연구 결과 타당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며, 유아특수 및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의 배경 및 법 제도 및 통계 현황 정리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특수교육통계, 보육통계, 장애인 통계, 교육통계 등의 분석을 통해 장애영유아 현장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해외 국가들(유보통합/유보분리 국가)의 유아특수 및 장애영유아 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각 국의 특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나. 전문가 의견 분석

유보통합 시 쟁점이 되는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유아특수 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유아교육, 보육, 특수교육, 장애영유아보육 전문가 등 4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정책 우선순위와 차순위를 도출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연구 수행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진행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라. 정책 핵심관계자 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 행정가,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쟁점과 갈등, 해결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였다.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계와 장애영유아보육계 간의 입장이 크고, 갈등수준도 높아져서, 연구진은 유아특수교육계와 장애영유아보육계의 핵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따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이야기를 보다 충분히 경청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고 깊게 들을 수 있었다. 연구진은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유아특수교육계와 장애영유아보육계의 이야기를 각각 충분히 경청하면서도, *튜브 영상 송출을 통해 대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연구진은 실시간 댓글창과 게시판을 통한 과감없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였다. 아래 제시된 2개의 정책 토론회는 모두 육아정책연구소가 기획하고, 주관하였으며, 관련 단체들과 협업하여 함께 진행하였다. 2회 토론회 내용과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3-1] 정책핵심관계자 정책토론회 포스터 1차(유아특수계)

2차 KICCE 정책토론회

릴레이 토론회 2차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 !

2023. 7. 28.(금) 15:00 - 18:00 | 국회 제5간담회의실

주최 ①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주관 ①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육아정책연구소

후원 ① 교육부, 실천교육교사모임, 육아방송,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유아특수학교장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국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단체명 가나다순)

참석 ① 대면, 비대면 유튜브 송출 <육아정책연구소_KICCE (<https://www.youtube.com/watch?v=TiPztYU9l2g>)>

행사일정

시간	세부내용
14:30~15:00	현장 참여 입실 완료 및 유튜브 접속
15:00~15:10	개회/국민의례
15:10~15:40	 인사말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정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축하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동용 국회 교육위 의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회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15:40~15:50	사진촬영 및 휴식
15:50~17:10	발제 및 토론 좌장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주제발표 1 김경민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주제발표 2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주제발표 3 박신영 경기도 교육청 장학관 주제발표 4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념 및 선정 배치에 대한 논의 ②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에 대한 토론 ③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과 행정정책 정책 제안 ④ 장애영아 학급운영에 관한 실태 및 개선방안
17:10~18:00	 종합토론 이은미 청주 오름벚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연합회 회장 신인수 수도사랑의 학교 교장 정길순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연구관
18:00	마무리 및 폐회 토론회 3차 진행을 위한 릴레이 전달식(→ 전국국립유치원교사노조)

참고 1: 위의 토론회는 모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기획하고, 주관하였음.

참고 2: <https://www.youtube.com/watch?v=TiPztYU9l2g>

[그림 I-3-2] 정책핵심관계자 정책토론회 포스터 1차(장애영유아보육제)

KICCE 토론회 3차 : 자담회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

2023. 10. 13.(금) 10:00 - 12:00 | 포스트타워 1006

주 최 ❶ 육아정책연구소
참 석 ❷ 대면, 비대면 유튜브 송출 <육아정책연구소 TV>

[10:00-12:00] 행사일정

사회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대담자 »

-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
- 원종례 한경국립대학교 유아특수보육학과 교수
-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 이해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연구관

이야기 주제 »

1.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
2. 교사자격·양성체계
3. 기관 운영
4. 재원·재정지원체계
5. 행정체계
6. 법제도
7.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8.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

[12:00-12:05] 폐회 및 사진 촬영



참고 1: 위의 토론회는 모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기획하고, 주최하였음.

참고 2: <https://www.youtube.com/watch?v=Npx8JUa4M6w>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크게 ‘유아특수교육’과 ‘장애영유아보육’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아특수교육(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은 취학전 장애아동 및 장애의 위험이 높은 아동의 발달과 장애아동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장애영유아보육’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유아’라는 표현을 취학전 장애영유아(아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국가교육책임’, ‘국가책임교육’은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통해 더 나은 교육과 돌봄 체제로의 개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5.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의 범위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보고서가 발간되는 시점까지 정부의 유보통합 관련 국가 재정투자계획,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 개선 방안 등에 관한 큰 그림이 확정되어 제시된 바가 없어, 연구진이 유아특수-장애영유아보육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에 자료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회 행안위 공청회 때 정부가 일부 발표한 2023년 11월 버전의 통합모델 시안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그러나 이는 확정안이 아니므로, 방향성 정도로 이해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본 연구의 범위는 유보통합 정책에 중점을 두므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나, 지역사회 연계 등의 내용은 깊이 다루지 않았다. 교육부, 교육청으로의 이관 시 학교교육 내에서의 통합 방안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6. 선행연구

가. 장애영유아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유아특수교육 및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김동일, 이주영, 안예지(2022)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및 욕구 실태를 분석하고, 발달재활서비스 효과성 지표 개발 및 성과 분석 제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의 주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실태 조사 분석 결과, 지자체에서는 지침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매년 현장 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지자체에서 예산 관련한 실적은 파악을 하고 있었으나, 세부 이용실적은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제공기관 관리기구 구축, 지역사회 기반 발달재활서비스 코디네이터 배치, 정보 접근성 및 제공인력 활용 효율성 증대를 통한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직접 서비스 지원과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획기적 예산 확대,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과 이용자 확대를 제안하였다.

석말숙, 최진희, 강정배 외(2022)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기능에 따른 공적 및 유관기관과의 전달체계 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역장애 아동지원센터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전문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80% 정도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는 반면, 장애 발생가능성이 있는 비장애 아동의 장애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구별되는 서비스가 있다. 이에 발달이 지연된 아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아이발달지원단'을 통해 발달지연아동을 지원하고, 장애 등록 이후에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통합 운영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전문인력 투입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경력 산정, 급여, 근로조건 등을 높여야 함을 함께 주장하였다.

황주희, 이한나, 김현승 외(2022)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포괄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애아동 지원 체계의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센터 설치 방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에서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정보 수집·관리·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아동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의 장애 진단 이후 장애아동 가족이 경험하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가족 간 갈등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돌봄 부담 경감, 가족 갈등 완화, 상담 및 개입 등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개별 가족 계획의 수립과 지원을 위한 전문 계획 수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아동 가족이 겪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때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때는 센터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외(2021a)는 장애영유아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적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와 정책 전략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일상에서 장애가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기능 역량의 강화와 치료 재활 서비스의 국가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관차원에서는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육·보육 인프라, 인력 확충,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재정비, 학교 입학 후에도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정차원에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애아동(중증, 경증) 대상 돌봄·양육 서비스 지원 개선 및 질 관리 강화, 장애아동 가족 대상 다양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주장하였다.

서해정, 박경애, 이선화(2021)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의 수행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 욕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맞춰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서비스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며,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차원에서 전담인력과 장애아돌보미 관리, 정보관리, 예산 관리 등을 평가

하고 한다. 구체적으로 매년 기본적인 사업 실적은 시스템으로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평가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 제공과 하위기관에는 사업 운영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평가 결과에 따른 확실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휴식지원프로그램에서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5가지 영역 수행에 대한 평가를 없애고, 기존의 단기적, 일회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의 특성 또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기관의 대표적인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기획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목적인 바를 이루어 내는 성과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추가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 제공과 하위기관에는 사업운영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평가결과에 따른 확실한 지원이 제공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강은진, 권미경, 박창현 외(2022)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교사들이 조기 선별해 필요한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조기선별 검사 도구와 교사지원 안내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장애위험 및 장애 영유아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사각지대 없는 "정책 이음" 출발: 영유아 건강검진 모니터링 체계 보완과 영유아 발달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달체계 간 연계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발달선별검사 (K-SIED)'와 '느린아이와 함께 걷는 러닝메이트 교사지원자료'를 기초로 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장애위험 영유아 및 가족이 영유아건강검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이 관리되도록 3단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또한 특별한 요구에 맞는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트하는 '발달러닝메이트 팀/센터'를 장기안과 단기안으로 구분해 제안하였다. 그리고 장애 영유아와 함께 장애위험 영유아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필요 인프라 확대, 보조교사 지원, 빅데이터를 위한 조기발견 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표 I-1-1〉 선행연구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김동일, 이주영, 안예지(2022)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및 욕구 실태 분석, 발달재활서비스 효과성 지표 개발 및 성과 분석 제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의 주요 개선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효과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향후 발달재활서비스의 질 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타당한 평가 체계를 확립 하고자 함. - 실태 조사 분석 결과, 지자체에서는 지침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었으며, 매년 현장 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음. - 지자체에서 예산 관련한 실적은 파악을 하고 있었으나, 세부 이용실적은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 - 발달재활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제공기관 관리기구 구축, 지역사회 기반 발달재활서비스 코디네이터 배치, 정보 접근성 및 제공인력 활용 효율성 증대를 통한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직접 서비스 자원과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획기적 예산 확대,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영역과 이용자 확대를 제안함.
석말숙, 최진희, 강정배, 우주형, 강지현, 최선아 (2022)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기능에 따른 공적 및 유관기관과의 전달체계 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전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의 80% 정도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는 반면, 장애 발생가능성이 있는 비장애 아동의 장애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구별되는 서비스가 있음. - 발달이 지연된 아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아이발달지원단'을 통해 발달지연아동을 지원하고, 장애 등록 이후에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통합 운영함. - 전문인력 투입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경력 산정, 급여, 근로조건 등을 높여야 함.
황주희, 이한나, 김현승, 심석순, 최복천, 김용진, 김혜수, 김지민 (2022)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포괄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애아동 지원 체계의 현황과 쟁점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센터 설치 방식을 도출하고자 함. - 장애아동 부모들이 봉착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 정보 획득에 관한 것임을 고려할 때,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에서 장애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정보 수집·관리·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조사결과 장애아동에 대한 효과적 개입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아동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아동의 장애 진단 이후 장애아동 가족이 경험하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가족 간 갈등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돌봄 부담 경감, 가족 갈등 완화, 상담 및 개입 등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개별 가족 계획의 수립과 지원을 위한 전문 계획 수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아동 가족이 겪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센터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분	주요내용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1) 개인별 가족 지원 계획 바탕의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신속한 조기중재 2) 방문형 집중 서비스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 개입 3) 발달재활 서비스 이 용을 위한 효율적 지원이라는 핵심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와 같이 다층적 지원(Tiered levels of support)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이용자(아동 및 가족)의 욕구가 개별 특성과 지역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확 인되었음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다층적 개입 체계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센터의 현 실질적 역할 수행 정도와 지역별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이용자 중심의 중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 분절적 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기반 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바일이나 PC를 활용한 정보 제공, 비대면 상담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는 지역별 인프라 차이를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며, 지역 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방문 형태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됨.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병원,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간 네트워크를 읍·면·동 단위로 구축하고, 아동에 대한 조기중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 에 대한 교육, 컨설팅, 슈퍼비전 제공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설문조사와 FGI에서 장애아동가족의 가장 큰 욕구가 센터 내 인력의 전문성 확보로 확인되었음을 고려할 때, 인력의 자격 조건과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 (2021a)	- 장애영유아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적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와 정책 전략을 제안함. -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일상에서 장애가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가능 역량 강화, 치료 재활 서비스의 국가 책임성 강화). - 기관차원에서는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교육·보육 인프라, 인력 확충,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재정비, 학교 입학 후에도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 - 가정차원에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장애아동(중증, 경증) 대상 돌봄·양육 서비스 지원 개선 및 질 관리 강화, 장애아동 가족 대상 다양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서해정, 박경애, 이선화(2021)	- 2022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전산관리 시스템에 활용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내용과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해 주요 사업평가지표를 전산관리 시스템 안에 구성하도록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매년 기본적인 사업 실적은 시스템으로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평가는 3년 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제안함.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 제공과 하위기관에는 사업운영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평가결과에 따른 확실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강은진, 권미경, 박창현, 최윤경, 박혜원, 최일선,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교사들이 조기 선별해 필요한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조기선별 검사 도구와 교사지원 안내 자료를 개발 하여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음.

구분	주요내용
이경옥, 김형미, 양성은, 김영아(2022)	- 사각지대 없는 "정책 이음" 출발: 영유아 건강검진 모니터링 체계 보완과 영유아 발달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달체계 간 연계를 제안함.

자료: 1) 강은진, 권미경, 박창현, 최윤경, 박혜원, 최일선, 이경옥, 김형미, 양성은, 김영아(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1):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2) 김동일, 이주영, 안예지(202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비로소, 서울대학교.

3) 석말숙, 최진희, 강정배, 우주형, 강지현, 최선아(2022).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비로소, 나사렛대학교.

4) 황주희, 이한나, 김현승, 심석순, 최복천, 김용진, 김혜수, 김지민(2022).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비로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2021a).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6) 서해정, 박경애, 이선화(202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지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II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 및 제도 현황

01 관련 정책 및 제도

02 관련 통계

03 해외 사례

II.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 및 제도 현황

1. 관련 정책 및 제도

가. 국가책임 유보통합 정책

1)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배경과 추진과정

장애영유아 관련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선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에 대해서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유보통합 배경과 추진경과 및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보통합 추진 배경

정부는 유아교육진흥법(‘82) 이후, 지속화되었던 유-보이원화 체제를 개선하고자하고 미완의 과제로 지난 30년간 풀지못한 과제로 남아있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의 만 3-5세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유보통합추진방안 발표, 문재인 정부 유-보 격차 완화 정책에 이어, 0-5세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책임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교육부, 2023c, pp. 1-2).

정부는 저출생 위기 및 영유아 교육·돌봄의 획기적 변화 요구, 이원화 체계에서 기관 선택에 따른 차이가 아동 간 격차 해소, 초등 취학전 교육·돌봄 격차 누적 해소,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 교육·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에게 맞는 질 높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유보통합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교육부, 복지부, 2023, pp. 1-2).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을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

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개념화하며, 1단계(‘23~’24)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며, 2단계인 ‘25년 이후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합하고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을 시행하고자 한다(교육부, 복지부, 2023).

2023년 12월 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영유아보육 사무를 교육부로의 이관이 확정되었고,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후 통합법 등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업무의 이관 준비를 하고 있다(교육부, 2023c, pp. 6-12).

유보통합 정책은 20대 대통령 선거 양당 대선 공약이었으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84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46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으로 다루어졌다(교육부, 복지부, 2023, p.3).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을 위해 장애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는 교육 및 돌봄 기회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교육부, 2023c, p. 4).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30일 정부가 제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서도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룰 때, 장애영유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였다(교육부, 복지부, 2023, p. 8).

〈표 II-1-1〉 유보통합 추진 방향(안)

Ⅲ. 유보통합 추진 방향(안)		1단계(23~24)	2단계(25~)
유보통합 정책 개념(안)		■ 차별 없는 격차해소 및 기반마련	■ 교육부 교육청 유보통합 본격 시행
◇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		학부모 단계적 교육·돌봄 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 추진 방향(안)		교사 처우 개선, 자격 양성 체계 개선방안 마련	개편된 자격 양성 과정 적용
비전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시설 안전한 환경 조성	시설 기준 개선안 적용
목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을 지원		△ △	
전략 [1단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해소 및 행정 통합 기반 마련		조직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통합 지원
[2단계]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 본격 시행		재정 재원 이관 및 통합 추진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법령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23)	제·개정 법률 시행

자료: 교육부, 보건복지부(2023. 1. 30). 유보통합 추진방안, p.5.

나) 유보통합 추진 경과¹⁾

2023년 유보통합 정책은 ‘유보통합 추진방안’(2023. 1. 30) 발표 이후, 업무 추진체계 구축, 관련 정책 연구 실시, 각 단계별 정책 과제들이 시행되어왔다. 12월 8일 정부조직법(유보통합)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사실상 중앙부처 단위에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일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 통과 이후, 3개월 까지 정부가 부대의견²⁾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들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게 되면, 6개월 이후 법이 실행될 예정이다. 2023년 유보통합 추진 경과 및 관리체계 일원화, 격차완화, 통합모델 구상에 관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부·복지부,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1.30.)
-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 체계 구축 : 아이행복연구자문단/ 유보통합추진단(교육부)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심의)
- 교원자격 및 양성,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마련 등에 대한 정책연구 실시
-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자 공동선언’ 발표(7.14.) :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7.28.)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0~5세까지 일관되고 연속적 교육·보육정책수립
- 유보통합 우선이행과제와 실천방안 발표(9.13.) :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체감도가 높고 현장 요구가 높은 과제 우선 추진
-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정부조직법 개정안(9.8)국회 제출, 민주당 강병원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11.7) 국회 제출
- 국회 행안위소위, 전체회의(11.23) 통과- 대안 법률안 부의(부대의견 포함), 법사위 진행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8) 본회의 통과 12월 8일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 14차 본회의를 통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정책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실질적으로 6개월 빠르게 달성하고자 함(원래 ‘25년도 예상).

다) 관리체계 일원화

- 2025년부터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우선 추진(중앙→지방)
- 1단계(중앙부처 통합, 지자체와 교육청은 분리 운영) → 2단계(교육청으로 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유지) → 3단계(유치원과 어린이집 완전 통합모델 적용)
- 정원이관 : 복지부·지자체 전입 우선, 업무공백 최소화 위해 파견·교류 적극 활용
- 재원확보 : 현행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하되,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활용 검토
- 지방이관 지원 : 이관 대비 협의체(교육청·지자체 참여) 운영 지원, 4자 실무협의회 등 추진 예정

- 1) 각 내용들은 정부의 유보통합 기본계획(2023. 1. 30) 및 정부조직법 행안위 공청회(2023. 11. 17)에서 교육부가 배포한 유보통합 추진상황(2023. 11)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하여 정리하였음.
- 2) 행안위 위원장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부대의견의 내용은 가.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국가재정투자계획, 나.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사무(조직, 정원 포함), 예산의 이관 방안, 다.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양성계획·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 라.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무상지원 확대 등 학부모 부담 경감 방안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3. 11)

라) 격차 완화

- 선도교육청 : 지역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보육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 시행,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 방안 마련 : 선도교육청 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제시
- 통합정보체계 마련 : 지역별 영유아 및 유치원·어린이집 현황 통계를 제공

마) 통합모델 구상

-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방향을 토대로 교사자격·양성체제개편, 교육과정 개정, 시설·설립기준개선안 마련 추진
- 교사 :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방향 논의
- 시설·설립기준: 기관 운영의 다양성·자율성확보, 학부모 선택권 보장
- 교육과정 : 영유아의 특성과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보장
- 추진 상황 : 연구자문단 논의, 정책연구, 공개포럼 개최 등 추진 중
- 향후 계획 : 2023년 말 시안 마련 → 2024년 의견수렴 및 통합모델 확정 → 2025년 통합모델 현장 적용

2)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 모델(안)의 주요 내용³⁾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 및 유보통합 정책과 함께 연동하기 때문에 유보통합 정책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아직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시안으로 제시된 모델(안)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통합모델 목적 및 성격

통합 모델과 관련하여 정부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모델의 성격을 통합하여 2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로 모델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의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구체안이 제시되어야 보다 충분한 논의가 가

3) 각 내용들은 정부조직법 행안위 공청회(2023. 11. 17)에서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부 아이행복연구자문단. (2023. 11).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 모델(안)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함.

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내의 ‘학교’ 정체성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따라 유지되고 있으며, 유치원도 이미 유아학교로서 기능하고 있다. 혹여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모델이 자칫 무늬만 학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 공공성 높은 유아학교 또는 (영)유아학교 모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향후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II-1-1]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통합모델의 목적과 성격(안)

하나라는 유보통합
두배라는 아이행복

3. 통합모델의 목적 · 성격

현황

유아교육법 제1조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
사항

< 제 1 안 >	< 제 2 안 >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교육 권리 보장 * 부차적 : 보호자의 기관 선택과 이용 지원	영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활동 지원

➡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방향으로 논의 중

주: 위의 자료는 확정안이 아닌 2023년 11월에 논의 중인 시안이므로 향후 바뀔 수 있음.
 자료: 교육부 아이행복연구자문단. (2023. 11).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 모델(안), p. 7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법 공청회 배포자료).

나) 통합모델 유형 및 재산 요건

통합모델의 유형과 재산 요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설립주체를 중심으로 유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통합기관은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도 허용하여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사무가 이관된 후, 통합모델을 논의할 때, 새 모델이 학교체제에서 적어도 사립유치원 만큼의 학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임대가 가능한 어린이집 구조와 임대가 불가능한 자가 소유

의 기존 사인 사립유치원의 형평성의 문제도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재산 요건과 관련된 문제들은 예민한 부분이므로 통합모델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알맞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림 II-1-2]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통합모델 유형 및 재산 요건(안)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배되는 아이돌봄

4. 통합모델 설치(유형, 재산요건)

현황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설립	유아교육법 (§7) 국·공립, 사립	영유아보육법 (§10)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이상 인건비지원), 민간, 가정, 협동조합, 직장어린이집 (이상 미지원)
운영	국공립 위탁 없음	국공립 운영은 대부분 법인 또는 개인위탁
재산 요건	자가(소유) 원칙	임대, 매도 및 담보 가능 (가정·민간 어린이집 부채 비율(50%) 인정)

검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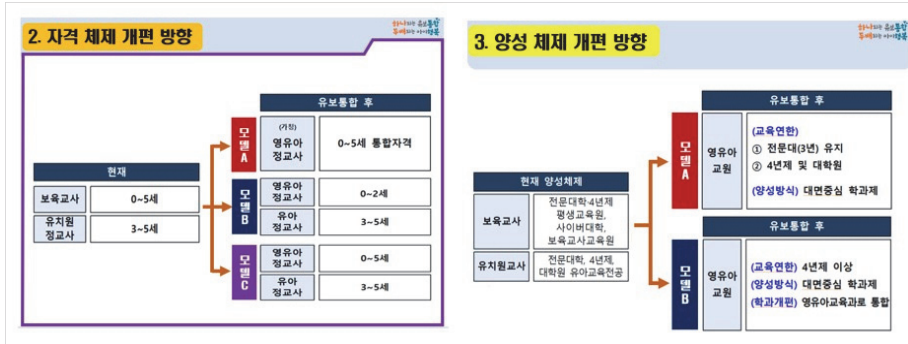
- ❖ **(유형)** 설립주체를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
- ❖ **(재산요건)** 자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허용도 병행하여 검토 중

주: 위의 자료는 확정안이 아닌 2023년 11월에 논의 중인 시안이므로 향후 바뀔 수 있음.
자료: 교육부 아이행복연구자문단. (2023. 11).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 모델(안), p. 8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법 공청회 배포자료).

다)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방향

자격과 양성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정부는 유보통합 대상 연령을 0-5세로 보고 있으므로, 자격과 양성체계도 0-5세 통합교사자격, 양성체계도 0-5세로 통합된 형태의 (가칭)영유아교육과를 구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관모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0-2세를 기존의 돌봄으로 보육할지, 교육할지에 대해서도 보다 충분한 논의가 없다면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현행 체제가 문제가 없다면, 현상은 저항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안으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재원 마련의 문제와 함께 0-2세 영아를 학교제도 하에 포함하게 되었을 때 지자체와의 연계, 대상연령의 교육적 접근 등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II-1-3]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자격양성체계 개편 방향 모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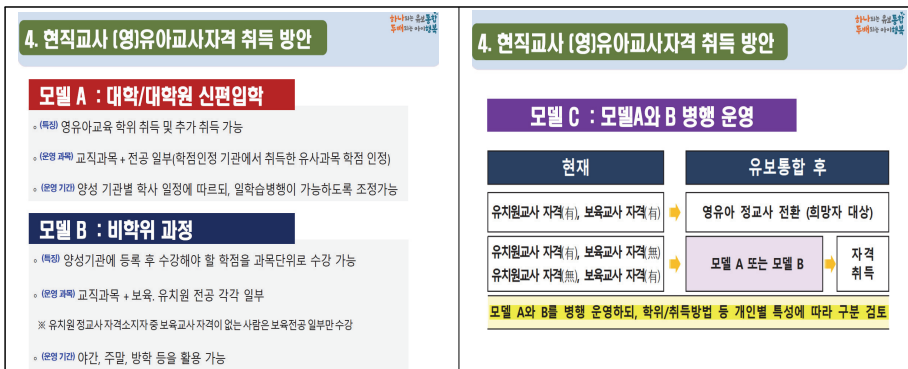


주: 위의 자료는 확정안이 아닌 2023년 11월에 논의 중인 시안이므로 향후 바뀔 수 있음.
 자료: 교육부 아이행복연구자문단. (2023. 11).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 모델(안), pp. 15-16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원 공청회 배포자료).

라) 현직교사 자격 취득 방안

현직교사의 새로운 교사자격의 취득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러 모델을 검토 중에 있다. 이는 대학/대학원 신편입학(모델 A), 비학위과정(모델 B), 모델 C(모델 A와 B병행 운영)이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논의들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향평준화된 교사의 자격과 양성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림 II-1-4]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현직교사 자격 취득 방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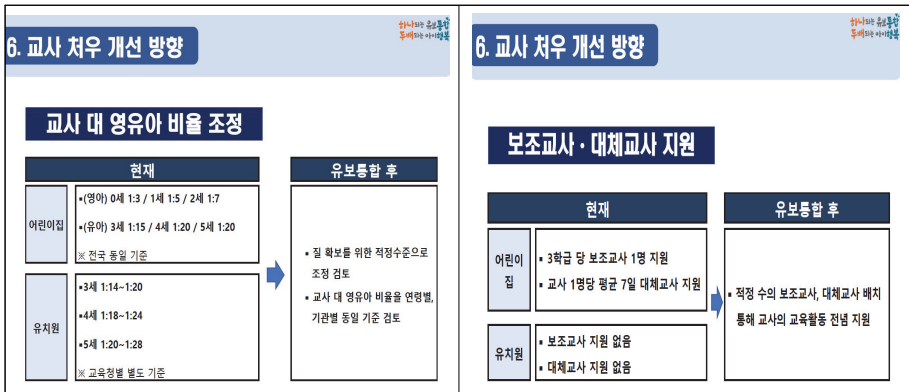


주: 위의 자료는 확정안이 아닌 2023년 11월에 논의 중인 시안이므로 향후 바뀔 수 있음.
 자료: 교육부 아이행복연구자문단. (2023. 11).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 모델(안), pp. 17-18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원 공청회 배포자료).

마) 교사 처우개선 방향: 교사 대 영유아비를 조정 및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정부는 교사처우개선 방향을 교사 대 영유아비를 조정과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과 같은 구조적 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급여나 근로 환경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방향성으로 제시된 바는 없다. 교사 대 영유아비를 조정과 보조교사 지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재원 마련과 기관의 유형에 따라 실행 가능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 수와 연령별, 기관별 통일 기준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II-1-5]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교사 처우개선 방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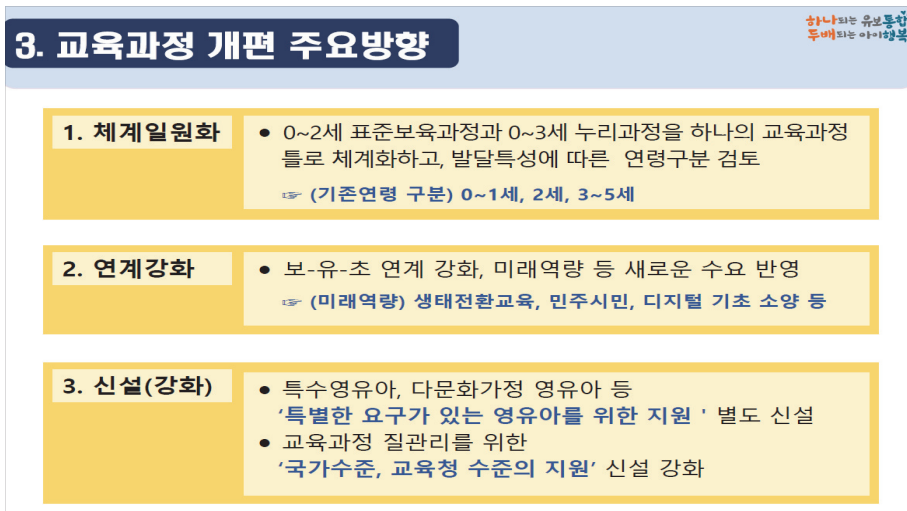


주: 위의 자료는 확정안이 아닌 2023년 11월에 논의 중인 시안이므로 향후 바뀔 수 있음.
 자료: 교육부 아이행복연구자문단. (2023. 11).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통합 모델(안), pp. 21-22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법 공청회 배포자료).

바) 교육과정 개편 방향

정부는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하여 체계 일원화, 연계강화, 신설(강화)을 제시하고 있다. 체계일원화의 경우, 0-2세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을 하나의 교육과정 틀로 체계화하고 발달특성에 따른 연령구분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보-유-초 연계강화, 미래역량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 디지털 기초 소양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특히 특수영유아,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지원을 별도 신설하고, 교육과정 질관리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청 수준의 지원'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1-6]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교육과정 개편 주요방향(안)



주: 위의 자료는 확정안이 아닌 2023년 11월에 논의 중인 시안이므로 향후 바뀔 수 있음.
 자료: 교육부 아이행복연구자문단. (2023. 11).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 모델(안), p. 26.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법 공청회 배포자료).

나.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과 제도

1) 관련 정책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양성과정은 4년제 이상의 대면 중심 학과제로 운영 검토, 둘째,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방법 검토, 셋째,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권리보장을 위하여 특수교사(영유아) 양성확대, 넷째, 장애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정보전달체계 강화, 다섯째, 장애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으로 장애영유아 치료 및 발달지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2023, p. 20).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유아특수교사 양성을 확대하며, 조기발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의 방향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의 의견 차가 존재하므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격과 양성 체계의 상향평준화를 고려하며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II-1-7]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교사 처우개선 방안(안)

5.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검토 방향

1. 양성과정은 4년제 이상의 대면 중심 학과제로 운영 검토

2.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 방법 검토

3.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권리보장을 위하여 특수교사(영유아) 양성 확대

4. 장애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정보전달체계 강화

5. 장애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으로 장애영유아 치료 및 발달 지원

▣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현장TF 운영

- 학계, 학부모단체, 현장교사, 유관행정기관별 교육-보육계 위원 8인으로 구성

- 유보통합에 따른 특수교육 종합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 및 쟁점 협의

상하좌우는 유보통합
동반되는 아이행복

주: 위의 자료는 확정안이 아닌 2023년 11월에 논의 중인 시안이므로 향후 바뀔 수 있음.
자료: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2023. 11).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 모델(안), p. 20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법 공청회 배포자료).

장애영유아보육기관과 특수학교(유치원)은 0-5세를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이원화 체제에서 복지와 교육으로 나뉘어 대상 영유아들의 지원의 차이가 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기관의 차이를 대상자, 입소과정, 교사대아동비율, 교사자격, 교사 인건비 차원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2〉 유아특수-장애영유아보육 비교

구분	장애영유아보육기관	특수학교(유치원)
대상자	장애소견 의사 진단서, 복지카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입소과정	보육통합시스템에 대기 신청	특수교육위원회에서 결정
교사대아동비율	교사 1명당 장애아동 3명	교사 1명당 특수교육대상아동 4명
교사자격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특수학교(초-중등) 정교사 외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교사 인건비	교사 인건비 80% 지원 (20%는 어린이집 부담)	교사 인건비 100% 지원

주: 위의 자료는 확정안이 아닌 2023년 11월에 논의 중인 시안이므로 향후 바뀔 수 있음.
자료: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2023. 11).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 모델(안), p. 19.

48

2) 관련 법과 지침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보육 관련 교사 자격을 비교하기 위해 특수학교 정교사(유치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과 이수과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 유아특수교사는 초·중등교사 및 특수교사와 함께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유치원 교사는 전공과 교직과목을 합해 총 7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유아특수교사는 10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에 더해 24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므로 보육교사의 51학점에 더해 총 75학점이다. 보육교사와 기본 자격을 공유하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에 추가로 8과목만을 더 이수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취득가능하다.

〈표 II-1-3〉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관련 법 및 지침 비교

종류	특수학교 정교사(유치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관련법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5조 법 제22조
내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뉘며,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 받은 사람

자료: 법령을 근거로 연구진이 작성

종류	특수학교 정교사(유치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세부 이수 분야 및 학점	○ 전공과목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2012.8.4.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2012.8.5.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자료: 법령을 근거로 연구진이 작성

〈표 II-1-4〉 유치원 정교사 및 보육교사 관련 법 및 지침 비교

종류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관련법	유아교육법 제22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
내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세부 이수 분야 및 학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가. 교사 인성: 2과목 (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9과목 (27학점) 선택: 4과목 (12학점) 이상 다. 보육 실무 2과목 (6학점)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자료: 법령을 근거로 연구진이 작성

〈표 II-1-5〉 장애영유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배치 기관 및 교사 배치 기준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제 7조에 따른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일반)어린이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고 있음.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세부 이수 분야 및 학점	○ (교사배치기준) 학생 4명마다 1명 ※ 도시와 농산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 (교사배치기준) 학생 4명마다 1명 ※ 도시와 농산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자료: 법령을 근거로 연구진이 작성

동일연령의 유아 대상 교육과 보육이 교육부, 복지부로 분리 이원화된 구조에서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의무교육 사각지대에 빠지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제2항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 및 특수학교와 달리 교육부 관할이 아닌 복지부 관할의 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아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아동과 비교하여 동등한 교육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연령의 장애영유아가 기관선택의 여부에 따라 장애유형이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지원법」은 장애유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 2021b).

〈표 II-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유형 차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1]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자료: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7954호].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아동 통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시기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통계(매년)와 특수교육 실태조사(3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통계(매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 지원 실태조사(3년)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으로 지정되고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아동은 특수교육통계에 포함되지만 장애영유아 어린이 집에 재원하거나 기관을 미이용하는 장애아동은 특수교육통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 2021b).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부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장애아동 통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교육부-교육청으로 어린이집 사무가 이관된다면, 특수교육통계에서 통합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앞으로는 기관 유형의 차이에 관계없이 장애아동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 3-5세 장애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을 통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기준으로 장애유형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영유아 뿐 아니라 다른 연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성인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 유형을 통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202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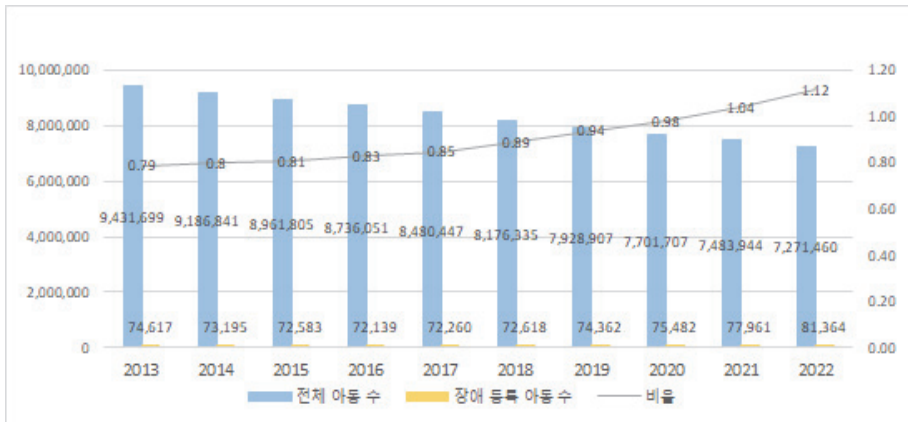
2. 관련 통계

가. 영유아 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10년(2013년~2022년) 간 장애 등록 아동 수 및 장애 등록 영유아 수와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아동 및 영유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장애 등록 아동 수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다. 장애 등록 영유아 수는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장애 등록 영유아 수는 9,234명이었다. 한편, 전체 아동 수 대비 장애 등록 아동 비율과 전체 영유아 수 대비 장애 등록 영유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전체 아동 대비 장애 등록 아동 비율은 2013년에 0.79%에서 2022년에 1.12%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영유아 대비 장애 등록 영유아 비율은 2013년에 0.27%에서 2022년에 0.52%였다.

[그림 II-2-1] 연도별 전체 아동 대비 장애 등록 아동 수 및 비율 추이(2013-2022년)

단위: 명, %



주: 아동은 만 0~17세, 영유아는 만 0~5세 기준이며, 장애아동 및 영유아는 장애아 등록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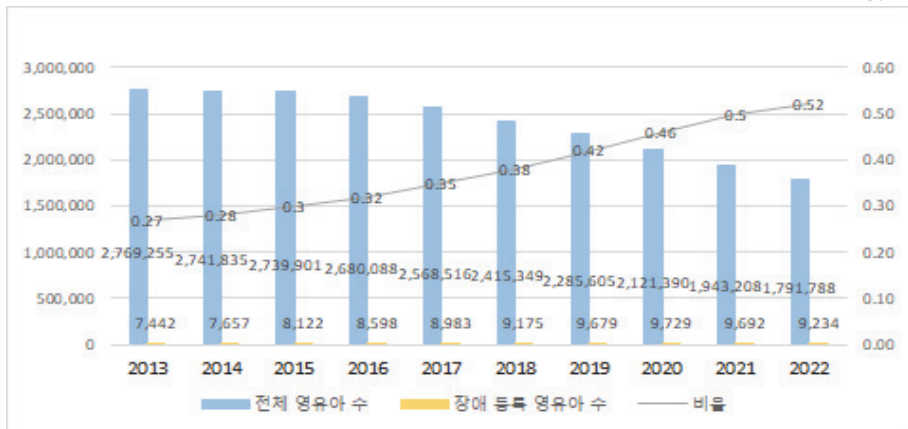
자료: 1) 행정안전부(201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2) 행정안전부(201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3) 행정안전부(201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4) 행정안전부(201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5) 행정안전부(201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6) 행정안전부(201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7) 행정안전부(201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8) 행정안전부(202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9) 행정안전부(202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10) 행정안전부(202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11)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4년 12월 말 기준).
- 12) 보건복지부(2014).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4년 12월 말 기준).
- 13) 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5년 12월 말 기준).
- 14) 보건복지부(2016).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6년 12월 말 기준).
- 15)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7년 12월 말 기준).
- 16) 보건복지부(2018).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 17) 보건복지부(2019).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
- 18)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
- 19) 보건복지부(2021).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 20) 보건복지부(2022a).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그림 II-2-2] 연도별 전체 영유아 대비 장애 등록 영유아 수 및 비율 추이(2013~2022년)

단위: 명, %



주: 아동은 만 0~17세, 영유아는 만 0~5세 기준이며, 장애아동 및 영유아는 장애아 등록 수임.

자료: 1) 행정안전부(201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2) 행정안전부(201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3) 행정안전부(201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4) 행정안전부(201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5) 행정안전부(201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6) 행정안전부(201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7) 행정안전부(201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8) 행정안전부(202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9) 행정안전부(202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10) 행정안전부(202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11)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4년 12월 말 기준).

- 12) 보건복지부(2014).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4년 12월 말 기준).
- 13) 보건복지부(2015).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5년 12월 말 기준).
- 14) 보건복지부(2016).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6년 12월 말 기준).
- 15)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7년 12월 말 기준).
- 16) 보건복지부(2018).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 17) 보건복지부(2019).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
- 18)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
- 19) 보건복지부(2021).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 20) 보건복지부(2022a).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2022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는 만 2세 이하 영아 1,103명, 만 3~5세 8,131명으로 총 9,234명이다. 이를 장애 유형별로 구분한 통계를 살펴보면, 뇌병변이 27.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폐성이 22.88%, 언어장애 18.69%, 지적장애 15.71%, 청각장애 8.48%, 지체장애 2.91%, 시각장애 1.71%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2a).

〈표 II-2-1〉 2022년 장애영유아의 유형별 장애 등록 현황('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합계
영아	64	30	257	1	27	673	7	6	11	0	19	0	4	4	1,103
유아	205	128	526	1,725	1,424	1,888	2,106	13	27	2	44	3	23	17	8,131
총계	269	158	783	1,726	1,451	2,561	2,113	19	38	2	63	3	27	21	9,234
비율	2.91	1.71	8.48	18.69	15.71	27.73	22.88	0.21	0.41	0.02	0.68	0.03	0.29	0.23	100

주: 1) 정신장애는 0명이므로 표에는 포함하지 않음.

2) 영아(만 0~2세), 유아(만 3~5세)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2022a).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2022년 12월 기준 시도별 장애등록 영유아 수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에 장애영유아가 밀집되어 있었다. 경기도가 2,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369명, 경남 685명, 부산 653명, 인천 517명, 대구 503명, 경북 496명, 충남 472명, 전북 305명, 전남 287명, 충북 272명, 광주 236명, 강원 219명, 울산 213명, 제주 172명, 세종 68명 순이었다.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장애 영아는 경기도가 31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165명이었다. 장애 유아는 경기도가 2,19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204명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2a).

〈표 II-2-2〉 시도별 장애등록 영유아의 장애 유형 현황('22, 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연령	자폐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 병변	자 폐 성	신장	심장	호 흡 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 전 중	합계
서울	영아	10	5	31	-	3	105	1	1	5	-	2	-	1	1	165
	유아	34	27	81	175	157	346	360	3	4	1	8	1	2	5	1,204
부산	영아	8	2	13	1	-	55	-	2	-	-	3	-	-	-	84
	유아	15	9	19	126	91	146	157	-	3	-	1	-	2	-	569
대구	영아	2	1	19	-	3	33	-	-	-	-	-	-	-	-	58
	유아	12	5	29	101	101	93	102	-	-	-	-	-	-	2	445
인천	영아	1	1	16	-	4	27	-	-	1	-	1	-	-	-	51
	유아	12	5	28	150	80	99	87	-	1	-	2	-	1	1	466
광주	영아	4	-	9	-	-	20	-	-	-	-	-	-	-	-	33
	유아	12	2	14	38	25	55	51	1	-	-	2	-	3	-	203
대전	영아	2	-	7	-	-	22	-	-	1	-	1	-	-	-	33
	유아	7	4	15	39	53	64	40	-	-	-	2	-	-	1	225
울산	영아	1	1	4	-	-	21	-	-	-	-	-	-	-	-	27
	유아	3	-	11	36	35	38	61	1	-	-	1	-	-	-	186
세종	영아	-	-	-	-	-	8	-	-	-	-	1	-	-	-	9
	유아	3	5	3	10	13	15	9	-	-	-	1	-	-	-	59
경기	영아	17	10	83	-	7	188	3	1	-	-	8	-	-	1	318
	유아	52	39	155	491	375	481	553	2	10	1	18	1	10	3	2,191
강원	영아	3	1	4	-	1	20	-	-	-	-	2	-	2	-	33
	유아	2	2	8	24	50	41	55	1	2	-	-	-	-	1	186
충북	영아	2	3	8	-	-	17	-	-	1	-	-	-	-	1	32
	유아	7	1	27	45	45	59	52	1	1	-	1	-	-	1	240
충남	영아	2	1	11	-	3	26	1	-	2	-	-	-	1	-	47
	유아	6	7	34	110	82	89	90	1	1	-	1	-	3	1	425
전북	영아	4	2	10	-	2	15	-	-	-	-	-	-	-	-	33
	유아	10	7	14	62	59	53	62	1	-	-	4	-	-	-	272
전남	영아	-	-	14	-	-	17	-	-	-	-	-	-	-	-	31
	유아	11	3	19	54	45	57	63	-	1	-	1	-	1	1	256
경북	영아	4	1	13	-	2	38	2	-	1	-	1	-	-	-	62
	유아	6	8	24	103	97	92	99	1	1	-	1	1	-	1	434
경남	영아	3	2	12	-	2	56	-	1	-	-	-	-	-	1	77
	유아	10	3	35	131	87	138	202	-	-	-	1	-	1	-	608
제주	영아	1	-	3	-	-	5	-	-	1	-	-	-	-	-	10
	유아	3	1	10	30	29	22	63	1	3	-	-	-	-	-	162
영유아 전체		269	158	783	1,726	1,451	2,561	2,113	18	39	2	63	3	27	21	9,234

주: 1) 정신장애는 0명이므로 표에서 제외

2) 영아(만0~2세), 유아(만 3~5세)를 의미함. 단,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0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영아(1~2세)임.

자료: 보건복지부(2022a). 장애인 등록 현황(<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

2023년 4월 기준, 교육부 산하 특수학교(유치원), 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수와 2022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 수를 살펴보았다. 2023년 4월 1일 기준, 특수학교(장애영아, 유치원)에는 1,069명, 유치원은 특수학급에 5,676명, 전일제 통합학급에 2,149명이 재원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아는 294명으로 총 9,188명이 특수학교(장애영아, 유치원), 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였다. 한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는 6,170명,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6,143명, 일반 어린이집은 1,002명으로 총 13,315명의 영유아가 특수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2b).

〈표 II-2-3〉 2022년 특수교육 및 보육통계에 따른 기관 이용 장애영유아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교육부('2023. 4. 1. 기준)					보건복지부('2022 12. 31. 기준)			
	특수 학교 (장애영아, 유치원)	유치원		특수 교육 지원 센터	소계	장애아 전문 어린이 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	일반 어린이 집	소계
		특수 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장애영유아 수	1,069	5,676	2,149	294	9,188	6,170	6,143	1,002	13,315

자료: 1) 교육부(2023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21을 재구성함.

2) 보건복지부(2022b). 2022년 보육통계.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p.129, 139를 재구성함.

2022년 기준, 전체 영유아 대비 교육부 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1.6%이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보육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2.4%로 파악되었다. 시도별로 시도 영유아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북(2.9%), 세종(2.7%), 제주(2.7%), 충남(2.1%), 전북(2.0%)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 영유아 수 대비 장애아 보육 지원을 받는 영유아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6.3%), 전남(3.8%), 울산(3.4%), 서울(3.3%), 경북(3.0%) 순이었다(교육부, 2022a; 보건복지부, 2022b).

〈표 II-2-4〉 2022년 시도 및 기관별 장애영유아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전체 영유아 수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아보육 대상자	계
서울	66,386	926(1.4)	2,192(3.3)	3,118(4.7)
부산	36,303	633(1.7)	816(2.2)	1,449(4.0)
대구	32,168	458(1.4)	924(2.9)	1,382(4.3)
인천	35,539	665(1.9)	752(2.1)	1,417(4.0)
광주	20,998	218(1.0)	516(2.5)	516(2.5)
대전	20,444	323(1.6)	251(1.2)	574(2.8)
울산	14,765	235(1.6)	499(3.4)	734(5.0)
세종	6,422	173(2.7)	70(1.1)	243(3.8)
경기	153,345	2,144(1.4)	3,053(2.0)	5,197(3.4)
강원	13,167	210(1.6)	260(2.0)	470(3.6)
충북	14,999	435(2.9)	273(1.8)	708(4.7)
충남	23,659	494(2.1)	476(2.0)	970(4.1)
전북	18,740	384(2.0)	391(2.1)	775(4.1)
전남	16,255	254(1.6)	624(3.8)	878(5.4)
경북	31,387	387(1.2)	933(3.0)	1,320(4.2)
경남	42,444	506(1.2)	908(2.1)	1,414(3.3)
제주	5,946	162(2.7)	377(6.3)	539(9.1)
전체	552,967(100.0)	8,607(1.6)	13,315(2.4)	21,922(4.0)

주: 1)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장애영아를 포함한 수임.

2)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후) 장애아’인 아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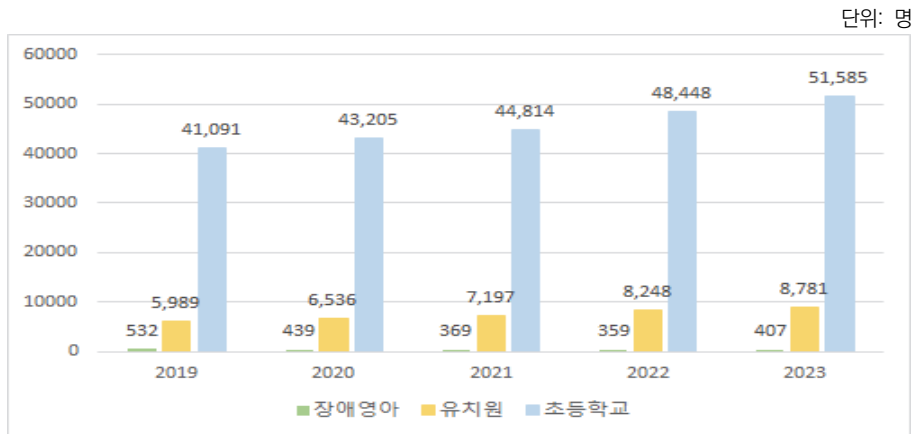
3) 교육부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3년 기준 자료가 존재하나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아보육 대상자의 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2022년 자료로 통일함.

자료: 1) 교육부(2022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15을 참고하여 산출 및 재작성함.

2) 보건복지부(2022b). 2022 보육통계. p. 129, 139, pp. 135-136, 145-147, 154-156를 참고하여 산출 및 재작성함.

2019년~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장애영아, 유치원(유아), 초등학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장애영아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1년 증가하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2023년 기준 장애영아는 407명,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8,781명,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는 51,585명이었다(교육부, 202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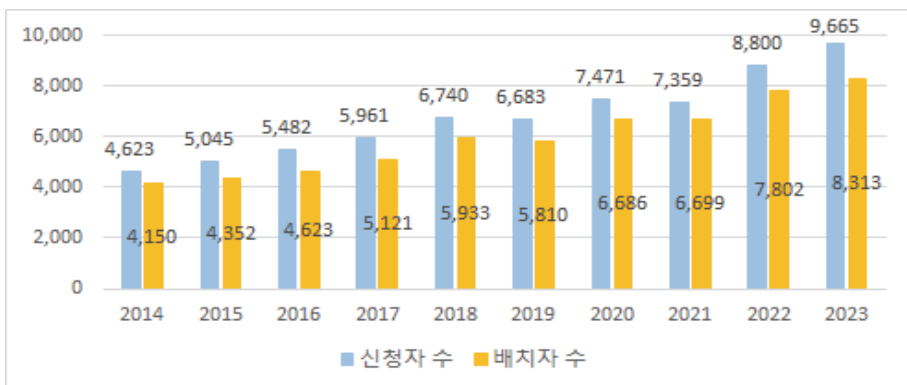
[그림 II-2-3] 연도별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수(2019~2023년)



자료: 교육부(2023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15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특수교육 신청자 및 배치자 수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매해 신청하였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배치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상이하게 나타났다.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영유아 9,665명이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이 되었으나, 배치된 수는 8,313명으로 배치되지 못한 영유아가 1,352명이었다(교육부, 2023a).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은 여전히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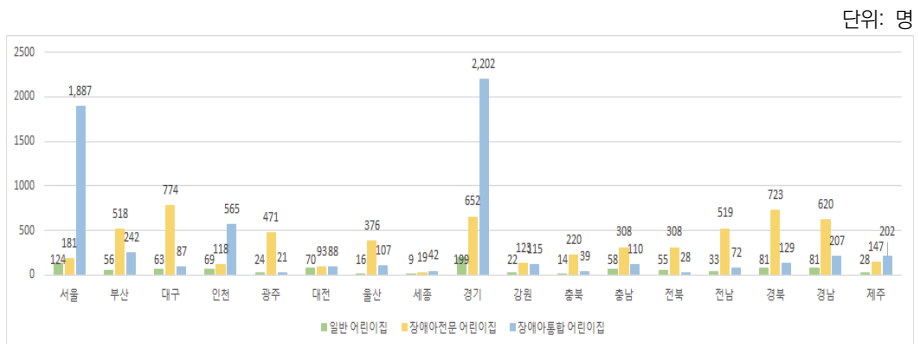
[그림 II-2-4]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영유아) 신청자 및 배치자 수(2014~2023년)



자료: 교육부(2023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54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2022년 시도 및 보육기관별 장애영유아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2,202명)이며, 다음으로 서울(1,887명), 인천(565명), 부산(2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774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북(723명), 경기(652명), 경남(620명)순이었다.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199명)였으며, 다음으로 서울(124명), 경북(81명), 경남(81명), 대전(70명)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2b).

[그림 II-2-5] 2022년 시도 및 보육기관별 장애영유아 수



주: 1) 아동자격을 '(영유아, 누리, 방과후) 장애아'인 아동임.

2)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인건비 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수임.

자료: 보건복지부(2022b). 2022 보육통계. pp. 129, 139, 135-136, 145-147, 154-156.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나. 기관 및 교사 현황

특수교육 및 장애아 보육 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3년 4월 기준 특수학교(유치원)은 136개이며, 이 중 영아 대상은 31개이고, 유치원 특수학급은 1,1539개, 일반학급인 전일제 통합학급은 1,407개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97개이며, 이는 장애학급, 교육지원 참여 장애영아, 순회교육 지원 장애영아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교육부 산하의 특수교육 기관을 모두 합산하면 총 3,279개이다. 한편, 2022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177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1,393개이며, 장애아 보육을 하는 일반어린이집은 801개로,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은 총 2,371개이다(교육부, 2023b; 보건복지부, 2022b).

〈표 II-2-5〉 특수교육 및 장애영유아보육 기관 및 이용자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교육부('23. 4. 1. 기준)					보건복지부('22 12. 31. 기준)			
	특수 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 교육 지원 센터	소계	장애아 전문 어린이 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 집	일반 어린이 집	소계
		특수 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기관 수 (영아)	136 (31)	1,539	1,407	197 (61)	3,279 (95)	177	1,393	801	2,371
이용자 수 (영아)	956 (113)	5,676 -	2,149 -	- (294)	8,781 (407)	6,170	6,143	1,002	13,315

- 주: 1) 특수학교의 유치원 전체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10개, 이용자 수는 장애영아 35명, 유치원 21명 총 254명, 교사 수(특수, 일반, 보건, 영양교사)는 110명임. 특수학교 전체의 장애영아 수는 113명임.
 2) 교육부 기관 수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체 센터 수로 소계에는 미포함.
 3)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급 수는 61개이며, 이용자 수는 센터 장애영아학급 또는 교육지원 참여 장애영아와 가정, 시설, 병원 등 순회교육 지원 장애영아를 합산한 수임(센터지원 영아는 204명, 순회교육지원 영아수는 90명).

자료: 1) 교육부(2023b). 특수교육통계. pp. 3, 6, 7, 76, 157, 172. 에서 2023. 10. 20. 인출.

2) 보건복지부(2022b). 2022년 보육통계. p. 139. 에서 인출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설립주체별(국립, 공립, 사립) 장애영유아 학교(유치원) 수 및 학급 수를 살펴본다. 먼저, 특수학교는 사립 형태가 가장 많았는데, 장애영아 특수학교에서 사립은 62.5%, 공립은 35.0%였으며, 특수학교(유치원)는 사립이 55.2%, 공립이 48.1%로 나타났다. 유치원(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대부분 공립(99.7%) 형태였으나, 일반학급인 전일제 통합학급은 공립(45.4%)보다 사립(54.6%)이 높게 나타났다(교육부, 2023b).

〈표 II-2-6〉 2023년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영유아 학교 수 및 학급 수

단위: 교(%), 학급(%)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장애영아)
	장애영아	유치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전체	40 (100.0)	268 (100.0)	1,195 (100.0)	1,539 (100.0)	1,407 (100.0)	1,887 (100.0)	61 (100.0)
국립	1 (2.5)	11 (4.1)	3 (0.3)	3 (0.2)	0 (0.0)	0 (0.0)	-
공립	14 (35.0)	129 (48.1)	1,191 (99.7)	1,535 (99.7)	698 (49.6)	857 (45.4)	-
사립	25 (62.5)	148 (55.2)	1 (0.0)	1 (0.1)	709 (50.4)	1,030 (54.6)	-

주: 1) 특수학교의 학교 수는 장애영아, 유치원, 초·중·고 및 전공과까지 포함된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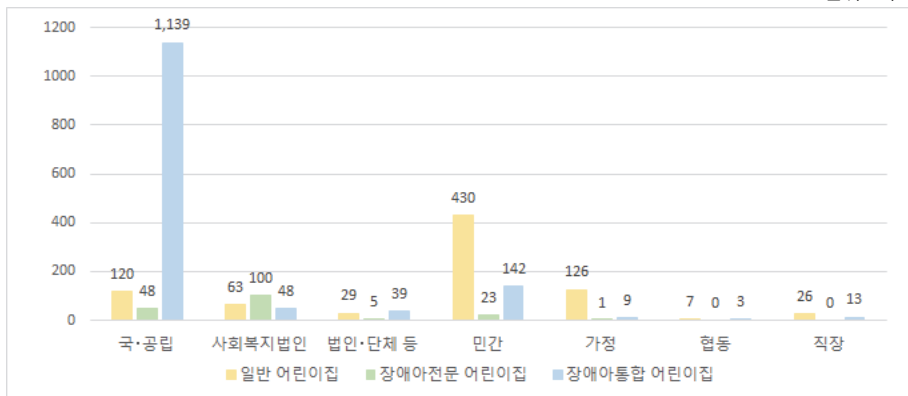
2) 유치원 특수학교 학급 수 중 유치원 학급에 장애영아가 속한 학급은 '장애영아입급유치원학급'으로 분류·집계됨.

자료: 교육부(2023b). 특수교육통계. pp. 7, 16. 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먼저 장애아 보육 기관이 가장 많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설립주체는 국공립이 1,13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이 142개소, 사회복지법인이 48개소, 법인·단체 등이 39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설립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10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이 48개소, 민간이 23개소 순이었다. 장애아 보육을 하는 일반 어린이집의 설립 주체는 민간이 43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어린이집이 126개소, 국공립이 120개소, 사회복지법인이 63개소 순으로 나타나, 일반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가정이 운영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보건복지부, 2022b).

[그림 II-2-6] 2022년 설립주체별유형별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주: 1) 장애 아동현원은 아동자격이 ‘(영유아, 누리, 방과후) 장애아’인 아동현원임.

2) 보육교직원(장애아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수 : 장애아반을 맡고 있는 일반 보육교사 혹은 특수교사, 치료사의 수

자료: 보건복지부(2022b). 2022 보육통계. pp. 135, 139.에서 2023. 6. 29. 인출.

지난 10년간 특수보육어린이집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039개소에서 2022년 1,570개소로 531개소가 증가하였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규모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하였다(통계청, 2023).

유치원의 특수학교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66개원에서 2023년 194개로 28개가 증가하였다(교육부, 2023b).

〈표 II-2-7〉 연도별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2013~2022년)

단위: 개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아전문	172	174	175	177	178	177	176	177	178	177
장애아통합	867	872	899	911	946	1,000	1,100	1,211	1,317	1,393
계	1,039	1,046	1,074	1,088	1,124	1,177	1,276	1,388	1,495	1,570

자료: 통계청(2023).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에서 2023. 6. 29. 인출.

〈표 II-2-8〉 연도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수 변화 추이

단위: 개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유치원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특수 학교										

자료: 교육부(2023b). 특수교육통계. p. 16. 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

유아특수교사 및 보육 특수교사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3년 4월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유치원), 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아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정교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로 총 2,211명의 유아특수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유치원)에는 375명, 유치원 특수학교에는 1,490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346명의 유아특수교사가 근무 중이다(교육부, 2023b). 2022년 12월 기준,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이외에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인정받은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 보육 특수교사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906명,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599명이다(보건복지부, 2022b).

〈표 II-2-9〉 유아특수교사 및 보육 특수교사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육부('23. 4. 1. 기준)					보건복지부('22 12. 31. 기준)			
	특수 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소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소계
		특수 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사 수	375	1,490	-	346	2,211	906	599	-	1,505

주: 1) 교육부('23 특수교육통계) 특수교사는 특수 1, 2정 자격증 소지 교사 수

2) 보건복지부('22 보육통계) 특수교사는 특수 2정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인정받은 교사 수를 의미(보건복지부, 2023a: 169~170)

자료: 1) 교육부(2023b). 특수교육통계. pp. 3, 18, 79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

2) 보건복지부(2022b). 2022년 보육통계. pp. 151, 154를 재구성하여 작성.

2023년 유아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교사자격별로 교사 수를 살펴보면, 먼저 특수학교(유치원)에는 특수학교 1급 정교사가 281명으로 가장 많고, 특수학교 2급 정교사가 94명, 일반교사가 7명이다. 유치원(일반학급)에는 특수학교 1급 정교사가 836명으로 가장 많고, 2급 정교사가 654명, 일반교사가 69명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정규교사 중 특수학교 1급 정교사가 202명으로 가장 많고 특수학교 2급 정교사가 142명, 일반교사가 4명이다.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공립에 근무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다. 특히, 유치원(일반학급)의 경우는 1,559명 중 1,554명이 공립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유치원)은 사립에 근무하는 교사가 206명으로 공립(163명)보다 다소 많았다(교육부, 2023b).

〈표 II-2-10〉 2023년 기관유형별·교사자격별 교사 수

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유치원)				유치원(일반학급)				구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 1정	특수 2정	일반 교사	계	특수 1정	특수 2정	일반 교사	계		특수 1정	특수 2정	일반 교사	계
전체	281	94	7	382	836	654	69	1,559	전체	202	142	4	348
국립	12	1	-	13	3	1	-	4	정규	188	134	-	322
공립	123	38	2	163	832	653	69	1,554	파견	-	-	-	-
사립	146	55	5	206	1	-	-	1	비정규	14	8	4	26

주: 1) 2023년 4월 1일 기준

2) 특수학교(유치원)에 장애영아 포함.

자료: 교육부(2023b). 특수교육통계. pp. 18, 79, 156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

2022년 기준으로 특수보육 어린이집의 설립 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2,671개소 중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1,625개소로 가장 많고, 국공립이 670개소, 민간이 285개소, 법인·단체 등이 8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1,70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이 299개소, 법인·단체 등이 82개소, 사회복지법인이 80개소 순이다. 종합하면 국공립이 2,376개소로 가장 많으며, 사회복지법인이 1,705개소, 민간이 584개소, 법인·단체 등이 167개소 순이다. 이외에 직장어린이집은 15개소, 가정어린이집은 10개소, 협동어린이집은 4개소에 불과하였다(보건복지부, 2022b).

〈표 II-2-11〉 2022년 설립주체별·유형별 특수보육교직원 수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장애아전문	670	1,625	85	285	6	0	0	2,671
장애아통합	1,706	80	82	299	4	4	15	2,190
계	2,376	1,705	167	584	10	4	15	4,861

주: 장애아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수를 합산하여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2022b). 2022년 보육통계. p.139를 재구성하여 작성.

2022년 기준 특수보육어린이집의 특수 보육교직원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가 906명이며, 치료사는 553명, 보육교사(장애아반)는 1,212명으로 총 특수보육교직원이 2,671명이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 599명, 치료사 101명이 있으며, 보육교사(장애아반)는 1,490명으로, 총 2,190명의 특수보육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2b).

〈표 II-2-12〉 2022년 특수보육어린이집 유형별 특수보육교직원 분류별 수

단위: 명

구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사	치료사	보육교사 (장애아반)	계	특수교사	치료사	보육교사 (장애아반)	계
보육 교직원 수	906	553	1,212	2,671	599	101	1,490	2,190

자료: 보건복지부(2022b). 2022년 보육통계, pp. 151, 154를 재구성하여 작성.

2015년 이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발급현황을 살펴보았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발급은 2017년에 59건에서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373건이었다. 2021년에는 다소 감소한 258건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발급은 2015년에 479건이었으나, 2016년에 306건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크게 증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2021년에는 317건이었다. 자격 발급을 합산하여 보면, 2020년이 669건으로 특수학교 정교사 1, 2급 자격 발급이 가장 많은 해였으며, 다음으로 2021년에 575건의 자격 발급이 있었다(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1a).

한편, 2015년 이후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을 살펴 보면,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발급 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에는 958건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13,217건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가 발급되었다. 이후 2022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10,451건의 자격확인서가 발급되었다(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3.do>, 2023. 6. 29 인출).

〈표 II-2-13〉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발급 현황(2015~2021년)

단위: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정교사 1급	55	13	59	103	117	373	258
	정교사 2급	479	306	290	280	303	296	317
	계	534	319	349	383	420	669	575

자료: 1) 교육부 교원양성연구과(2021).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발급 현황(2011~2021년). NEIS 추출 중, 2015년부터 연구진이 재구성

〈표 II-2-14〉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2015~2023년)

단위: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958	1,709	1,928	2,786	4,827	11,034	13,217	10,451

주: 2022년의 경우 '22.12.1.기준임.

자료: 1) 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3.do>에서 2023. 6. 29. 인출.

2) 보건복지부(2023b).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내부자료).에서 2023. 11. 15. 인출.

다. 특수 및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예산 현황

2022년도 특수교육 총예산은 약 3조 6,792억이며, 이 중 시도교육청 예산이 약 3조 6,197억, 국립 특수학교 예산이 약 540억이고, 국립학교 특수학급 예산이 약 54억이었다(교육부, 2023a).

〈표 II-2-15〉 2023년 특수교육 총예산

단위: 천원

구분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시도	2,152,841,764	1,124,208,523	287,412,521	24,843,976	7,206,037	23,226,612	3,619,739,433
국립	특수학교	30,933,963	12,754,011	6,408,100	1,541,713	106,878	54,012,973
	특수학급	2,488,926	1,895,321	1,033,200	15,500	51,800	5,492,097
계	2,186,264,653	1,138,857,855	294,853,821	26,401,189	7,320,265	25,546,720	3,679,244,503

자료: 교육부(2023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73. 을 재구성함.

아래 표를 보면 최근 5년간(2019~2023) 연간 특수교육비는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수혜 학생 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1인당 연 특수교육비는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이후에는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1인당 연 특수교육비는 33,538천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23a).

〈표 II-2-16〉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천원, 명

연도	특수교육비	수혜 학생 수	1인당 특수교육비
2019	2,984,447,992	92,958	32,105
2020	3,134,043,528	95,420	32,845
2021	3,188,731,273	98,154	32,487
2022	3,305,625,487	103,695	31,878
2023	3,679,244,503	109,703	33,538

자료: 교육부(2023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73. 에서 2023. 10. 20. 인출.

2023년 기준 공사립 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의 유아의무교육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공립유치원의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대상자 수는 6,613명이며, 평균 1인 최고지원액은 18만 1000원이다. 전국 사립 유치원의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대상자 수는 1,201명이며, 평균 1인 최고지원액은 48만 1300원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의 유아 의무교육비 1인 지원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이며, 다음으로 경기, 서울,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유아 의무교육비 1인 지원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68만 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충북, 충남, 광주/전남 순이었다(교육부, 2023a).

〈표 II-2-17〉 2023년 시도별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시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서울	588	236	73	684
부산	318	150	223	401
대구	257	150	198	401
인천	487	150	141	401
광주	129	150	46	550
대전	250	150	25	381
울산	201	180	27	450
세종	180	310	-	-
경기	1,831	304	102	480
강원	181	201	6	405
충북	379	150	22	557
충남	469	150	19	553
전북	303	150	88	515
전남	264	150	13	550
경북	268	150	119	451
경남	410	180	68	491
제주	98	150	31	430
계 (평균)	6,613	180.1	1,201	481.3

자료: 교육부(2022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48. 에서 2023. 10. 20. 인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장특법, 장특법 시행령⁴⁾).

2023년도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의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기존 특수학급당 운영비는 연간 평균 41,005천원, 신설 특수학급당 운영비는 연간 평균 66,295천원이 지원되었다. 시도별로는 2023년 기존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였으며, 다음으로 대전, 충남, 세종, 전북,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신설 특수학교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이 가장 많은 지역 또한 광주였으며, 다음이 충북, 부산, 인천, 제주, 대전 순이었다(교육부, 2023a).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19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7954호]

〈표 II-2-18〉 2023년 시도별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시도	유치원	
	기존	신설
서울	46,698	65,661
부산	47,007	74,473
대구	37,587	69,507
인천	34,143	73,266
광주	66,503	121,503
대전	50,524	70,524
울산	38,492	51,460
세종	47,960	57,960
경기	26,460	49,140
강원	21,101	45,918
충북	26,572	78,572
충남	50,054	55,054
전북	47,676	68,676
전남	35,353	55,353
경북	38,846	57,849
경남	35,351	60,351
제주	46,758	71,740
평균	41,005	66,295

자료: 교육부(2023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 71. 에서 2023. 10. 20. 인출.

한편, 2023년도 장애아 보육 예산 지원을 살펴보면,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1인당 월 559천원이다. 단,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으로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만 해당 장애아 보육료가 지급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보다 낮은 반별 보육료 상한액에 따라 지원된다. 기관보육료는 장애아 1인당 장애아반에 559천원이 지원되며, 장애아 방과후반에는 557천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3a: 363~434).

교사 인건비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80%가 지원되며, 장애아가 편성된 반이 있는 일반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사대 아동 비율에 따라 연령별로 차등 지원이 된다. 2세반까지는 80%가 지원되나, 4, 5세 반은 30%만 인건비 지원이 된다. 기본적인 교사 인건비 지원 외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이 된다. 장애아반 담임교사는 30만원 수당이 지원되면, 비장애아반 담임교사는 10만원, 장애아 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는 15만원이며, 치료사의 경우는 수당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인건비 지원 이외에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신축비, 차량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a: 363~434). 장애아 보육은 지원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연간 인건비, 학급당 운영비 예산 책정되어 지원되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 비해 포괄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2-19〉 2023년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80%	559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559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80% (국공립·법인) 1,746천원 (민간)	559천원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1대 3기준(만0세반)		80%	514천원
	- 1대 5기준(만1세반)		80%	452천원
	- 1대 7기준(만2세반)		80%	375천원
	- 1대 15기준(만3세반)		30%	280천원
	- 1대 20기준(만4세반이상)		30%	280천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1대 3기준(만0세반)			514천원
	- 1대 5기준(만1세반)			452천원
	- 1대 7기준(만2세반)			375천원
	- 1대 15기준(만3세반)			보육료상한액
	- 1대 20기준(만4세반이상)			보육료상한액

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23a). 2023 보육사업안내. p. 401.에서 2023. 6. 29. 인출.

〈표 II-2-20〉 2023년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예산 지원

구분	지원액
장애아 보육료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559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정부지원 단가(559천원)의 50%인 279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 지원단가: 5,000원 - 지원한도액: 300,000원 - 지원율: 기준액×100%
인건비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 비장애아반 담임교사(통합반 비장애아반교사 포함): 10만원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 • 치료사 수당: 40만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비	- 지원대상: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 지원단가: 1,800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개소당 673㎡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1,34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기관 보육료	- 지원대상: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 장애아 1인당 장애아반 559천원/ 장애아 방과후반 557천원 지원
차량운영비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한함 • 지원규모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로 통학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당 연 240만원 (월 20만원)을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23a). 2023 보육사업안내. pp. 363, 389, 390, 393, 420, 421, 433, 434를 재구성함.

3. 해외사례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의 역사와 맥락, 정책적 환경에 따라 유보통합 또는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유보통합 또는 분리 제도와 유아특수-장애영유아보육 정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I-3-1〉 해외 유보통합/유보분리 국가의 유아특수 및 장애영유아 제도(관계부처, 법령, 대상연령, 특성)

통합 여부	국가명	관계부처 (통합연도)	법령 (제정연도)	대상 연령	특징
통합	스웨덴	교육부 (1996)	학교법 (1998,2011)	0-6	-부모가 preschool, family day care 또는 staying at home을 선택할 수 있음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2005)	유치원법 (2005)	0-6	-원비에 대한 부모부담상한제, 육아휴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함 -유치원법에서는 1세 이상 모든 아동의 유치원 입학권을 보장하면서 장애아동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입학 우선순위를 허용
	대만	교육부	특수 교육법 (1984)	0-6	-유아특수교사는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을 모두 전공해야하고 자격 취득 시험으로 교사자격관리가 철저함
	핀란드	교육문화부 (2013)	기초교육법 (1998)	0-6	-유아교육자들이 포괄적인 통합교육 교수법을 배움
분리	프랑스	복지부 교육부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법 (2005)	0-6	-독립적 원스톱 창구인 MDPH를 중심으로 종합사정 체계를 구축
	미국	복지부 교육부	장애인 교육법 (IDEA)	0-2 3-6	-연령에 따른 법제가 세부화되어 있음
	일본	내무성 문부성	아동복지법(보육소) 학교교육법(유치원)	0-2 3-5	-교육과정은 '보육소보육지침'과 '유치원을 위한 교육요령'이라는 교육과정 적용
		문부성		0-5	-2006년부터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인정어린이원(현 신인정어린이원) 운영

자료: 연구진 작성

가. 유보통합 국가

1) 스웨덴

가) 법령 및 관장부처

스웨덴에서는 학교시스템의 일부이지만 학교와 분리된 취학전학교(preschool)를 운영하고 있다. 취학전학교는 2011년 제정된 유치원교육법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의 모든 유아들이 최소 일일 3시간, 주당 15시간의 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운영에 대한 향후

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확충 및 수요 충족을 위한 대비책을 제시해야한다(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in Sweden, 2023).

1996년 스웨덴 정부는 지식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스웨덴의 교육체제의 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교육법을 개정하여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와 학교교육의 통합을 주도하였다.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보건사회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관할하던 책임이 교육과학부로 이양되었다.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유아교육 관련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행정적 책임 및 권한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신동주, 2015).

나) 대상 연령과 지원내용

스웨덴에서 서비스는 공공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공립과 사립기관 모두 대부분의 비용을 중앙정부보조금과 지방세로 충당되는 공적자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스웨덴의 기관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유아원과 사립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은 받지만 부모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부모는 세 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유형이든지 교육법과 지침을 따라 운영된다. 이들 중 70% 이상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기관이다(신동주, 2015; Garvis & Lunneblad, 2018). 1999년 이래로 1-6세 유아는 취학전학교(preschool)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데 0-3세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반면 4-5세는 유아원비용이 무료이다. 보편적으로 임신했을 때부터 유아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며 16세까지 아동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18세까지 건강관리는 무료로 제공된다(Garvis & Lunneblad, 2018). 취학전학교는 1세부터 입학할 수 있고 6세가 되면 의무교육인 유치원(kindergarten)에 입학하게 된다(Government of Sweden, 2022).

스웨덴의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추가 적응지도나 특수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연령부터는 장애유형별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유아기에서는 취학전학교에서 개별요구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한 지원의 필요 여부는 교

사, 보호자 또는 기타정보를 통해 요구되고 기관장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대상 유아의 보호자는 특수교육이나 지원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함께 참여하고 각 기관에서는 지자체마다 정해진 방식대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⁵⁾.

다) 교사교육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ECEC)기관 교원은 유아교사, 여가활동교사, 보육사, 가정탁아모로 구분된다. 유아, 초등, 중등교사는 대학에서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고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2001년부터 모두 '교사(teacher)'라는 공통용어를 사용한다. 학위를 취득한 '유아교사'는 유치원, 개방유치원, 취학전 학급에서 교사로 일할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사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교사자격을 심사한 후 교사로 등록시키는 교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교사로 등록된 사람만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OECD, 2012/2013).

학위를 취득한 '유아교사'는 유치원, 개방유치원, 취학 전 학급에서 교사로 일할 수 있다. 여가활동교사는 유아교사에 준하는 교육을 대학에서 받으며 유아교사 또는 초등교사와 함께 유아의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팀에서 함께 일한다. 보육사는 전문학교에서 3년간 보육사 양성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가정탁아모가 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규정은 없지만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탁아모양성과정에서 훈련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OECD, 2012/2013)

2) 노르웨이

가) 법령 및 관장부처

노르웨이의 유아교육과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ECEC)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는 오랫동안 교육목표가 사회 전반적인 복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기에 유아교육에서도 교육과 보육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 복지부가 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유아를 위한 복지 이슈가 감소되고 유아교육의

5) <https://www.skolverket.se/regler-och-ansvar/ansvar-i-skolfragor/extra-anpassningar-sarskilt-stod-och-atgardsprogram>.에서 2023년 8월 30일 인출.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유아에 대한 서비스 담당 및 관할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되었다(Kaga, Barnett, & Barnett, 2012). 노르웨이의 경우 1975년 유보통합이 이루어졌으며 유치원에 대한 최초의 법률인 'First Kindergarten Act'에 근거하여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MORE)에서 ECEC를 관할한다(신동주, 2015).

나) 대상연령과 지원내용

노르웨이의 ECEC서비스는 0-6세 유아대상으로 제공되고 3세부터 5세는 유아 교육단계(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0단계)라 지칭한다. 1단계는 의무교육의 시작인 초등학교이다. 다음은 노르웨이의 ISCED 0단계인 유아교육단계와 1단계인 초등학교의 해당 연령을 나타낸다.

〈표 II-3-2〉 노르웨이 ECEC 서비스 연령, 학교급, ISCED 단계

연령	0	1	2	3	4	5	6	7	8
학교급	Vanling Bamehage(ordinary kindergarten) Familebarnehage(family kindergarten) Apen bamehage(open kindergarten)						Grunnskole (Elementary school)		
ISCED 단계				ISCED 0단계			ISCED 1단계		

자료: 이견희, 김정숙(2013). 북유럽 국가의 유아교육 제도 비교, OECD (2013). Quality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orway 2012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노르웨이의 유아교육기관은 일반유치원(ordinary kindergarten), 가정유치원(family kindergarten), 개방형유치원(Apen bamehage(open kindergarten))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기관은 상호협력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한 주에 41시간 이상을 운영하며 대부분 오전 7-8시에 시작하고 5-6시에 마친다(이견희, 김정숙, 2013). 노르웨이의 유치원법 제 3조에는 유아가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 4조에는 '모든 유치원은 부모평의회와 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부모와 유아의 참여권을 교육법으로 보장하고 있다(Hiilamo, 2009).

노르웨이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유아에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유아의 사회적 평등 보장과 질적으로 보장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르웨이 중앙정부는 유아교육의 질과 서비스 관리 및 재정적 측면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지며 유치원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배당하고 주정부는 중앙정부 교육연구부와 현장의 유치원들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정부는 그 지역의 공립 사립 유치원 인가 및 감독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침을 제공한다.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부모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2014). 2015년부터는 부모부담을 줄여주고 저소득 가정의 유치원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부모 부담액을 적용하였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교육비가 가구 총소득 및 개인 소득의 6%를 넘지 못하게 했다. 2018년 보고서에 의하면 부모는 유치원 비용의 약 16%를 부담하고 있다(Heikkail, Hognestad, Kettukangas et al., 2020).

다) 교사교육

노르웨이는 1980년대부터 대학에서 유치원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2년제 교사 양성소에서 교원을 양성해 왔었다. 현재는 3년 전임제 또는 4년 시간제인 학사학위 프로그램에서 유치원교사를 양성하고 있다(Haug, & Storø, 2013). 노르웨이는 유아교육과 보육담당 교사들에게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사회복지분야나 유아교육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Heikkail, Hognestad, Kettukangas et al., 2020).

3) 대만

가) 법령 및 관장부처

대만은 현재 유보통합운영국으로 1984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령 전 유아는 가정, 유치원, 특수유치원(학급), 특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1984).

나) 대상연령과 지원내용

1984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장애가 있는 유아 대부분은 가정에서 돌보았고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했었다. 몇몇의 장애유아만 특수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센터 또는 교육이나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이용했었다. 1997년 특수교육법이 개정된 후에야 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고 현재는 3세 이상 모든 장애유아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3세 이상의 장애 유아는 학교서비스뿐 아니라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3세 이전의 영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전문가의 조언과 의료서비스가 주어진다(Kang, Lovett, & Haring, 2002).

다) 교사교육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장애영유아 관련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교사가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유아들과 가족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습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동향 및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을 받은 교사가 준비되어야한다(Miller & Staton, 2000).

1980년대까지는 유아특수교사는 2개의 자격을 갖추어야 했는데 유아교육 자격과 특수교육에서 20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과정기반 모델이 적용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1987). 그러나 1994년 교사양성법부터는 교사양성 대학뿐 아니라 다른 대학, 유아, 초등, 중등의 다양한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종합대학과 교사양성대학에서만 유아, 초등, 중등 또는 특수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들을 위한 과정이 개설되었었다(Ho, 2014). 2005년에는 모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예비교사는 교사자격시험을 통과해야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교사양성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었다. 대만에서의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과 자격을 취득하는 전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II-3-1] 대만의 유아특수교사자격 취득 과정



자료: Ho(2014). Teacher Preparation for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in Taiwan. p.5에서 발췌.

(1) 유아특수교사 양성대학의 조건

유아특수교사 양성대학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먼저 학생 선발 기준이 있어야 하며, 단과대학, 학과, 교수자와 학습자 수, 교수 대 학생 비율, 건물 위치와 면적 등과 같은 기관 환경 정보가 있어야 한다. 예비교사 양성 교육과정은 최소 10학점의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전문과정과 최소 30학점의 특수교육전문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실습할 학교를 사전에 선정하여 교육실습을 계획해야 하고, 전공 분야의 Ph. D. 또는 부교수급 전임 교수로 최소 5명의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전문서적, 학술지, 교육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예비교사 교육

교사양성 종합대학이나 단과 대학은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전공에 따른 필수과정은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다. 다음 표는 청양(Chung Yuan) 대학(2000)의 유아특수교사양성 교육과정(Chung Yuan Christian University, 2000)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타 학과 전공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 유아특수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요구 교과와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표 II-3-3〉 청양대학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교과 유형	내용	
	이수학점	최소 10학점 이수
General education profession courses	교과목	(1) Language expression of young children (2) (2) Behavior observation of young children (2) (3) Special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2) (4) Development and educate of young children (2) (5) Parent education for exceptional students (2) (6) Curriculum design for kindergarten (2)
Required common courses for special education profession	이수학점	8학점 이수
	교과목	(1)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3) (2)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for exceptional children (3) (3) Instructional design for special education (2)
Elective common courses for special education profession	이수학점	8~12학점 선택 이수
	교과목	(1) Ethics of special education (2) (2) Management of resource room (2) (3) Administration, laws, and regulations of special education (2) (4) Techniques of behavior modification (2) (5) Sex education for exceptional children (2) (6) Perceptual and motor training (2) (7) Case study (2) (8) Social work (2) (9) Human physiology (2) (10) Technological application in special education (2) (11) Language development and therapy (2)
Special education profession courses for various categories	이수학점	10~14학점 선택 이수
	교과목	(1) Required courses: 4 semester credits a. Teaching practicum for special education (4) (2) Elective courses: 6~10 semester credits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and at least 2 semester credits from other courses in the same category are required). These elective courses a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a. Giftedness and talent: Courses related to this category. b. Mental retardation: Courses related to this category. c. Personality or behavior disorder: Courses related to this category. d. Hearing impairment: Courses related to this category. e. Speech and language impairments: Courses related to this category. f. Multiple disabilities: Courses related to this category.

자료: Chung Yuan Christian University(2000). Pre-service education program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Chung Li: Author.

(3) 교육실습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위한 학점을 이수하고 교육부 요구 조건을 충족한 후에는 반년 동안의 전일제 실습을 신청할 수 있다. 실습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

세 가지 조건과 같다. 먼저 학사학위 과정 졸업 자격이 있는 자,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에서 필수교과를 이수한 자, 마지막으로 단과 대학(college)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다.

교육실습에는 수업실습, 학급운영 실습, 행정실습, 학습 활동이 포함된다. 교원 양성기관인 대학에서는 실습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수립하고 실습생에게 안내해야 하고 실습할 학교를 선정하고 실습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평가는 실습학교와 50%씩 나누어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02).

(4) 교사자격 시험

유아특수교육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학점을 이수하고 실습을 마친 자는 해당 대학에서 예비교사 양성과정 졸업 자격을 취득한 후 교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면 교육부로부터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필기로 치러지며 1년에 1회 시행된다. 유아특수교사 자격시험의 학과는 다음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0/2011).

첫 번째는 중국어 영역으로 작문, 읽기, 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영역은 교육원리와 체계 영역으로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 교육체제, 법, 규정과 정책이며, 세 번째 영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와 교육으로 평가방법, 평가도구, 평가결과 해석과 적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다양한 장애 학생에 대한 신체 정신적 특성, 전문서비스 안내와 가족 지원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수법에서 응시자는 '지체와 지적장애 범주', '영재와 우수아 범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응시자는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통과할 수 있고 각 응시 과목 중 50점 이 두 교과가 넘거나 한 교과라도 0점이 나오면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통과하지 못한다.

대만의 유아특수교사 교육은 중앙정부의 자격 부여 조건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현재 대만의 교육부는 교사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주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다 매우 정교하고 엄격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4) 핀란드

가) 법령 및 관장부처

핀란드는 아동의 권리보장보다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모든 유아의 기관 취원 보장과 관련된 주관적 권리(Subjective right)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국가이다(OECD, 2012/2013).

1991년에는 재활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1998년 제정된 기초교육법(Finnish Basic Education Act)과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법(Ac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근거하여 장애영유아의 발달을 위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 보육을 위한 지원 주관부처는 교육과학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단일 부처로 유보통합운영국으로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 지도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OECD, 2012/2013).

유아 교육 및 보육 활동에는 탁아소, 가족 보육 및 개방형 유아교육 및 보육이 포함된다. 지방 자치 단체는 어린이와 가족의 필요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핀란드의 학교 시스템을 살펴보면 사립학교가 없고 100% 공립 학교로 7세부터 9년간은 의무교육이다. 취학 전인 0-6세도 전액 무상교육이나 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보낼 수 있고 공립 또는 사립 기관이 있어 부모가 선택한 기관 유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⁶⁾.

나) 대상 연령과 지원내용

핀란드는 스웨덴과 함께 전 세계에서 영아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로 출산 시 병원에서 장애가 있는 영아를 진단해주고 치료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미 1920년대에 국립 아동건강센터(national child health centers)가 설립되기 시작하여 1945년에는 전국에 설립되었으며 0-7세까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건강센터에서는 재활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아동을 선별해주고 발달이 지연된 아동이나 특수한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한 추적 조사와 검사 등

6) <https://okm.fi/varhaiskasvatus>.에서 2023. 7. 14. 인출.

의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Michelsson & Byring, 1997). 선별 검사 결과 발달의 지연을 보이거나 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부모에게 알리고 아동건강센터의 재활 치료팀은 어떤 검사를 더 받아야하는지, 어디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육적인 서비스 등에 대한 다학문적 코디네이션 서비스를 3년간 해준다. 이러한 건강센터는 지자체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고 한 곳당 적어도 3명의 일반의가 상주하고 있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아동은 병원에 7일 간은 무료로 입원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의 장애 정도를 3등급 정도로 구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가정에 수당이 지급되고 가정에서 장애아동을 돌보아야할 경우 일 년에 60일까지 장애아동 돌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건희, 김정숙, 2013).

1991년부터 핀란드의 3세 이하 모든 유아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무료로 어린이 집에 다닐 수 있고 각 어린이집(day care center)은 20명 정도가 다니는데 조기 중재 서비스를 받는 장애 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정원을 8-10명으로 감축할 수 있다. 장애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장애 유아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한 훈련을 제공받는다. 또한 주 양육자와 가족, 장애 유아의 형제를 위한 교육도 시행해 준다(Heikkail, Hognestad, Kettukangas et al., 2020).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미래 학습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적시에 지원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 지원은 교육적, 치료적 또는 구조적인 형태로 제공된다. 모든 형태의 지원은 일반적인 지원에 더하여 대상 유아에게 필요한 강화된 구체적인 지원에 따라 제공된다. 일반적인 지원은 유아교육 및 보육의 기본 활동으로 제공되고 장애 유어나 다문화 가정의 유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강화되고 구체적인 지원이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유아에게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특수교육 교사에 의한 특수교육 서비스와 같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일반적이고 강화된 특별 지원은 일반지원에 더하여 옷 입기, 전환, 우정, 놀이 또는 언어 발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교육 활동을 대상 유아에게 맞춰 개별화함으로써 지원한다. 이러한 강화된 지원은 단기 또는 장기적일 수 있으며 아동이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제공되고 지원 조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지원 조치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다. 강화된 지원 및 강화 기간 동안 필요한 지원 조치

는 행정 결정에 따른다. 강화된 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상, 질병 또는 발달지연으로 인해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 지원이 제공되는데 특정 지원은 가장 강력한 지원 형태로 지원 조치는 항상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된다. 특별 지원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⁷⁾.

다) 교사교육

핀란드에서 기초교육을 위한 교사들은 학사학위(BA: 3년 정도 180학점 이수)와 석사학위(MA)가 있어야 한다. 핀란드는 전체 교사의 18.3%가 무자격 교사인데 이 중 5.5%는 특수교사나 특수학급 교사이고 10.3%는 파트타임 교사이다(UNESCO, 2003).

유치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대학에 개설되어 120학점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학급교사 프로그램과 기초과정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전공 교과로 취득하는 35학점은 석사과정과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대학 학점 이수 후 교육이나 관련 분야의 석사프로그램에 입학하여 학문을 지속할 수 있다(UNESCO, 2003). 일반적인 유치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3-4〉 핀란드의 유치원교사양성 프로그램

교과 내용	학점
유아교육을 강조한 교육학 (Educational studies, emphasis on early education)	35
다양한 분야의 유아교육 (Multi-field early education studies)	35
심리학, 사회학, 실기 교과 (Psychological, societal, and practice studies)	27
부전공 교과 (Minor subject studies)	15
언어와 의사소통 교과 (Language and communication studies)	8
합계	120

자료: UNESCO. (2003). Studies on higher education. UNESCO. CEPES. p.102.

7) <https://okm.fi/varhaiskasvatus>.에서 2023. 7. 14. 인출.

초등학교부터 있는 학급 교사(classroom teacher)는 2-3년 동안 같은 집단의 아동을 가르친다. 아동들은 교실에 있고 교과에 따라 다른 교사가 들어와 가르치기도 한다. 유치원 교사가 학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학 분야에서 35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예비학급 교사는 재학 중 자신의 교과에서 35-60학점을 더 하면 교과 교사 자격도 취득할 수 있고 (특수교사전공) 입학시험에 통과하고 특수교육에서 35-60학점을 이수하면 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UNESCO, 2003).

특수교사는 학교 내에서 상담, 일반 교실에서 협력 교수, 평가 시행,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특수교육 실행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어떤 학교는 별도의 특수교실에 8-10명의 IEP가 있는 특수교육대상 아동을 교육하기도 한다. 특수학급 교사 자격만 있는 자는 특수학급에서만 가르칠 수 있고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전공으로 120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교직학점을 60학점 이수해야 한다(UNESCO, 2003).

나. 유보분리 국가

1) 프랑스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국가로 GDP의 3.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육아와 관련된 가족 정책으로 두 면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가족수당, 자녀 연령이 영아 이상 되었을 때 지급되는 부가적 가족수당, 영아나 임신 상태인 경우 지급되는 영아양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격을 갖춘 보모를 고용할 경우 지원받는 가정보육모 고용지원수당,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가 자택 내 보모를 고용하여 자녀를 돌볼 때 지원되는 자택 내 육아 수당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부모가 직업을 그만두었을 경우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모두 지급되는 취업자유선택보조수당, 초등학교 입학학을 위해 유아에게 지급되는 개학준비수당, 입양수당,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장애아동교육수당, 편부모수당, 소득공제 제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정미라, 조희연, 안재진, 2009)

가) 법령 및 관장부처

프랑스 교육법전에는 국가가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유아교육에 있어서 모두가 일정 수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아교육 및 보육체제는 연령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고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공교육의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882년 초등교육의 의무화와 연계되어 유아 무상교육이 실현되었다. 3세 이하는 가정복지부가 관리하며 3세 이상은 교육부가 관장한다. 3세 미만의 영아들을 위한 보육기관인 크레쉬(creche)는 노동, 사회, 가정, 연대 및 도시부가 관장하고 지원하며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아학교는 교육부 내의 아동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교육과정과 교원관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한다(민혜진, 2000).

나) 대상연령과 지원

장애가 있는 영유아는 20세가 될 때까지 이전의 특수교육수당을 대신하는 장애 아동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간병인이 필요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경우 ‘부모일일출석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혜택기간은 최대 3년이다(정미라, 조희연, 안재진, 2009 재인용).

프랑스는 장애유무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0-6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예방조치로 신체, 정서, 근육발달 등에 대한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생후 첫 해 동안 9번의 검진을 받고 13-25개월 사이에 3번의 검사를 통해 조기발견을 한다. 조기 예방 검사로 발달 상 이상이 발견되면 모자보건국은 부모가 담당의사에게 연락하여 의무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모자보건센터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실시해주며 센터 내에 각 분야의 전문의와 의료진이 있어 센터에서 직접 심화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가정방문 진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박혜미, 2018).

프랑스에서는 2005년 각 지방마다 장애인 법 6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장애인 센터’가 있어 의료, 준의료 전문가와 심리학, 사회복지, 교육, 고용 및 직업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 다학제적 종합사정평가팀이 장애와 관련된 보상 요구(needs)를 사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해서는 개인진학계획

(PPS: le projet personnalisé de scolarisation)을 작성해주어 아동 개인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사정, 안내 등을 제공해준다(박혜미, 2018).

다) 교사양성교육

프랑스에서는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991년 다양한 형태의 교원양성기관을 통합하여 단일체제를 구축하였고 유, 초, 중등 및 대학교수 후보자까지 같은 체계 내에서 교육받도록 하였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의 학사과정 이수 후 2년 동안 석사수준의 교사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교사임용시험을 치러 합격한 후에야 교사 자격증(CAPES:certificat d'aptitude au Professorat de l'enseignement du second degré)을 취득할 수 있다.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 후에는 각 학구(Academy)의 지방교육청에 의해 신입으로 근무할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박주원, 2021).

또한, 2013년 학교신뢰법 개혁을 단행하여 모든 교사양성기관이 1년에 800시간의 수업을 이수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국가가 관리하는 표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교사의 지속교육과 이론과 실제의 연계를 위하여 전체 교육과정의 1/3은 현장전문가와 교수가 협업하도록 하였고 교원양성기관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증가시켜 전문화 과정까지 장학금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해 준다. 특히 장학금 수여자로 선발된 학생은 3년 동안 교육현장에서 주당 8시간 보조교사로서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사가 되도록 훈련시킨다. 학사 3년 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교사 등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전공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교육대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적합한 조건을 갖추게 되므로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관련된 교과를 이수하는 것이 권장된다(박선나, 이승현, 권수진, 2022).

2) 미국

가) 법령 및 주관부처

미국은 각 주마다 장애영유아를 지원하는 체계가 다르나 대부분의 주들은 두 개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인데 이 법의 Part C는

0-2세 대상 조기중재에 관련된 법체계이고, 3-5세 및 6-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근거는 Part B로 구분되어 있다.

Part C 프로그램은 주로 주정부의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 Part C에 규정된 조기중재서비스(EIS: Early Intervention Service)는 주정부에서 장애영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발달지원 서비스이다. 주의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지만 장애영아(출생-3세 이전)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과 그 영아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행정부서를 두고 있다. Part B 프로그램은 주정부의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역 교육청(Local education agencies: LEAs)은 장애가 있는 3-5세 유아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Kasprzak, 2020).

나) 대상연령과 지원내용

장애영유아의 지원대상 연령은 대개 0-6세로 기관별로 전이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어 학교 급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주정부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나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서비스 시스템이 잘 갖춰지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교육부의 특수교육 부서에서는 각 주의 체계적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인프라구조와 서비스 디자인과 개선 전략을 평가한다.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게 제공되는 조기중재(Early Intervention) 서비스는 개별화된 가족서비스 계획팀(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Team)에 의해 작성된 개별화된 가족서비스 계획서(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에 따라 제공된다. 조기중재서비스는 IDEA에서 정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데, 이 전문가들은 특수교사, 언어병리학자, 청각학자,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가족상담사, 시각전문가, 교정전문가, 소아과 의사, 내과 의사 등을 포함한다. EIS의 세부내용은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청각서비스, 가족훈련·가족상담·가정방문 서비스, 건강 돌봄 서비스,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영양서비스,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신체치료, 심리치료, 언어수행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음성언어병리서비스, 시각지원서비스, 교통 비용지원 서비스, 특수교육

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주는 주의 각 지역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주정부는 지역 프로그램에 대해 서비스 수준과 질을 감독하고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개별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역마다 서비스의 제공이 적절하게 되도록 계획을 세운다. 주정부의 장애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이나 절차를 안내하며 필요와 요구에 따라 기술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주정부의 장애영유아지원 시스템은 지원대상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개선 체계를 갖추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체계적인 주정부의 기준, 교육, 훈련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자질과 실행력을 잘 갖추도록 해주고 이러한 교사 또는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의 서비스 요원의 지식과 기술은 장애영유아와 가족이 받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준다(국립특수교육원, 2002).

장애영유아를 위한 지원 모델은 생태학적 모델로서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지역프로그램은 장애영유아를 지원하는 가족 구성원이 생활을 영위하고 잘 돌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장기적 생태학적 프로그램 체계를 갖추고 있어 그 가족이 대상 영유아의 발달에 더 도움이 되도록 지원한다. 다시 말해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조기중재와 유아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영유아의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주정부는 가족들이 받는 서비스 유형, 양,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외체계의 역할을 한다.

다음은 장애인교육법(IDEA)을 근거로 전국, 주, 시와 지역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형과 지원내용이다.

〈표 II-3-5〉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형과 지원내용

구분	유형	지원내용
연방 수준의 지원조직	지역자원센터 (Regional Resource Center)	- 영유아기 및 학령기 장애아동, 성인기 장애인, 가족 서비스의 기대 효과와 향상을 위해 주정부의 조기개입과 특수교육 시스템을 지원한다. - 각 주의 특수교육 담당관과 0-2세 장애영아와 장애위험영아를 위한 조기개입 서비스 주무기관을 주로 지원한다.
	연방특수교육자원센터 (Federal Resource Center for	- 주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술적 지원 내용의 질과 지속성을 향상하도록 지역자원

구분	유형	지원내용
	Special Education)	센터에 자문, 훈련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긍정적행동중재지원센터 (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Center on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 학교 현장에 있는 문제행동 아동의 발견, 문제행동 아동에게 효과적인 교수 방법의 확인, 교사들에게 문제행동 아동의 개입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행동장애영유아지원센터 (Center for Evidence-Based Practice: Young children with Challenging Behavior)	- 조기개입 및 학령전 장애영유아 중에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영유아 뿐 아니라 비장애 영유아 중 정서·행동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영유아기술지원센터 (National Early Childhood Technical Assistance System)	- IDEA에서 지원하고 있는 0-5세 장애영유아 서비스 실행과 관련된 주정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 장애영유아와 가족이 질적 수준이 높은 가족중심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단계의 서비스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주정부의 주요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지역부모자원센터 (Regional Parent Resource Center)	- 장애아동의 가족은 유아 및 특수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로서 IDEA의 Part D에 규정된 주요한 특수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각 주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모훈련정보센터 및 지역사회 부모자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학술대회, 회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개별화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 자료집 출판과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제공 서비스, 현장 방문을 이용한 지원을 제공한다.
주 수준의 지원조직	- 부모훈련·정보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지역 수준의 지원조직	- 지역사회 부모자원센터 - 시·지역교육청 자체의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자료: 이미선, 조광순(2006). 「미국의 특수교육 지원조직 관련 법규와 운영실태 분석」 내용을 재구성함.

다) 교사교육

Stayton과 McCollen(2002)은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해 일하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중재자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을 다음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의 발달 이해와 관찰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둘째, 가족 체계의 인식과 취약점의 근원적 이해, 능력 강화를 위한 지

원을 할 수 있는 능력, 셋째, 팀과의 협력을 위한 공동 계획과 문제 해결 기술 및 갈등 해결 기술, 넷째, 옹호활동을 위한 법률지식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위의 네 가지 영역 이외에도 유연성과, 성숙, 독립성, 공유의 의지와 인내 등의 개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주(state)별로 교사양성 운영을 다르게 하는데 몇몇 주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국립특수교육원, 2002)

(1) 미네소타

미네소타 주에서는 특수교사 양성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해야하고 둘째는 일반학교에서의 교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만 입학 가능하다. 4년제 대학에서 교양과목과 전공 및 교직 교과를 듣고 두 학기에 걸친 교생 실습을 이수해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학교에서의 경력이 최소 2년 이상 되어야 대학원과정의 특수교사 프로그램에 입학 가능. 특수교사 중 지체장애 자격증 이수를 위해서는 다른 특수교사 자격(정신지체, 학습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정서장애)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재등록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지체 장애 영역의 특수교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2) 네바다

특수교육학도가 4년제 대학과정으로 대학과정은 학습장애에 관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졸업 후 기본 특수교사 자격증을 부여받고 일반학교 내 자원실(resource room)이나 경증 학습장애를 가르치는 교직이 가능하다. 기본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대학원 과정의 특수교육영역의 전공(정신지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정서장애)을 택해 세분화된 특수교사 자격을 획득한다.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각 분야에 맞는 장애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취업가능하다.

(3) 캘리포니아

일반교사자격증이 특수교육교사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조건이다. 일반교사는 4년제 대학 졸업이 필수이다. 유아발달이나 그와 유사한 학부과정 이수자는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입학하고 학부에서 영어, 사회, 역사,

수학, 물리 등과 같이 교과에 치중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위한 대학원 프로그램에 입학하게 된다. 일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특수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입학자격 주어진다. 특수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의 실습은 학생에 따라 두 학기나 세 학기에 걸쳐 실시하고 대학교수가 한 학기에 7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지도 및 평가를 하게 된다.

(4) 텍사스

예비교사자격증(Provisional Certificate)을 가진 사람만 공립학교와 계약에 의해 채용될 수 있다. 교사자격증은 대학양성과정, 지역 교육서비스센터의 양성과정, 학교구의 양성과정 등을 통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되며 평생동안 유효하다. 전문자격증(Professional Certificate)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학교구 교육감, 학교장, 교감, 장학사 등과 기타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상담교사(Counselor), Visiting Teacher, Reading specialist, Learning Resources Specialist, Educational Diagnostician 등의 교육전문가와 특수교육 장학사, 특수교육 방문 교사, 특수교육상담가 등 특수교육 전문가에게 전문 자격증을 요구한다. 전문자격증은 예비교원자격증을 가지고 2-3년 이상의 학생 지도 경력을 가진 후 소정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발급된다. 기한부 자격증(One-year Certificate)은 타 주에서 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나 인턴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 내에 시험에 합격해야 교사 자격증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상강사허가증(Emergent permit)은 교사가 부족할 때 지역구에서 1년간 주는 강사 허가증이다. 텍사스는 현재 우수한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에 기초한 교사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자격증 발급하고 있으며 교원양성책임제도를 통하여 학생 교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다.

3) 일본

가) 법령 및 관장부처

일본은 현재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의 ‘부분적 이원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제도에 관한 정책은 1947년 제정된 「학교 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유치원은 학교 교육기관으로, 보육소는 영유아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교육성과 후생노동성으로 나누어 각각 유치원과 보육소를 관장하는 이원화된 행정 체계 내에서 영유아를 교육 또는 보육하고 있다. 중류층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사회화기능을 중점으로 발달한 유치원(박은혜, 김명순, 신동주 외, 2003)은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구제사업과 여성노동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하고 있는 보육소는 내무성에서 관장하며 ‘아동복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탁현주, 박한숙, 2018).

나) 대상연령과 지원내용

일본의 영유아는 유치원과 보육소를 이용할 수 있다. 보육 및 자녀양육지원 서비스는 국가 중앙차원에서 후생노동성의 고용균등 아동 가정국이 주도 하고 그 아래로 도도부현에서 관장하며 소지방 단위인 시구정촌으로 전달되는 3단계 전달체제로 제공되고 있다.

모든 3~5세 유아에게 1일 4시간의 무상교육이 제공되고 그 이후 시간에는 부모의 재정 상태와 소득 정도에 따라 교육이나 보육비용이 부과되며,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2013년 70.2%, 민간지출은 29.8%로 국가지원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박은혜, 장민영, 2014). 다음의 표는 일본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내용이다.

〈표 II-3-6〉 일본의 장애아 지원 내용

구분		내용
기관 재원 중인 영유아 대상	영유아교육기관 방문 지원	전문가가 유치원, 보육소, 신인정원, 특수학교, 아동 요양시설 등을 방문하여 장애영유아가 또래와 집단생활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지원 실시
	특별지원학교 (특수학교)	장애가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학습상 또는 생활상 곤란을 극복하고 자립에 필요한 지적기능을 몸에 익히는 것이 목적인 학교로,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지역지원센터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음.
	방과 후 등 주간 서비스	방과 후 또는 휴교일에, 아동발달지원센터 등의 시설에서 생활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사회교류촉진 등의 활동 실시

구분		내용
기관 미이용 장애영유아 대상	거주지 방문 지원	중도의 장애자 등으로 인해 외출이 현저히 곤란한 장애아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발달지원 실시
입소	복지형 장애아 입소시설	시설에 입소한 장애아를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지도 등 실시
	의료형 장애아 입소시설	시설에 입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장애아를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지도 등 치료 실시
관련기관 및 복지 서비스	보건소	영유아 발달검사 및 검진, 보건소로부터 양육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가 발달장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먼저 보건소나 의료 기관방문을 권장함.
	지역치료(요육) 센터	장애나 그 우려가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검진, 요육, 평가, 상 담접속 및 순회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지원뿐만 아니 라 각 의료 기간이나 보육원,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과 연계하 여,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부모의 장애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부모훈련 등을 실시하여 가족지원을 병행함.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련의 종합창구로 아동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요육 수첩의 판정 실시, 필요한 지원기관이나 요육기관 의 소개를 하고 있음, 행동 문제 등으로 자택에서 지내기 힘들게 된 경우 등의 일시 적 보호 실시
	민간치료(요육) 교실	장애아의 요육을 목적으로 한 교실로, 요육 내용은 각 교실의 방침에 따라 다르며 발어에 관한 언어교실이나 적정행동을 촉 진시켜 주는 ABA 교수법을 이용한 교실, 감각 통합을 실시하 는 교실 등 다양하고, 이용료는 전액 개인 부담임.

자료: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2021a).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육아정책
연구소. pp.105-108, 재인용하여 재구성함.

다) 교사교육

일본의 유치원은 유치원교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어린이집(보육소)은 보육사(보
육교사)가 교육 및 보육을 담당한다. 유보통합 시행으로 설립된 통합기관인 신인정
어린이집(구: 인정어린이집)은 유치원교사 자격과 보육사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들
이 교육과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2,
3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특수교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사자격이 있는 자가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본의 보육사(보육교사) 취득은 교사에 비해 취
득 경로가 다양하다. 보육사 대부분은 보육사양성학교인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
교, 양성시설) 졸업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다(손유진, 전윤숙, 2016).

반면 특수교사 자격은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일반교사 양성과정과 통합된 형태로 양성되고 자격증은 일반교사와 분리된 형태로 발급되며, 명칭을 각각 ‘특수 학교 교사’와 ‘특별지원학교 교사’와 같이 특정 교육 공간을 중심으로 명명하고 있다. 일본의 특수교사 자격증은 자격증 종류(보통면허장, 특별면허장, 임시면허장), 자격유형 구분(장애영역별), 자격 급수(보통면허장은 2종, 1종, 전수) 등으로 한국 보다 더 다양하고 세부 장애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특수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기초자격으로 일반교사 자격증이 있어야하므로 교육실습도 일반학교와 특수학교(특별지원학교)에서 2회에 걸쳐서 수행해야 한다(고인기, 2021).

일본은 2009년부터 ‘교원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높여 교사로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단에서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사는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최신의 지식과 기능을 몸에 익혀야 하는데 갱신은 매 10년마다 해야 하며 만료 2년 전부터 최저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대학, 통신 인터넷이나 방송 등 면허증 갱신강습 중에서 필요한 강습을 선택해 수강 할 수 있고, 강습 내용은 학교, 교과 종류에 상관없이 교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홍광식, 2011).

다. 소결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와 우리나라와 같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와 법이 다르게 적용되어 분리 운영하는 몇 개국의 관련법, 관할부처, 지원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국가들은 유아교육의 질을 우선시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가 교육부 단일 부처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교육과 보육 서비스는 연령, 영유아의 발달 특성, 영유아가 속한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영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는 교육과 보육의 분리가 아닌 통합적 개념을 통해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사한 선진국에서는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영유아에게 제한이 있는 공적

지출을 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수당과 유급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유아교사자격은 대부분 3-3.5년의 교육기간을 요구하나 특수교사의 경우는 일반교사 자격 취득 후 시험을 치루거나 상위과정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또는 분리 운영 국가 모두 장애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의 자격조건, 교사교육,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장애영유아와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 운영과 기관의 유형과 상관없이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지원되어야 한다.

III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에 관한 의견 분석

01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분석

02 정책토론회 및 자문회의 의견 결과 분석

Ⅲ.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에 관한 의견 분석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가. 조사개요

본 장에서는 유아특수-장애영유아보육 분야 유보통합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위한 유보통합 시 쟁점이 되는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핵심정책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1) 응답자 특성

연구수행을 위해 유아특수-장애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 40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전문가 패널 40명은 유아특수-장애영유아 관련 연구 경험자, 관련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현장 전문가,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 동의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유아특수/유아교육 전문가 20명, 장애영유아보육/보육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추천을 통해 패널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1차, 2차 전문가 델파이 의견조사를 수행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40명의 응답자 개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35명(87.5%), 남성 5명(12.5%)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소속의 경우, 학자 및 교수 19명(47.5%), 현장 전문가 14명(35.0%), 행정가 5명(12.5%), 그리고 기타(부모대표 등) 2명(5.0%)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근무경력 평균 19.8년였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22명(55.0%)가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9명(22.5%), 30년 이상 5명(12.5%), 10년 미만 4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1차,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N=40)

단위: 명, %

구분		빈도 및 백분율	
		빈도	비율
성별	여성	35	87.5
	남성	5	12.5
직책	학자 및 교수	19	47.5
	현장전문가	14	35.0
	행정가	5	12.5
	기타	2	5.0
근무경력	30년 이상	5	12.5
	20년 ~ 30년 미만	22	55.0
	10년 ~ 20년 미만	9	22.5
	10년 미만	4	10.0
총 합		40	100.0

2) 조사절차 및 조사지 내용 구성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는 유보통합의 주요 요소와 정책대안에 개방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지 문항은 1차 조사지의 결과와 연구진의 그간의 연구 결과와 이론적 검토 등을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1차 조사 기간은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e-mail 조사였으며,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제시된 조사항목에 대한 양적 의견 조사로 문항에 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의 동의 정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 진행되었다. 1차와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의 내용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1-2〉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구분	영역	문항	질문내용
I	영유아단계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방향 설정과 구체적 정책 제언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	-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및 방향성 - 3~5세 교육평등성 보장, 의무교육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현상 대응 등 - 비전, 아동의 이미지, 철학 등
		교사자격·양성 체계	- 유특교사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제도 개선 관련 -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유특교사 자격 취득 방법, 경력인정 등 - 양성체계의 개선방안(0~5세 영유아교사 자격 또는 현행유지, 또

구분	영역	문항	질문내용
			- 는 일부 개선)에 따른 유특교사양성체계의 변화 방안 등 - 특수보육교사와 같은 새로운 트랙의 자격양성이 필요한, 필요하지 않은 이유 등 - 유특교사 정원 문제, 또는 보조교사 확보 문제 등
		기관 운영	- 장애통합,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기관운영 모델을 위한 제한 - 유아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통합학급 등)의 다양성 및 유형통합 등 - 의무교육 제도 하에 공공성 강화 방안 - 운영시간, 기관장 자격, 기본과정/방과후과정 운영방안 및 개선점 등 - 학급당 유아 수, 보조인력 지원 등 - (영)유아학교/영유아학교 또는 제3의 모델 등 - 0-2세 학교제도 내 교육과 보육
		재원·재정지원 체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세수가 줄고, 교부금 전체 파이가 줄고 있음) 하에 재원 확보 등 - 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시 고려할점
		행정체계	- 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시 고려할점(보건, 복지, 여성 분야와의 통합적 관점)(장애조기선별 등 시스템 구축) -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의 역할 정립 등 - 시군구 지자체 - 지역교육청 연계시 특수교육대상자 행정지원 관련 방안 등
		법제도	- (가칭) 통합법, 장특법, 장복법과의 관계성 -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 - 정부조직법 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에 관한 의견 등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 유보통합정책결정과정에서의 소통, 참여의 문제해소방안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 자문단, 정책연구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등의 역할과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등(위원회 구성, 대표성,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배제단체, 혐오와 차별, 혐오 비존중의 문제 등) -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부문 의견 상대적 소외 문제 등
II.	유아특수교육/장애영유아 보육기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또는 이와 연동한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환경에 대한 개선 사항
		디지털 인프라 개발 및 지원	- 인프라 구축, 초중등과의 연계, 운영 및 자금, 법제도, 기준 등
III	추가 의견		기타 추가 의견 기술
IV	개인특성배경		소속기관, 성별, 관련분야 경력

〈표 III-1-3〉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구분	영역	문항	질문내용
I	영유아단계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방향 설정과 구체적 정책 제언	유보통합의 필요성	1)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법적 당위성 실현/국가책무성 강화 2) 장애영유아의 교육권/교육평등성 보장(교육기본법, 특수교육법, 장특법 등) - 기관 격차 없는 장애영유아 기본권/권리보장 3) 교육-보육-특수 분야 공공성 강화 4) 장애영유아의 공교육 확대 및 정착지원(국공립 기관 신증설 등) 5) 저출산 문제 해결(기관통합 질 제고) 6) 생애주기별 장애영유아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7) 특수교육대상자/발달지연아동 증가 8) 의무교육기반 장애-비장애 완전통합형 체제로 개편 9)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발달지체 영유아와 장애위험 영유아의 증가) 10) 양질의 교육보육 인프라, 인력 확충 11)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 12) 다양성 교육/인간 존중 통합교육 실행
		유보통합의 방향	1)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영유아 실태조사(통계자료) 통합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2)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해소(치료 지원비, 통학비 등) 3)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초등수요조사 및 입학 유예자 문제 해결 4) (연령 이원화) 0-5세 교육부 체제 내, 0-2세 보육, 3-5세 교육으로 연령별 이원화 5) (연령 일원화) 0-5세 교육부 체제 내, 0-5세 통합형태의 교육체제 일원화 6) (연령 이원화) 0-2세 복지부, 3-5세 교8부 연령별 이원화 7) 국공립 수준의 모든 영/유아를 위한 학교체제 마련(영유아학교/(영)유아학교) 8) 사립 특수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형 제도 시행 9) 유보통합이 되면 일반 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이 되어야 하며 유아교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의 적용 필요 10) 초중등과의 연계 강화, 생애주기별 제도 마련 11) 유치원(유아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12) 사립 기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법인화 13) 기관 미이용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모든 영유아 포용) 14) 일반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유아특수교육과의 협력적 지원 강화 15) 이원화 체제 하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0-2세, 유아특수교사 3-5세 담당하다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특교사 자격을 획득하게 서서히 전환 16) 교권, 인권이 모두 존중되는 학교시스템 구축

구분	영역	문항	질문내용
			자격, 양성, 정원 방향 1) 4년제 유아특수교사 자격, 양성체계는 현행 유지 (별도의 교사양성기관을 마련하기보다 현재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이 합의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 2) 4년제를 기준으로 관련학과 중심으로 통합 필요(장애영유아보육과 3년제→ 4년제) 3)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영아발달, 영아교육 및 지원 등 장애영아 관련 교과목을 신설 4) 유아특수교사양성대학 확대를 통한 정원 확보/지역간 유아특수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 5) 현직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의 자격연수를 통해 유특교사의 정원 확보 가능 -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한시적인 학과(특수교육 교원양성 관련) 설치가 필요 6)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양성 체계는 발달지연과 장애유형별 특수교육전문화 과정 등을 강화 7) 유특교사들도 일원화 체계(0~5세)로 기관이 운영될 경우, 장애영유아 가족 심리 및 지원 체계, 보육 관련 보수교육을 시행(양성과정, 현직과정에서 이수) 8) 4년제에서 “융합전공(보육+유아교육)” 과정 개설, 평생교육 대학(교육부)에서 재직자를 위한 학위과정을 통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과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통로 개설 - 직전교육기관(대학)에서 수강했던 과목을 인정하고 전공과 교직과목을 추가하여 수강하게 함(단, 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사이버대학 등에서의 학점은 제외) 9) 장애영유아교육의 질제고를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유아특수교사의 처우개선을 통일(급여, 퇴직금, 연금 등) 10) 중도중복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진학 및 지원제도 마련 필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제도 개선(특수보육교사 제도 신설 등) 11) ‘특수보육교사’ 자격 신설 및 양성(3~4년제/학과제 도입) - 교대 학제개편에 따른 교사 재교육시스템 적용, 공무원 입직 경로 제도 적용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5년이상인자 특별직무과정 이수후 특수보육교사 자격 부여 12) 유보통합에 적합한 교사 자격 명칭 변경 (유아특수교사를 (영)유아특수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영유아)특수보육교사로 명칭 변경)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1급(실무경력 5년), 2급 13)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 강화 - 취득교과목 추가, 실습과 대면과목 추가 14) 유보통합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돌봄/방과후/0-2세 보육 지원 차별화 - 현재 교육부 통합지원교사 존재(교원자격증 가진 자)

구분	영역	문항	질문내용
			15)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경우, 4년제, 3년제, 2년제를 기준으로 경력에 따른 호봉 책정/연수기간 이수 후 소급 적용을 원칙 보조교사 제도 16) 특수교육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원)의 자격기준 상향 필요 17)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 중 일정 보수교육을 통한 특수교육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원) 전환 18) 모든 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지금의 실무사와 같은 보조인력보다 전문적인 통합교육지원교사가 필요 19) 현행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활용,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 획득 방법 20) 유아특수교육과 학부 재입학/편입학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한 자격 획득 (지역별 유아특수교육과가 없는 경우, 방통대 유아특수교육과 신설 가능,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경력인정으로 실습기간 단축 가능) 21) 현직 근무교사, 올해 또는 내년 졸업예정자의 경우, 유특전공 교육과정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자격연수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동안 과목을 이수) 22) 장애아어린이집(장애전문, 장애아통합)에서 3년/5년 이상 장애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경력 교사에게는 보수교육(자격 연수 시스템) 마련을 통한 자격 획득 23) 장애아어린이집(장애전문, 장애아통합)에서 3년/5년 이상 장애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경력 교사에게는 국가시험 제도 마련을 통한 자격 획득 24) 장애아어린이집(장애전문, 장애아통합)에서 3년/5년이상 장애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경력 교사에게는 국가시험 + 보수교육(자격 연수 시스템 제도 마련을 통한 자격 획득 25)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서 장애유아를 위해 헌신한 부분은 인정하나, 교사로서의 경력을 인정받는 시점은 교사 자격 취득 후부터 가능 - 단, 교육부에 소속된 교원이 타업종의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교원이 될 경우 그에 준한 경력을 인정
		기관 운영	기관유형 및 신설 1) 현행 체제 유지(유치원-어린이집-유아특수교육기관)하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 2) 영유아학교 유형으로 정비 - 유아특수학교: 유아반, 영아반 운영 - 일반 유치원(유아학교) 특수학급(유아반, 영아반) - 일반 유치원(유아학교) 통합학급(유아반, 영아반) 3) 중증장애영유아 및 특수학급이 없는 기관 대상 특수교육대상유아 순회교육 확대(재택순회를 제외하고 주3회 분리형 순회교육 지양) 4) 장애영유아특수보육기관 유형으로 정비 - 장애전문어린이집; 유아반, 영아반, 초등 방과후반 운영

구분	영역	문항	질문내용
			- 장애통합어린이집 특수학급(유아반, 영아반) - 장애통합어린이집 통합학급(유아반, 영아반) - 영아 전문 어린이집 5)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유아학교 모델 강화 6) 현행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운영 모델 기반으로 완전통합 모델 필요(치료사 배치) 7) 병원학교 형태의 학급 신설(낮병동 이용 장애영유아 고려)
			0-2세 장애영아 8) 0-2세 장애영아 학교제도에해 보육 중심 개편 9) 영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 후 교육 제공 필요 10) 장애영아, 장애유아 연령별 이원화 체제로 발달적 지원 전문화 11) 영아 교육기관 확대(특수학교 영아학급 설치 등) -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0-2세 학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12) 영유아학교에 영아를 위한 교육과정, 교실구성, 시설설비 등 환경 조성 13) 영아학급 및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지원책 마련 - 현재 영아학급 영아교실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근거만 있음
			운영시간 14) 간급, 아침, 저녁 돌봄 필요 가정 지원 15) 장애영유아 부모 근로시간 감축 지원 16)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간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부모의 요구를 반영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17) 기존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방과후과정 제도 개선(지원인력 지원, 방학 등원, 긴급돌봄 등 돌봄운영시간 최적 지원 등) 18) 장애영유아 출석 인정 여부, 지원금 수량을 위한 최소기준 등 공통의 일관된 규칙이 필요 - 외부치료 등 타기관 서비스를 받고 오후에 등원하거나 주기적으로 방과후 과정에 결석이 많음 19) 특수학급만의 방과후 과정, 긴급돌봄, 돌봄교실이 아닌 통합학급 영유아들과 함께 운영되는 형태를 지향
			교직원 배치/운영 20) 연령별 유아특수교사 배치 21) 유치원 기관장 자격증에 적합하도록 어린이집 관리자 자격증의 상향 필요 22) 일반·특수 공동담임제 운영(서울에서 더공감교실 예시) 23) 기관장(관리자) 외에 교사에서 관리자 승진을 위한 경력인정 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과 유아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에는 차등 필요 24) 교육부에서 일원화할 경우 기관장 자격은 유아특수학교 교장, 교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함 25) 기관장 자격기준에 특수교육과정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 과정 포함 필요

구분	영역	문항	질문내용
			26) 중도장애 영유아 담당 및 일과 중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배치 필요 - 보건소 연계, 지역사회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연계 체계를 마련, 교육청에서 채용한 순회형태의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 27) 교사의 연구 및 교재교구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예. 8시간 근무 중 4시간 교육, 4시간 연구시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개편
			28)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기준으로 운영하며 유아특수교사 선발/배치 의무화 29)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을 장애영아보육전담으로 특화 30)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기준으로 운영하며 파견형 순회교사(유아특수교사) 배치(단, 주3회 분리형 순회교육 지양) 31)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고 관련 장비를 갖추어 건강장애 영유아를 위한 병원학교로 운영. 32)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의 경우 무장애 공간으로 시공 후 지체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로 운영 33)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의 경우 매입형으로 전환하여 임용으로 선발된 유아특수교사 배치 34)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의 경우 긴급돌봄, 지역형 방과후 교실, 거점 치료실(언어/감각/체육 등)로 활용.
			학급당 영/유아수 및 보조인력
			35) 학급당 유아수 조정(3:1→2:1, 1:1), 보조인력 1명 지원 36) 기저귀 착용, 공격행동, 자해행동이 있을 경우 중증으로 간주하여 학급당 유아 수를 줄여주거나 보조인력 배치
	자원·재정지원 체계		1)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 지원의 균등화 - 장특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 수행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 2) 0-2세 장애 영아 지원 - 0-2세 장애영아 조기 선별 및 지원 업무 수행 경비 지원체계 마련 3) 상황적 유보통합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특수교육재정) 확보 필요 - 지방교육 및 복지재정 교부금을 통한 장애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정확보 4) 지원금 미지급 규제 마련 - 에듀파인 및 나이스 미도입, 감사거부 기관 5)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통일, 지도점검 동일 적용 등 6)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각급 유치원에 교부하는데 있어 목적사업 비로 교부 - 다른 용도로 유용되지 않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하게 활용 7)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장애영유아교육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려우므로 민간과 공동으로 지원을 확대 -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장애영유아교육 지원을 유도하고, 장애영유아교육에 대한 기부금을 세액공제하는 등 8) 교육세 인상 등 세수의 추가 확보

구분	영역	문항	질문내용
			장애조기선별시스템 구축 1)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대상자 선정 체계 일원화 - 특수교육대상자/장애 영유아 보육 대상자 선정 절차, 진단 및 평가 시스템 구축 2) 장애조기선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유아학교 입학 전 풀배터리 검사 의무화 - 풀 배터리 (full battery) 검사: 아이의 정서, 사회성, 대인관계, 자기 지각, 가족 관계, 주의력, 지적 발달 수준, 사고방식,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종합 심리 검사 3) 장애조기선별과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4)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유아특수교사 진단평가 담당자를 두고 장애조기 선별을 위한 ‘찾아가는 진단평가’ 프로그램 운영 5)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적검사, 추가검사 등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장애조기선별을 위한 진단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6)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지연의심아동에 대한 교육청 정보연계 지원센터/지자체-지역교육청/교육부-교육청/부처간 통합 연계 7) 통합형 유아특수교육지원센터 구축 (모든 영유아 대상 건강, 교육, 양육, 사회보장, 선별 진단, 치료/재활, 가족 지원, 교육연수, 영아 조기선별, 기관연계 등의 복지, 보건, 여성, 교육 분야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 8) 교육청 및 지자체 인력 연계 통합 - 지방자치단체(226개)와 지역교육지원청(176개) 간의 관할 구역 불일치 해결 방안 마련 - 시군구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행정지원을 공유하고 점차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9) 종합지원 체계를 위한 허브 필요 - 유아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모든 영유아 대상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 또는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 중 지역 마다의 특성에 맞게 허브 기관을 정하고 허브 기관의 담당자를 정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역할 정립 및 분담 10)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의 역할 정립 -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각 구별로 설치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청의 전반적인 교육과 양육지원 업무 - 장애아동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11) 교육청의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내 유아교육 담당을 모두 유아교육과로 확대배치. 국립영유아교육원(가칭)을 신설하여 중심으로 교원연수, 보수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국립영유아교육원을 본부로 하고 각 교육청과 육종 등의 분담을 통해 현재의 시스템을 통한 현장지원을 함 12) 장애영유아와 일반유아의 학비를 모두 유아학비로 지원하는 법 제도가 필요
	행정체계		

구분	영역	문항	질문내용
			- 현재 서울,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장애영유아의 학비를 무상교육비, 일반 유아의 학비를 유아학비로 분리지원. 이에 각종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 교재교구 구입비, 급식비 등을 이중 지출하는 행정업무의 번거로움이 있음. 13) 유아특수교육행정담당 전문직 구성 (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시 교육청의 특수교육과에 유아특수교육 행정담당 장학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14) 교육부내 유아교육정책과/국립특수교육원/지역교육청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또는 특수교육정책과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행정 시스템 전문화 15) 4세대 나이스의 오류 해결과 더불어 유아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필요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개별화교육계획 연동 - 장애영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 생활기록부 등 등록 관리 16) 어린이집 정보공시 장애 영유아를 위한 항목 추가 17)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현재 진단평가 접수, 결과지 출력의 기능, 이름검색 불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엑셀로 명부관리 중)
		법제도	현행유지/기준제도개선 1) 새로운 통합법 신설 보다 장특법과 장복법의 개정이 요구 2) 장복법의 장애유아 초등입학 5년 유예 저항 삭제 3) 장특법의 특수교육대상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을 명시 필요 4) 장특법(제 19조 제2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 삭제, 의무교육 제도 재정비,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 5) 장특법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이용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동등한 교육받을 권리 지원 조항 신설 6) 장특법 개정안 통과로 급당 학생 수 감축과 다양한 형태의 치료 지원 강화가 필요 7)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의 지위 명시(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양자에 모두 자격기준을 명기) 8)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법안 마련 9) 어린이집 이용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 필요(초등입학유예자 양산) - 유보통합 이후에는 취학유예 아동은 의무교육 취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취학유예 아동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통합법 마련시 9) 장애인 교육 및 보육의 개념 정립 - 교육 및 보육의 통합인지 또는 병합적 개념인지 정립 10) (가칭) 통합 영유아교육법을 만든다면, 유아특수, 장애영유아 근거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특수교사의 정의 및 배치, 교육과정(IEP), 진단평가, 재활관련 서비스, 행정정지원 기타 등 법 규정 정리

구분	영역	문항	질문내용
			정부조직법 개정 11) 현행 발의된 개정안(이태규 법안)에 동의 -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교육부와 사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 12) 현행 발의된 개정안(이태규 법안)에 반대 및 수정필요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서 교육부에 영유아 보육의 사무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 필요 1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진단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 인원이 훨씬 증가하므로, 행정인력 지원이 동시에 진행 필요 14) 기존 지자체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서서히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포함) 15) 현행 발의된 개정안(전주혜, 조경태 법안/ 교육부장관 시행령)에 동의 -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재정교부금 사용을 위한 법 개정 필요 16) 현행 발의된 개정안(전주혜, 조경태 법안/ 교육부장관 시행령)에 반대 및 수정필요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교육기관과 교육제도 운용을 위하여 쓰여야 할 지방교육재정을 어린이집에 쓰이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과 충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도 위반되므로 개선 필요 17) 지원금 제공과 함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방법도 법에 포함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 참여		유보통합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소통, 참여 문제 1) ‘깜깜이 유보통합’, ‘답정너 유보통합’이 아닌,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중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활동이 필요 2) 토론회 이후 토론회 자료 탑재, 요약정리, YouTube 생중계 진행 시 핵심 편집 요약 등 접근이 용이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 3)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토론회가 필요 4) 법적으로 무상 및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 및 간담회 필요 5)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토론회와 YouTube 생중계 진행으로 해당 시간 내에 참여하지 못하는 관련인들(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 6) 유아특수교육 현장의 소리를 듣는 정책 입안 필요(설문조사, 협의회 등에서 배제) 7) 교육부와 선도교육청 유보통합 TF팀에도 유아특수교육 현장 경험이 있거나 현장에서 근무 중인 유아특수교사가 포함되지 않음. (대부분의 선도교육청 유보통합 TF팀에서는 유아교육 장학사 또는 특수교육 내 특수 초·중등(타전공) 장학사들이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 8) 일부 단체나 학회 등의 집단화된 이익주장 교사 비방/혐오 발언 제재 영유아의 입장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유보통합이 추진 필요

구분	영역	문항	질문내용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 자문단, 정책연구기관 의사결정과정 및 구성/대표성의 문제점 9) 유보통합 추진위 회의록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과정 개선 10) 3차 유보통합 추진위 회의에서 일방적인 심의를 추진·의결한 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 (16명 중의 6명의 반대 의견에 대한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사후처리 필요) 11) 정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유특 전문가 포함 필요 (유보통합 추진위에 유특 현장교사와 유특전문가(장학사, 연구사, 교수), 학부모의 정책위원으로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요구됨) 12) 정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교육, 유아특수 전문가 보완 필요 -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음 종합지원 체계를 위한 허브/ 컨트롤 타워 13)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아특수 현장을 잘 파악하고 대변할 수 있는 유아특수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없음. - 교육부, 지역 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모두 해당 기능을 수행할 인력이 없음.(서울시 교육청-유아특수장학사 선발/국립특수교육원-유아특수교사 출신 연구사가 있음에도 유보통합, 유아특수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음.) 14) 특수 초·중등(타전공) 장학사들이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기 보다 유아특수 전공 장학사 배치 필요
II.	유아특수교육/장애영유아 보육기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1) 누리과정 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명칭 변경 2)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3) 누리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장애영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자료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 - 중도중복, 감각장애, 심각한 공격 및 자해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 누리과정의 적용이 어려움. 4) 현재 발간된 국립특수교육원의 참고자료를 대신할 조금 더 전문적인,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 5) 유아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IEP 수립 연구 강화 및 정책적 활성화 필요 6)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사용 지도서에는 반드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환경수정의 방안 포함 7) 장애영유아들의 놀이시간 확보가 제일 시급 8) 누리과정 안에서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정(특수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음. -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포함 9) UDL(보편적 학습 설계)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 10) 0-2세 아동과 중복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본교육과정과 같은 기본누리과정(가안)이 개발 필요 11)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영역별 삽화 자료등이 포함된 놀이 자료의 개발이 필요 12) 현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장애영유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

구분	영역	문항	질문내용
		디지털 인프라 개발 및 지원	1)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이 필요(장애영역별, 정도별, 특성과 흥미별 맞춤형 개별수업 중심) 2) AI 도입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장애영유아 지원 확대 3) 공간에 대한 부적응은 많은 경험으로 긴장도를 낮춰주는 교육적 효과가 있음으로 VR체험을 통한 교육 접근 필요 4) 유아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앱 개발(인공지능 포함) 5)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공학기기 개발 6)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 특수교육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발 - 교육주체 참여 가능한 플랫폼 구축
III	추가 의견		기타 추가 의견 기술

3) 조사방법 및 통계처리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하였고, 질적분석을 통해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2차 조사에서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성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CV)를 도출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awshe(1975)의 기준에 따라 전문가 40명⁹⁾일 때, .29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중요도와 CVR을 교차하여 각각의 평균과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문항으로서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교차하여 LFF(Locus for Focus)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분석결과

1) 영유아단계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방향 설정과 구체적 정책 제언

가) 유보통합의 필요성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해당된 12개 항목 중요도의 경우 모두 타당하였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의 중요도 평균은 4.59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8) 평균이 높으면 델파이 조사 문항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변이계수인 CV는 표준편차(σ)를 산술평균(μ)로 나눈 것이다. CV값이 0.5보다 낮을 경우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되었음을 의미한다(Englsh & Kernan, 1976). 한편, CVR은 델파이 조사 문항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통계량이다. CVR은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의 수에 따라 최소값이 결정된다.

9) Lawshe(1975)의 기준에서 패널 수 40명일 때의 CVR 최소값 기준이 .2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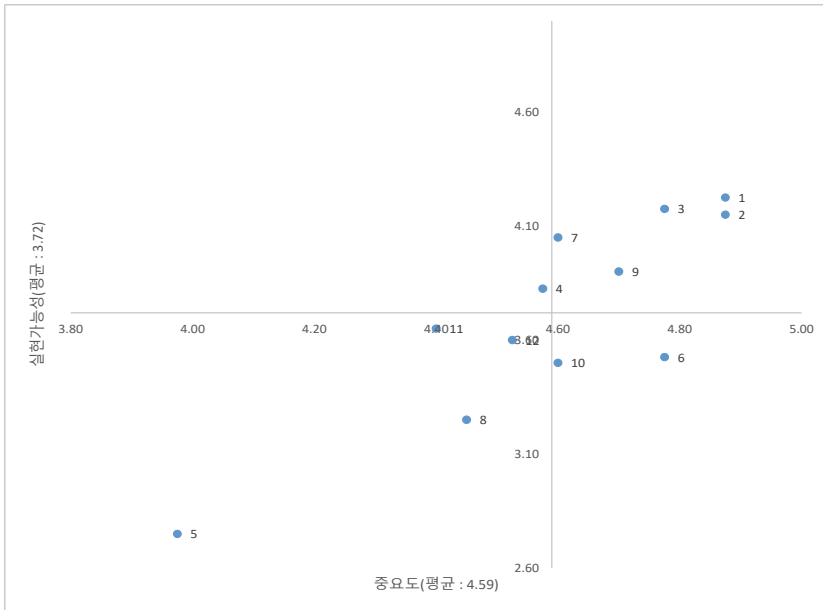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 1)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법적 당위성 실현, 2)장애영유아의 교육권/교육평등성 보장, 3)교육-보육-특수 분야 공공성 강화, 7)특수교육대상자/발달지연아동 증가, 9)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 문항이 해당되었다. 이 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요도, 실현가능성 모두 높다고 판단하였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5)저출산 문제 해결(기관통합 질 제고), 8)의무교육기반 장애-비장애 완전통합형 체제로 개편, 11)의무교육기반 장애-비장애 완전통합형 체제로 개편, 12)다양성 교육/인간 존중 통합교육 실행 항목이 해당되었다.

〈표 III-1-4〉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결과표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1)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법적 당위성 실현/국가책임 강화	4.88	0.65	0.95	0.13	4.23	1.00	I
2) 장애영유아의 교육권/교육평등성 보장(교육기본법, 특수교육법, 장특법 등) - 기관 격차 없는 장애영유아 기본권/권리보장	4.88	0.65	0.95	0.13	4.15	1.12	I
3) 교육-보육-특수 분야 공공성 강화	4.78	0.70	0.95	0.15	4.23	1.03	I
4) 장애영유아의 공교육 확대 및 정착지원(국공립 기관 신증설 등)	4.58	0.84	0.85	0.18	3.88	1.07	II
5) 저출산 문제 해결(기관통합 질 제고)	3.98	1.27	0.50	0.32	2.83	1.22	III
6) 생애주기별 장애영유아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4.78	0.70	0.95	0.15	3.63	1.17	IV
7) 특수교육대상자/발달지연아동 증가	4.55	0.93	0.75	0.20	4.00	1.04	I
8) 의무교육기반 장애-비장애 완전통합형 체제로 개편	4.50	1.04	0.80	0.23	3.38	1.15	III
9)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발달지체 영유아와 장애위험 영유아의 증가)	4.70	0.72	0.90	0.15	3.98	0.95	I
10) 양질의 교육보육 인프라, 인력 확충	4.60	0.90	0.80	0.20	3.63	1.21	IV
11)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	4.40	1.01	0.60	0.23	3.75	1.01	III
12) 다양성 교육/인간 존중 통합교육 실행	4.53	0.99	0.75	0.22	3.68	1.23	III

[그림 III-1-1]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결과 LFF



나) 유보통합의 방향

‘유보통합의 방향’에 해당된 16개 항목 중, 중요도의 경우, 5개 항목인, 4) (연령 이원화) 0-5세 교육부 체제 내, 0-2세 보육, 3-5세 교육으로 연령별 이원화, 5) (연령 일원화) 0-5세 교육부 체제 내, 0-5세 통합형태의 교육체제 일원화, 6) (연령 이원화) 0-2세 복지부, 3-5세 교육부 연령별 이원화, 12) 사립 기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법인화, 15) 이원화 체제 하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0-2세, 유아특수교사 3-5세 담당하다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특교사 자격을 획득하게 서서히 전환 항목은 타당하지 않았다. ‘유보통합의 방향’의 중요도 평균은 4.41로 높은 편이었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는 1) (부처 이원화 문제해결) 영유아 실태조사(통계자료) 통합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2)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해소(치료지원비, 통학비 등), 3)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초등수요조사 및 입학유예자 문제 해결, 14) 일반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유아특수교육과의 협력적 지원 강화 문항이

해당되었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7) 국공립 수준의 모든 영/유아를 위한 학교체제 마련(영유아학교/(영)유아학교) 8) 사립 특수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형 제도 시행, 9) 유보통합이 되면 일반 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이 되어야 하며 유아교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의 적용 필요 항목이 해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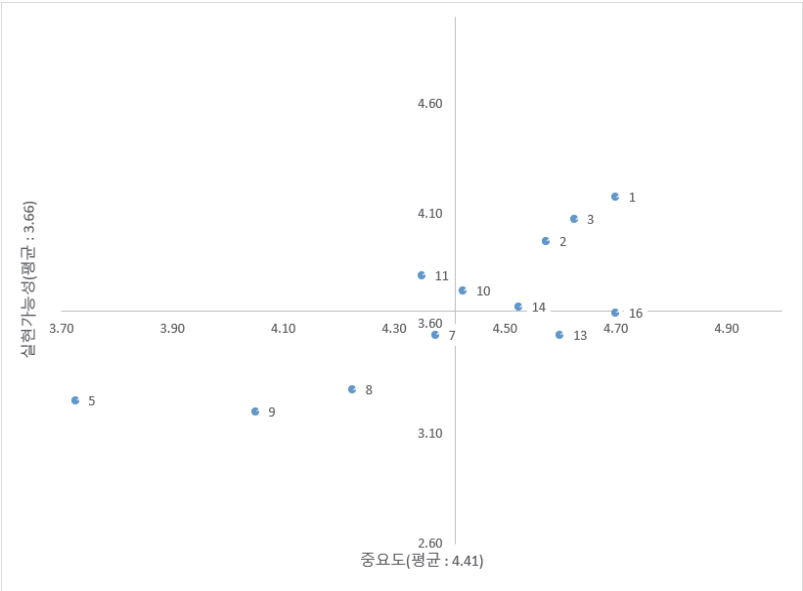
〈표 III-1-5〉 유보통합의 방향에 관한 분석결과표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LFF
	평균	표준편차	CVR	CV	평균	표준편차	
1)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영유아 실태조사(통계자료) 통합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4.75	0.67	0.85	0.14	4.13	1.11	I
2)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해소(치료지원비, 통학비 등)	4.58	0.78	0.75	0.17	3.88	1.24	I
3)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초등수요조사 및 입학유예자 문제 해결	4.63	0.67	0.80	0.14	4.03	1.12	I
4) (연령 이원화) 0-5세 교육부 체제 내, 0-2세 보육, 3-5세 교육으로 연령별 이원화	3.03	1.73	-0.15	0.57	2.75	1.58	-
5) (연령 일원화) 0-5세 교육부 체제 내, 0-5세 통합형태의 교육체제 일원화	3.58	1.74	0.25	0.49	3.25	1.50	-
6) (연령 이원화) 0-2세 복지부, 3-5세 교8부 연령별 이원화	2.40	1.63	-0.50	0.68	2.55	1.55	-
7) 국공립 수준의 모든 영/유아를 위한 학교체제 마련(영유아학교/(영)유아학교)	4.43	0.90	0.70	0.20	3.45	1.32	III
8) 사립 특수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형 제도 시행	4.23	1.03	0.50	0.24	3.25	1.33	III
9) 유보통합이 되면 일반 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이 되어야 하며 유아교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의 적용 필요	4.10	1.10	0.35	0.27	3.18	1.20	III
10) 초중등과의 연계 강화, 생애주기별 제도 마련	4.48	0.78	0.85	0.18	3.68	1.12	II
11) 유치원(유아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4.40	1.15	0.65	0.26	3.77	1.20	II
12) 사립 기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법인화	3.90	1.10	0.25	0.28	3.15	1.00	-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13) 기관 미이용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모든 영유아 포용)	4.60	0.67	0.80	0.15	3.50	1.15	IV
14) 일반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유아특수교육과의 협력적 지원 강화	4.53	0.88	0.85	0.19	3.63	1.27	I
15) 이원화 체제 하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0-2세, 유아특수교사 3-5세 담당하다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특교사 자격을 획득하게 서서히 전환	2.15	1.53	-0.60	0.71	1.93	1.19	-
16) 교권, 인권이 모두 존중되는 학교시스템 구축	4.70	0.79	0.85	0.17	3.60	1.22	IV

주: CVR 최소값 0.29 이하는 검정 굵은체로 표시, 배제 문항을 음영으로 표시

[그림 III-1-2] 유보통합의 방향에 관한 분석결과 LFF



다)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에 해당된 25개 항목 중, 중요도의 경우, 17개 항목인 5), 6), 8), 9), 10), 11), 12), 14), 15), 16), 17), 19), 21), 22), 23), 24), 25)

항목은 타당하지 않았다. ‘교사 자격·양성체계’의 중요도 평균은 4.18였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는 **[자격, 양성, 정원]** 영역 항목인 1)4년제 유아특수교사 자격, 양성체계는 현행 유지(별도의 교사양성기관을 마련하기보다 현재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이 합의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 3)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영아발달, 영아교육 및 지원 등 장애영아 관련 교과목을 신설.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 획득 방법]** 영역 항목인 20) 유아특수 교육과 학부 재입학/편입학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한 자격 획득 (지역별 유아특수교육과가 없는 경우, 방통대 유아특수교육과 신설 가능,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경력인정으로 실습기간 단축 가능) 문항이 해당되었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자격, 양성, 정원]** 영역 항목인 2) 4년제를 기준으로 관련학과 중심으로 통합 필요(장애영유아보육과 3년제→ 4년제), 7) 유특교사들도 일원화 체계(0~5세)로 기관이 운영될 경우, 장애영유아 가족 심리 및 지원 체계, 보육 관련 보수교육을 시행(양성과정, 현직과정에서 이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제도 개선]** 영역 항목인 13)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 강화 취득교과목 추가, 실습과 대면과목 추가 문항이 해당되었다.

〈표 III-1-6〉 교사 자격·양성체계에 관한 분석결과표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자격, 양성, 정원							
1) 4년제 유아특수교사 자격, 양성체계는 현행 유지(별도의 교사양성기관을 마련하기보다 현재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이 합의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	4.65	0.83	0.75	0.18	4.65	0.80	I
2) 4년제를 기준으로 관련학과 중심으로 통합 필요(장애영유아보육과 3년제→4년제)	3.88	1.47	0.35	0.38	3.40	1.41	III
3)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영아발달, 영아교육 및 지원 등 장애영아 관련 교과목을 신설	4.40	1.06	0.65	0.24	4.05	1.15	I
4) 유아특수교사양성대학 확대를 통한 정원 확보/지역간 유아특수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	4.35	1.10	0.75	0.25	3.65	1.42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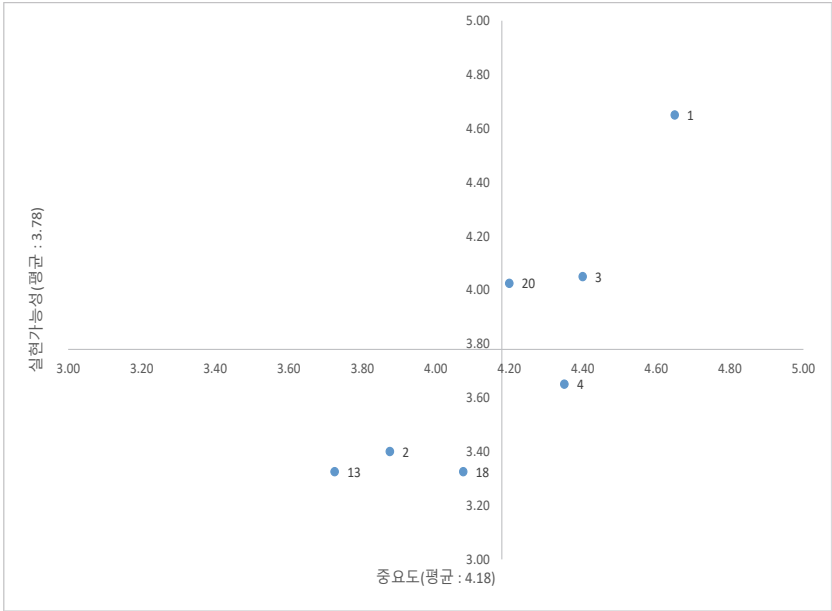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5) 현직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의 자격연수를 통해 유특교사의 정원 확보 가능 -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한시적인 학과(특수교육 교원양성관련) 설치가 필요	2.75	1.88	-0.15	0.68	2.55	1.68	-
6)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양성 체계는 발달지연과 장애유형별 특수교육전문화 과정 등을 강화	3.18	1.62	-0.20	0.51	2.90	1.52	
7) 유특교사들도 일원화 체계(0~5세)로 기관이 운영될 경우, 장애영유아 가족 심리 및 지원 체계, 보육 관련 보수교육을 시행(양성과정, 현직과정에서 이수)	3.63	1.66	0.25	0.46	3.45	1.60	III
8) 4년제에서 “융합전공(보육+유아교육)” 과정 개설, 평생교육 대학(교육부)에서 재직자를 위한 학위과정을 통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과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통로 개설 - 직전교육기관(대학)에서 수강했던 과목을 인정하고 전공과 교직과목을 추가하여 수강하게 함(단, 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사이버대학 등에서의 학점은 제외)	2.85	1.70	-0.20	0.60	2.70	1.59	
9) 장애영유아교육의 질제고를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유아특수교사의 처우개선을 통일(급여, 퇴직금, 연금 등)	2.80	1.65	-0.25	0.59	2.30	1.38	
10) 중도중복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진학 및 지원제도 마련 필요	3.60	1.32	0.05	0.37	3.25	1.30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제도 개선							
11) ‘특수보육교사’ 자격 신설 및 양성(3~4년제/학과제 도입) - 교대 학제개편에 따른 교사 재교육시스템 적용, 공무원 입직 경로 제도 적용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5년이상인자 특별직무과정 연수후 특수보육교사 자격 부여	2.43	1.68	-0.40	0.69	2.28	1.47	
12) 유보통합에 적합한 교사 자격 명칭 변경(유아특수교사를 (영)유아특수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영유아)특수보육교사로 명칭 변경),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1급(실무경력 5년), 2급	2.68	1.65	-0.30	0.62	2.55	1.52	
13)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 강화 취득교과목 추가, 실습과 대면과목 추가	3.73	1.63	0.35	0.44	3.33	1.61	III
14) 유보통합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돌봄/방과후/0~2세 보육 지원 차별화 현재 교육부 통합지원교사 존재(교원자격증 가진 자)	3.20	1.59	-0.10	0.50	2.90	1.53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15)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경우, 4년제, 3년제, 2년제를 기준으로 경력에 따른 호봉 책정/연수기간 이수 후 소급 적용을 원칙	3.05	1.50	-0.20	0.49	2.95	1.38	
보조교사 제도							
16) 특수교육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원)의 자격기준 상향 필요	3.30	1.49	-0.05	0.45	2.90	1.26	
17)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 중 일정 보수교육을 통한 특수교육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원) 전환	3.10	1.35	-0.25	0.44	2.98	1.35	
18) 모든 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지금의 실무사와 같은 보조인력보다 전문적인 통합교육지원교사가 필요	4.08	1.25	0.50	0.31	3.33	1.21	IV
19) 현행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활용,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	3.25	1.43	-0.20	0.44	2.95	1.36	-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 획득 방법							
20) 유아특수교육과 학부 재입학/편입학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한 자격 획득(지역별 유아특수교육과가 없는 경우, 방통대 유아특수교육과 신설 가능,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경력인정으로 실습기간 단축 가능)	4.20	1.20	0.60	0.29	4.03	1.27	I
21) 현직 근무교사, 올해 또는 내년 졸업예정자의 경우, 유특전공 교육과정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자격연수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동안 과목을 이수)	2.80	1.71	-0.20	0.61	2.70	1.67	-
22) 장애아어린이집(장애전문, 장애아통합)에서 3년/5년 이상 장애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경력 교사에게는 보수교육(자격연수 시스템) 마련을 통한 자격 획득	2.40	1.58	-0.30	0.66	2.28	1.50	-
23) 장애아어린이집(장애전문, 장애아통합)에서 3년/5년 이상 장애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경력 교사에게는 국가 시험 제도 마련을 통한 자격 획득	2.35	1.44	-0.45	0.61	2.10	1.32	-
24) 장애아어린이집(장애전문, 장애아통합)에서 3년/5년이상 장애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경력 교사에게는 국가시험 + 보수교육(자격 연수 시스템 제도 마련을 통한 자격 획득	2.55	1.63	-0.40	0.64	2.30	1.52	-
25)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서 장애유아를 위해 헌신한 부분은 인정하나, 교사로서의 경력을 인정받는 시점은 교사 자격 취득 후부터 가능	3.55	1.52	0.10	0.43	3.38	1.53	--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 단, 교육부에 소속된 교원이 타업종의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교원이 될 경우 그에 준한 경력을 인정							

주: CVR 최소값 0.29 이하는 검정 굵은체로 표시, 배제 문항을 음영으로 표시

[그림 III-1-3] 교사 자격·양성체계에 관한 분석결과 LFF



라) 기관 운영

‘기관 운영’에 해당된 36개 항목 중, 중요도의 경우, 14개 항목인, 1), 4), 6), 7), 8), 9), 10), 28), 29), 30), 31), 32), 33), 34) 항목은 타당하지 않았다. ‘기관 운영’의 중요도 평균은 4.36이었다.

중요도와 실행가능성을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는 **[기관유형 및 신설]** 영역 항목인 5)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유아학교 모델 강화, **[0-2세 장애영아]** 영역 항목인 13) 영아학급 및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지원책 마련: 현재 영아학급 영아교실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근거만 있음,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영역 항목인 17) 기존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방과후과정 제도

개선(지원인력 지원, 방학 등원, 긴급돌봄 등 돌봄운영시간 최적 지원 등), 19) 특수학급만의 방과후 과정, 긴급돌봄, 돌봄교실이 아닌 통합학급 영유아들과 함께 운영되는 형태를 지향, [교직원 배치/운영] 영역 항목인 20) 연령별 유아특수교사 배치, 22) 일반·특수 공동담임제 운영(서울에서 더공감교실 예시), 25) 기관장 자격기준에 특수교육과정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 과정 포함 필요, 26) 중도장애 영유아 담당 및 일과 중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배치 필요 문항이 해당되었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기관유형 및 신설] 영역 항목인 2) 영유아학교 유형으로 정비, 3)중증장애영유아 및 특수학급이 없는 기관 대상 특수교육대상 유아 순회교육 확대, [0-2세 장애영아] 영역 항목인 11) 영아 교육기관 확대(특수학교 영아학급 설치 등):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0-2세 학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12) 영유아학교에 영아를 위한 교육과정, 교실구성, 시설설비 등 환경 조성, [운영시간] 14) 긴급, 아침, 저녁 돌봄 필요 가정 지원, 16)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간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부모의 요구를 반영, [교직원 배치/운영] 영역 항목인 21) 유치원 기관장 자격증에 적합하도록 어린이집 관리자 자격증의 상향 필요, 23) 기관장(관리자) 외에 교사에서 관리자 승진을 위한 경력인정 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과 유아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에는 차등 필요, 24) 교육부에서 일원화할 경우 기관장 자격은 유아특수학교 교장, 교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 문항이 해당되었다.

〈표 III-1-7〉 기관운영에 관한 분석결과표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LFF
	평균	표준편차	CVR	CV	평균	표준편차	
기관유형 및 신설							
1) 현재 제체 유지(유치원-어린이집-유아특수교육기관)하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	3.08	1.73	-0.05	0.56	3.08	1.64	-
2) 영유아학교 유형으로 정비 - 유아특수학교: 유아반, 영아반 운영 - 일반 유치원(유아학교) 특수학급(유아반, 영아반) - 일반 유치원(유아학교) 통합학급(유아반, 영아반)	4.10	1.22	0.45	0.30	3.63	1.29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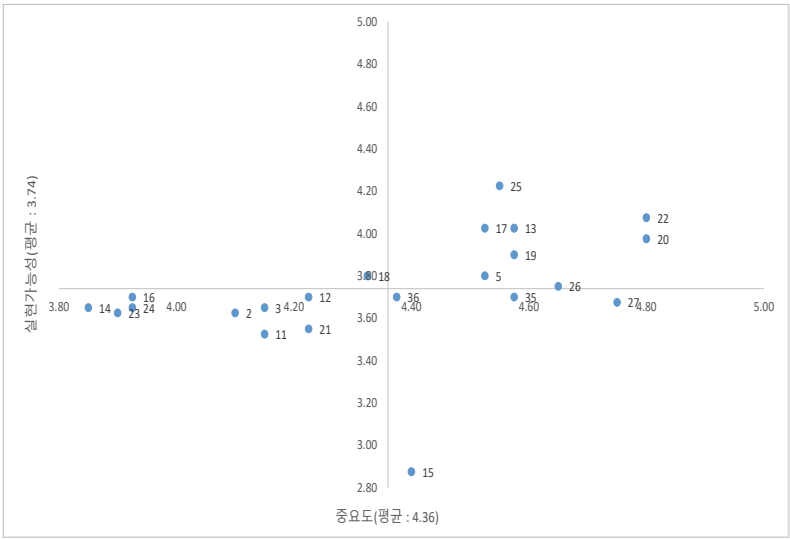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3) 중증장애영유아 및 특수학급이 없는 기관 대상 특수교육대상 유아 순회교육 확대 (재택순회를 제외하고 주3회 분리형 순회교육 지양)	4.15	0.98	0.50	0.24	3.65	1.21	III
4) 장애영유아특수보육기관 유형으로 정비 - 장애전문어린이집; 유아반, 영아반, 초등 방과후반 운영 - 장애통합어린이집 특수학급(유아반, 영아반) - 장애통합어린이집 통합학급(유아반, 영아반) - 영아 전문 어린이집	2.33	1.56	-0.50	0.67	2.45	1.47	-
5)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유아학교 모델 강화	4.53	0.91	0.70	0.20	3.80	1.20	I
6) 현행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운영 모델 기반으로 완전통합 모델 필요(치료사 배치)	3.35	1.56	0.05	0.47	3.03	1.37	-
7) 병원학교 형태의 학급 신설(낮병동 이용 장애영유아 고려)	3.65	1.46	0.10	0.40	3.18	1.36	-
0-2세 장애영아							
8) 0-2세 장애영아 학교제도에해 보육 중심 개편	3.40	1.48	-0.05	0.44	3.05	1.36	-
9) 영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 후 교육 제공 필요	3.28	1.52	0.05	0.46	2.85	1.44	-
10) 장애영아, 장애유아 연령별 이원화 체제로 발달적 지원 전문화	3.55	1.63	0.20	0.46	3.10	1.65	-
11) 영아 교육기관 확대(특수학교 영아학급 설치 등) -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0-2세 학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4.15	1.23	0.55	0.30	3.53	1.43	III
12) 영유아학교에 영아를 위한 교육과정, 교실 구성, 시설설비 등 환경 조성	4.23	1.17	0.55	0.28	3.70	1.30	III
13) 영아학급 및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지원책 마련 - 현재 영아학급 영아교실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근거만 있음	4.58	0.93	0.75	0.20	4.03	1.19	I
운영시간							
14) 간급, 아침, 저녁 돌봄 필요 가정 지원	3.85	1.31	0.30	0.34	3.65	1.19	III
15) 장애영유아 부모 근로시간 감축 지원	4.40	1.03	0.65	0.23	2.88	1.42	IV
16)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간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부모의 요구를 반영	3.93	1.33	0.45	0.34	3.70	1.22	III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17) 기존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방과후과정 제도 개선(지원인력 지원, 방학 등원, 긴급돌봄 등 돌봄운영시간 최적 지원 등)	4.53	0.78	0.75	0.17	4.03	0.97	I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18) 장애영유아 출석 인정 여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최소기준 등 공통의 일관된 규칙이 필요 - 외부치료 등 타기관 서비스를 받고 오후에 등원하거나 주기적으로 방과후 과정에 결석이 많음	4.33	1.00	0.60	0.23	3.80	1.20	Ⅲ
19) 특수학급만의 방과후 과정, 긴급돌봄, 돌봄 교실이 아닌 통합학급 영유아들과 함께 운영되는 형태를 지향	4.58	0.84	0.80	0.18	3.90	0.98	I
교직원 배치/운영							
20) 연령별 유아특수교사 배치	4.80	0.46	0.95	0.10	3.98	1.05	I
21) 유치원 기관장 자격중에 적합하도록 어린 이집 관리자 자격증의 상향 필요	4.23	1.19	0.60	0.28	3.55	1.18	Ⅲ
22) 일반·특수 공동담임제 운영(서울에서 더공감교실 예시)	4.80	0.41	1.00	0.08	4.08	1.07	I
23) 기관장(관리자) 외에 교사에서 관리자 승진을 위한 경력인정 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과 유아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에는 차등 필요	3.90	1.39	0.35	0.36	3.63	1.39	Ⅲ
24) 교육부에서 일원화할 경우 기관장 자격은 유아특수학교 교장, 교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	3.93	1.37	0.30	0.35	3.65	1.46	Ⅲ
25) 기관장 자격기준에 특수교육과정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 과정 포함 필요	4.55	0.75	0.70	0.16	4.23	0.97	I
26) 중도장애 영유아 담당 및 일과 중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배치 필요 - 보건소 연계, 지역사회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연계 체계를 마련, 교육청에서 채용한 순회형태의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	4.65	0.62	0.95	0.13	3.75	1.28	I
27) 교사의 연구 및 교재교구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예. 8시간 근무 중 4시간 교육, 4시간 연구시간)	4.75	0.49	0.95	0.10	3.68	1.27	Ⅳ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개편							
28)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기존으로 운영하며 유아특수교사 선발/배치 의무화	3.68	1.54	0.25	0.42	2.80	1.42	-
29)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을 장애영아보육전담으로 특화	2.55	1.58	-0.40	0.62	2.50	1.48	-
30)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기존으로 운영하며 파견형 순회교사(유아특수교사) 배치(단, 주 3회 분리형 순회교육 지양)	2.60	1.37	-0.45	0.53	2.53	1.34	-
31)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고 관련 장비를 갖추어 건강장애 영유아를 위한 병원학교로 운영.	2.63	1.48	-0.45	0.56	2.15	1.21	-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32)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의 경우 무장애 공간으로 시공 후 지체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로 운영	2.60	1.53	-0.45	0.59	2.15	1.19	-
33)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의 경우 매입형으로 전환하여 임용으로 선발된 유아특수교사 배치	3.43	1.55	0.10	0.45	2.95	1.41	-
34)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의 경우 긴급돌봄, 지역형 방과후 교실, 거점 치료실(언어/감각/체육 등)로 활용	3.25	1.55	-0.10	0.48	2.93	1.54	-
학급당 영/유아수 및 보조인력							
35) 학급당 유아수 조정(3:1→2:1, 1:1), 보조인력 1명 지원	4.58	0.90	0.80	0.20	3.70	1.26	IV
36) 기저귀 착용, 공격행동, 자해행동이 있을 경우 중증으로 간주하여 학급당 유아 수를 줄여주거나 보조인력 배치	4.38	1.00	0.70	0.23	3.70	1.24	IV

주: CVR 최소값 0.29 이하는 검정 굵은체로 표시, 배제 문항을 음영으로 표시

[그림 III-1-4] 기관운영에 관한 분석결과 LFF



마) 재원·재정지원체계

‘재원·재정지원체계’에 해당된 8개 항목 중, 중요도의 경우, 1개 항목인 7)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장애영유아교육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려우므로 민간과 공동으로 지원을 확대 항목은 타당하지 않았다. ‘재원·재정지원체계’의 중요도

평균은 4.71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는 1)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 지원의 균등화, 2) 0-2세 장애 영아 지원: 0-2세 장애영아 조기 선별 및 지원 업무 수행 경비 지원체계 마련, 5)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통일, 지도점검 동일 적용, 6)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각급 유치원에 교부하는데 있어 목적사업비로 교부 문항이 해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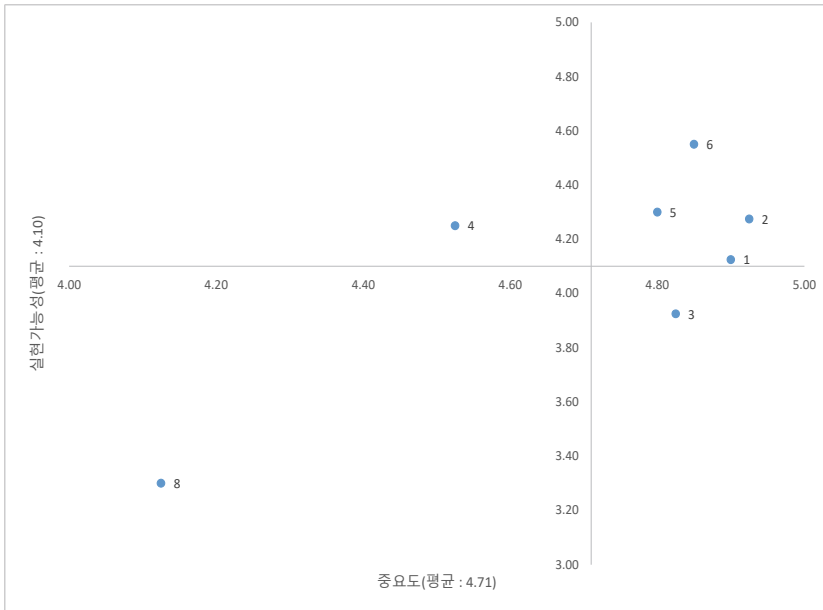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8) 교육세 인상 등 세수의 추가 확보 문항이 해당되었다.

〈표 III-1-8〉 자원·재정지원체계에 관한 분석결과표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1)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 지원의 균등화 - 장특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 교육 지원 업무 수행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	4.90	0.50	0.95	0.10	4.13	1.16	I
2) 0-2세 장애 영아 지원 - 0-2세 장애영아 조기 선별 및 지원 업무 수행 경비 지원체계 마련	4.93	0.35	0.95	0.07	4.28	1.04	I
3) 상향적 유보통합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특수 교육재정) 확보 필요 - 지방교육 및 복지재정 교부금을 통한 장애영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정확보	4.83	0.55	0.85	0.11	3.93	1.10	IV
4) 지원금 미지급 규제 마련 - 에듀파인 및 나이스 미도입, 감사거부 기관	4.53	0.72	0.85	0.16	4.25	1.01	II
5)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통일, 지도점검 동일 적용 등	4.80	0.46	0.95	0.10	4.30	1.02	I
6)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각급 유치원에 교부하는데 있어 목적사업비로 교부 - 다른 용도로 유용되지 않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하게 활용	4.85	0.43	0.95	0.09	4.55	0.81	I
7)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장애영유아교육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려우므로 민간과 공동으로 지원을 확대 -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장애영유아교육 지원을 유도하고, 장애영유아교육에 대한 기부금을 세액공제하는 등	3.73	1.38	0.20	0.37	3.28	1.30	-
8) 교육세 인상 등 세수의 추가 확보	4.13	1.04	0.40	0.25	3.30	1.20	III

주: CVR 최소값 0.29 이하는 검정 굵은체로 표시, 배제 문항을 음영으로 표시

[그림 III-1-5] 자원·재정지원체계에 관한 분석결과 LFF



바) 행정 및 전달체계

‘행정 및 전달체계’에 해당된 17개 항목 중요도의 경우, 1개 항목인 11) 교육청의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내 유아교육 담당을 모두 유아교육과로 확대배치. 국립 영유아교육원(가칭)을 신설하여 중심으로 교원연수, 보수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문항이 타당하지 않았다. ‘행정 및 전달체계’의 중요도 평균은 4.65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본면에는 **[장애조기 선별시스템 구축]** 영역 항목인 1)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대상자 선정 체계 일원화, 3) 장애조기선별과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5)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적검사, 추가검사 등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장애조기선별을 위한 진단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6)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지연의심아동에 대한 교육청 정보연계, **[지원센터/지자체-지역교육청/교육부-교육청/부처간 통합 연계]** 영역 항목인 13) 유아특수교육행정담당 전문직 구성(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시 교육청의 특수교육과에 유아특수교육 행정담당 장학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14) 교육부내 유아교육정책과/국립특수교육원/지

역교육청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또는 특수교육정책과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행정 시스템 전문화] 영역 항목인 15) 4세대 나이스의 오류 해결과 더불어 유아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필요, 17)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현재 진단평가 접수, 결과지 출력의 기능, 이름검색 불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엑셀로 명부관리 중) 문항이 해당되었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장애조기선별시스템 구축] 영역 항목인 2) 장애조기선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유아학교 입학 전 풀배터리 검사 의무화, [지원센터/지자체-지역교육청/교육부-교육청/부처간 통합 연계] 영역 항목인 9) 종합지원 체계를 위한 허브 필요, 10)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의 역할 정립 문항이 해당되었다.

〈표 III-1-9〉 행정 및 전달체계에 관한 분석결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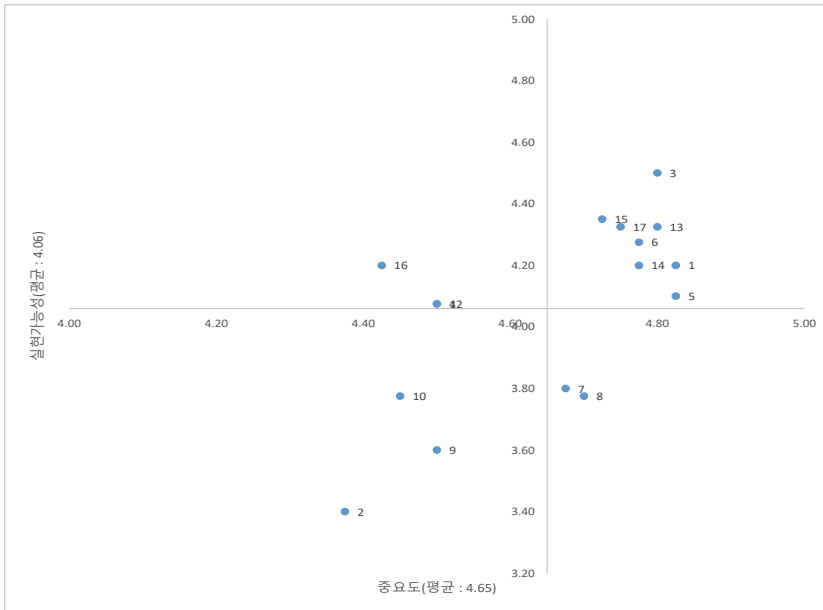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장애조기선별시스템 구축							
1)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대상자 선정 체계 일원화 - 특수교육대상자/장애 영유아 보육 대상자 선정 절차, 진단 및 평가 시스템 구축	4.83	0.50	0.90	0.10	4.20	1.04	I
2) 장애조기선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유아학교 입학 전 풀배터리 검사 의무화 - 풀 배터리 (full battery) 검사: 아이의 정서, 사회성, 대인관계, 자기 지각, 가족 관계, 주의력, 지적 발달 수준, 사고방식,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종합심리 검사	4.38	1.10	0.65	0.25	3.40	1.41	III
3) 장애조기선별과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4.80	0.52	0.90	0.11	4.50	0.85	I
4)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유아특수교사 진단평가 담당자를 두고 장애조기 선별을 위한 ‘찾아가는 진단평가’ 프로그램 운영	4.50	0.99	0.75	0.22	4.08	1.19	II
5)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적검사, 추가검사 등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장애조기선별을 위한 진단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4.83	0.50	0.90	0.10	4.10	1.06	I
6)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지연의심아동에 대한 교육청 정보연계	4.78	0.58	0.95	0.12	4.28	0.99	I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지원센터/지자체-지역교육청/교육부-교육청/부처간 통합 연계							
7) 통합형 유아특수교육지원센터 구축 (모든 영유아 대상 건강, 교육, 양육, 사회보장, 선별 진단, 치료/재활, 가족 지원, 교육연수, 영아 조기선별, 기관연계 등의 복지, 보건, 여성, 교육 분야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	4.68	0.83	0.75	0.18	3.80	1.18	IV
8) 교육청 및 지자체 인력 연계 통합 - 지방자치단체(226개)와 지역교육지원청(176개) 간의 관할 구역 불일치 해결 방안 마련 - 시군구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행정지원을 공유하고 점차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4.70	0.69	0.75	0.15	3.78	1.23	IV
9) 종합지원 체계를 위한 허브 필요 - 유아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모든 영유아 대상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 - 또는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 중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게 허브 기관을 정하고 허브 기관의 담당자를 정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역할 정립 및 분담	4.50	0.99	0.80	0.22	3.60	1.26	III
10)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의 역할 정립 -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각 구별로 설치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청의 전반적인 교육과 양육지원 업무 - 장애아동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4.45	1.08	0.70	0.24	3.78	1.14	III
11) 교육청의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내 유아교육 담당을 모두 유아교육과로 확대배치. 국립영유아교육원(가칭)을 신설하여 중심으로 교원연수, 보수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국립영유아교육원을 본부로 하고 각 교육청과 육종 등의 분담을 통해 현재의 시스템을 통한 현장지원을 함	3.80	1.32	0.25	0.35	3.23	1.37	-
12) 장애영유아와 일반유아의 학비를 모두 유아학비로 지원하는 법 제도가 필요	4.50	1.09	0.70	0.24	4.08	1.19	II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 현재 서울,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역에 서만 장애영유아의 학비를 무상교육비, 일반 유아의 학비를 유아학비로 분리지 원. 이에 각종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 교재교구 구입비, 급식비 등을 이중 지 출하는 행정업무의 번거로움이 있음.							
13) 유아특수교육행정담당 전문직 구성 (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시 교육청의 특수교육과에 유아특수교육 행 정담당 장학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한 중 합적 지원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4.80	0.56	0.95	0.12	4.33	1.00	I
14) 교육부내 유아교육정책과/국립특수교육 원/지역교육청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 력 연구사 배치 또는 특수교육정책과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4.78	0.58	0.95	0.12	4.20	0.94	I
행정 시스템 전문화							
15) 4세대 나이스의 오류 해결과 더불어 유 아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필요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개별화교육계획 연동 - 장애영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 생활기록부 등 등록 관리	4.73	0.55	0.90	0.12	4.35	1.05	I
16) 어린이집 정보공시 장애 영유아를 위 한 항목 추가	4.43	1.13	0.75	0.26	4.20	1.18	II
17)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현재 진단평가 접수, 결과지 출 력의 기능, 이름검색 불가, 특수교육지 원센터에서 엑셀로 명부관리 중)	4.75	0.54	0.90	0.11	4.33	0.97	I

주: CVR 최소값 0.29 이하는 검정 굵은체로 표시, 배제 문항을 음영으로 표시

[그림 III-1-6] 행정 및 전달체계에 관한 분석결과 LFF



사) 법제도

‘법제도’에 해당된 18개 항목 중, 4개 항목인 12), 13), 16), 17) 항목은 타당하지 않았다. ‘법제도’의 중요도 평균은 4.51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는 **[현행유지/기존제도개선]** 영역 항목인 3) 장특법의 특수교육대상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을 명시 필요, 4) 장특법(제 19조 제2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 삭제, 의무교육 제도 재정비,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 7)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의 지위 명시(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양자에 모두 자격기준을 명시), 8)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법안 마련, **[통합법 마련시]** 영역 항목인 11) (가칭) 통합 영유아교육법을 만든다면, 유아특수, 장애영유아 근거조항이 반드시 포함, **[정부조직법 개정]** 영역 항목인 1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진단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 인원이 훨씬 증가하므로, 행정인력 지원이 동시에 진행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영역 항목인 18) 지원금 제공과 함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방법도 법에 포함 항목이 포함 문항이 해당되었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현행유지/기존제도개선] 영역 항목인 1) 새로운 통합법 신설 보다 장특법과 장복법의 개정이 요구, 2) 장복법의 장애유아 초등입학 5년 유예 저항 삭제, 5) 장특법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이용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동등한 교육받을 권리 지원 조항 신설, 9) 어린이집 이용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 필요(초등입학유예자 양산), [통합법 마련시] 영역 항목인 10) 장애인 교육 및 보육의 개념 정립, [정부조직법 개정] 영역 항목인 15) 기존 지자체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서서히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문항이 해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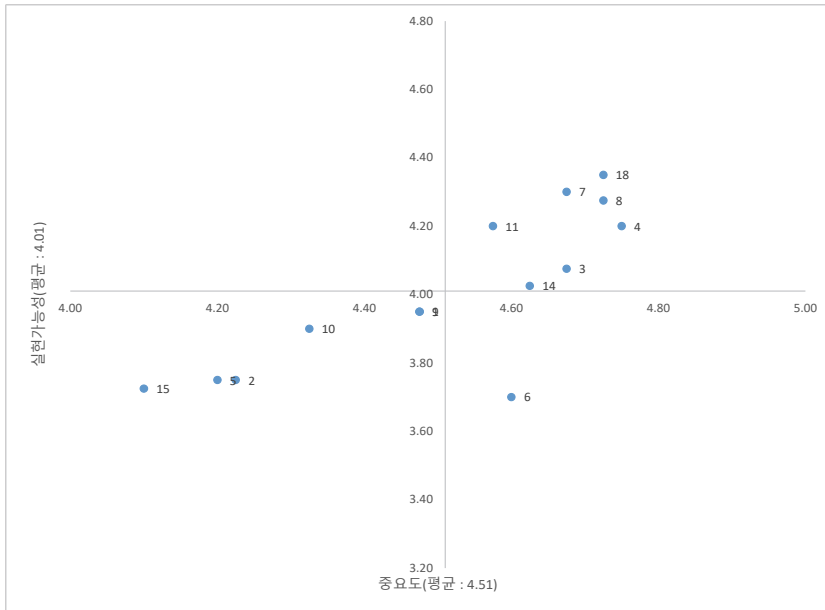
〈표 III-1-10〉 법제도에 관한 분석결과표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현행 유지/기존제도개선							
1) 새로운 통합법 신설 보다 장특법과 장복법의 개정이 요구	4.48	0.96	0.65	0.21	3.95	1.20	Ⅲ
2) 장복법의 장애유아 초등입학 5년 유예 저항 삭제	4.23	1.17	0.45	0.28	3.75	1.30	Ⅲ
3) 장특법의 특수교육대상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을 명시 필요	4.68	0.66	0.90	0.14	4.08	1.05	I
4) 장특법(제 19조 제2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 삭제, 의무교육 제도 재정비,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	4.75	0.84	0.85	0.18	4.20	1.11	I
5) 장특법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이용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동등한 교육받을 권리 지원 조항 신설	4.20	1.32	0.55	0.32	3.75	1.39	Ⅲ
6) 장특법 개정안 통과로 급당 학생 수 감축과 다양한 형태의 치료지원 강화가 필요	4.60	0.74	0.80	0.16	3.70	1.14	Ⅳ
7)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의 지위 명시(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양자에 모두 자격기준을 명기)	4.68	0.69	0.85	0.15	4.30	1.14	I
8)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방안 마련	4.73	0.68	0.85	0.14	4.28	0.96	I
9) 어린이집 이용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 필요(초등입학유예자 양산) - 유보통합 이후에는 취학유예 아동은 의무교육 취학을 해야하는 것인지 취학유예 아동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48	0.88	0.60	0.20	3.95	1.01	Ⅲ
통합법 마련시							
10) 장애인 교육 및 보육의 개념 정립 - 교육 및 보육의 통합인지 또는 병합적 개념 인지 정립	4.33	1.14	0.65	0.26	3.90	1.24	Ⅲ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11) (가칭) 통합 영유아교육법을 만든다면, 유아 특수, 장애영유아 근거조항이 반드시 포함 - 특수교사의 정의 및 배치, 교육과정(IEP), 진단평가, 재활관련서비스, 행재정지원 기탁 등 법 규정 정리	4.58	1.11	0.80	0.24	4.20	1.14	I
정부조직법 개정							
12) 현행 발의된 개정안(이태규 법안)에 동의 -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교육부와 사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	3.73	1.66	0.25	0.45	3.50	1.48	-
13) 현행 발의된 개정안(이태규 법안)에 반대 및 수정필요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서 교육부에 영유아 보육의 사무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 필요	3.15	1.55	-0.15	0.49	3.18	1.43	
14)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진단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 인원이 훨씬 증가하므로, 행정인력 지원이 동시에 진행 필요	4.63	0.81	0.85	0.17	4.03	1.05	I
15) 기존 지자체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서서히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10	1.34	0.50	0.33	3.73	1.26	III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16) 현행 발의된 개정안(전주혜, 조경태 법안/ 교육부장관 시행령)에 동의 -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재정교부금 사용을 위한 법 개정 필요	3.15	1.72	-0.05	0.55	2.95	1.52	
17) 현행 발의된 개정안(전주혜, 조경태 법안/ 교육부장관 시행령)에 반대 및 수정필요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교육기관과 교육제도 운영을 위하여 쓰여야 할 지방교육재정을 어린이집에 쓰이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과 충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도 위반되므로 개선 필요	3.48	1.62	0.10	0.47	3.15	1.51	
18) 지원금 제공과 함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방법도 법에 포함	4.73	0.55	0.90	0.12	4.35	0.89	I

주: CVR 최소값 0.29 이하는 검정 굵은체로 표시, 배제 문항을 음영으로 표시

[그림 III-1-7] 법제도에 관한 분석결과 LFF



아)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에 해당된 14개 항목 중요도의 경우 모두 타당하였다.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의 중요도 평균은 4.78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는 **[유보통합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소통, 참여 문제]** 영역 항목인 1) ‘깁깁이 유보통합’, ‘답정너 유보통합’이 아닌,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중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활동이 필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 자문단, 정책연구기관 의사결정과정 및 구성/대표성의 문제점]** 영역 항목인 11) 정부 유보통합추진위위원회에 유특 전문가 포함 필요, 12) 정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교육, 유아특수 전문가 보완 필요 문항이 해당되었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유보통합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소통, 참여 문제]** 영역 항목인 2) 토론회 이후 토론회 자료 탑재, 요약정리, YouTube 생중계 진행 시 핵심 편집 요약 등 접근이 용이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 6) 유아특수교육 현장의 소리를 듣는 정책 입안 필요(설문조사, 협의회 등에서 배제), 7) 교육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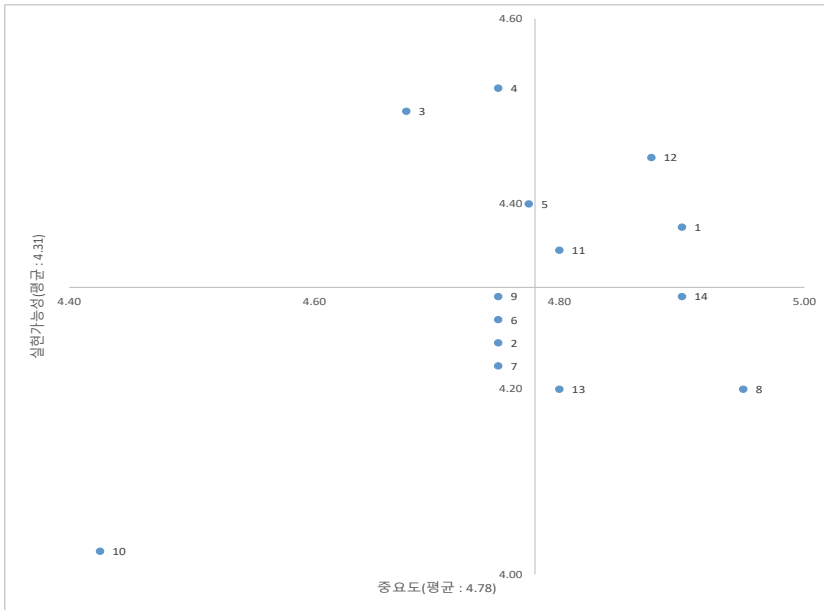
선도교육청 유보통합 TF팀에도 유아특수교육 현장 경험이 있거나 현장에서 근무 중인 유아특수교사가 미포함,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 자문단, 정책연구기관 의사결정과정 및 구성/대표성의 문제점] 영역 항목인 9) 유보통합 추진위 회의록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과정 개선, 10) 3차 유보통합 추진위 회의에서 일방적인 심의를 추진·의결한 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 문항이 해당되었다.

〈표 III-1-11〉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에 관한 분석결과표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유보통합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소통, 참여 문제							
1) ‘깜깜이 유보통합’, ‘답정너 유보통합’이 아닌,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중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활동이 필요	4.90	0.30	1.00	0.06	4.38	0.95	I
2) 토론회 이후 토론회 자료 탑재, 요약정리, YouTube 생중계 진행 시 핵심 편집 요약 등 접근이 용이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	4.75	0.63	0.90	0.13	4.25	1.08	III
3)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토론회가 필요	4.68	0.80	0.85	0.17	4.50	0.82	II
4) 법적으로 무상 및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 및 간담회 필요	4.75	0.84	0.85	0.18	4.53	0.85	II
5)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토론회와 YouTube 생중계 진행으로 해당 시간 내에 참여하지 못하는 관련인들(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	4.78	0.53	0.90	0.11	4.40	0.93	II
6) 유아특수교육 현장의 소리를 듣는 정책 입안 필요(설문조사, 협의회 등에서 배제)	4.75	0.59	0.85	0.12	4.28	1.09	III
7) 교육부와 선도교육청 유보통합 TF팀에도 유아특수교육 현장 경험이 있거나 현장에서 근무 중인 유아특수교사가 미포함 (대부분의 선도교육청 유보통합 TF팀에서는 유아교육 장학사 또는 특수교육 내 특수 초·중등(타전공) 장학사들이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	4.75	0.63	0.80	0.13	4.23	1.10	III
8) 일부 단체나 학회 등의 집단화된 이익주장 교사 비방/혐오 발언 제재, 영유아의 입장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유보통합이 추진 필요	4.95	0.22	1.00	0.04	4.20	1.26	IV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 자문단, 정책연구기관 의사결정과정 및 구성/대표성의 문제점							
9) 유보통합 추진위 회의록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는 방향으로 과정 개선	4.75	0.59	0.85	0.12	4.30	1.07	Ⅲ
10) 3차 유보통합 추진위 회의에서 일방적인 심의를 추진·의결한 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 (16명 중의 6명의 반대 의견에 대한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사후처리 필요)	4.43	0.96	0.60	0.22	4.03	1.21	Ⅲ
11) 정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유특 전문가 포함 필요 (유보통합 추진위에 유특 현장교사와 유특 전문가(장학사, 연구사, 교수), 학부모의 정책위원으로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요구됨)	4.80	0.61	0.90	0.13	4.35	1.10	I
12) 정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교육, 유아특수 전문가 보완 필요 -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음	4.88	0.33	1.00	0.07	4.45	0.90	I
종합지원 체계를 위한 허브/컨트롤 타워							
13)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아특수 현장을 잘 파악하고 대변할 수 있는 유아특수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없음 - 교육부, 지역 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모두 해당 기능을 수행할 인력이 없음.(서울시 교육청-유아특수장학사 선발/국립특수교육원-유아특수교사 출신 연구사가 있음에도 유보통합, 유아특수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음.)	4.80	0.46	0.95	0.10	4.20	0.99	IV
14) 특수 초·중등(타전공) 장학사들이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기보다 유아특수 전공 장학사 배치 필요	4.90	0.38	0.95	0.08	4.30	1.14	IV

[그림 III-1-8]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에 관한 분석결과 LFF



2)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

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에 해당된 12개 항목 중, 7) 장애영유아들의 놀이시간 확보가 제일 시급, 10) 0-2세 아동과 중복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본교육과정과 같은 기본누리과정(가안)이 개발 필요 문항을 타당하지 않았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의 중요도 평균은 4.46이었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는 2)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5) 유아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IEP 수립 연구 강화 및 정책적 활성화 필요, 6)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사용 지도서에는 반드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환경 수정의 방안 포함, 9) UDL(보편적 학습 설계)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 11)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영역별 삽화 자료등이 포함된 놀이자료의 개발이 필요 문항이 해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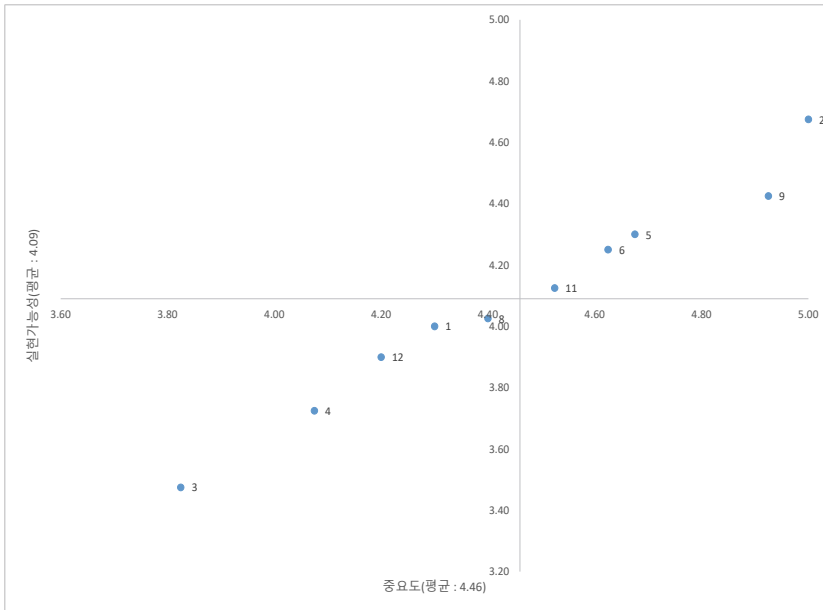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1) 누리과정 유아학교 교육과정으

로 명칭 변경, 3) 누리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장애영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자료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 4) 현재 발간된 국립특수교육원의 참고자료를 대신할 조금 더 전문적인,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 8) 누리과정 안에서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정(특수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추가(2022 개정 교육과정 내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포함), 12) 현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장애영유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 문항이 포함되었다.

〈표 III-1-12〉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에 관한 분석결과표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1) 누리과정 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명칭 변경	4.30	1.29	0.60	0.30	4.00	1.26	Ⅲ
2)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5.00	0.00	1.00	0.00	4.68	0.86	I
3) 누리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장애영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자료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 - 중도중복, 감각장애, 심각한 공격 및 자해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 누리과정의 적용이 어려움.	3.83	1.75	0.40	0.46	3.48	1.50	Ⅲ
4) 현재 발간된 국립특수교육원의 참고자료를 대신할 조금 더 전문적인,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	4.08	1.33	0.45	0.33	3.73	1.38	Ⅲ
5) 유아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IEP 수립 연구 강화 및 정책적 활성화 필요	4.68	0.80	0.85	0.17	4.30	1.02	I
6)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사용 지도서에는 반드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환경수정의 방안 포함	4.63	0.95	0.85	0.21	4.25	1.15	I
7) 장애영유아들의 놀이시간 확보가 제일 시급	3.95	1.15	0.25	0.29	3.75	1.10	-
8) 누리과정 안에서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정(특수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음. -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포함	4.40	1.13	0.75	0.26	4.03	1.29	Ⅲ
9) UDL(보편적 학습 설계)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	4.93	0.27	1.00	0.05	4.43	0.96	I
10) 0-2세 아동과 중복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본교육과정과 같은 기본누리과정(가안)이 개발 필요	3.48	1.63	0.25	0.47	3.28	1.50	-
11)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영역별 삽화 자료 등이 포함된 놀이자료의 개발이 필요	4.53	0.96	0.85	0.21	4.13	1.18	I
12) 현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장애영유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	4.20	1.11	0.55	0.27	3.90	1.28	Ⅲ

[그림 III-1-9]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에 관한 분석결과 LFF



나)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에 해당된 6개 항목 중요도의 경우 모두 타당하였다.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의 중요도 평균은 4.1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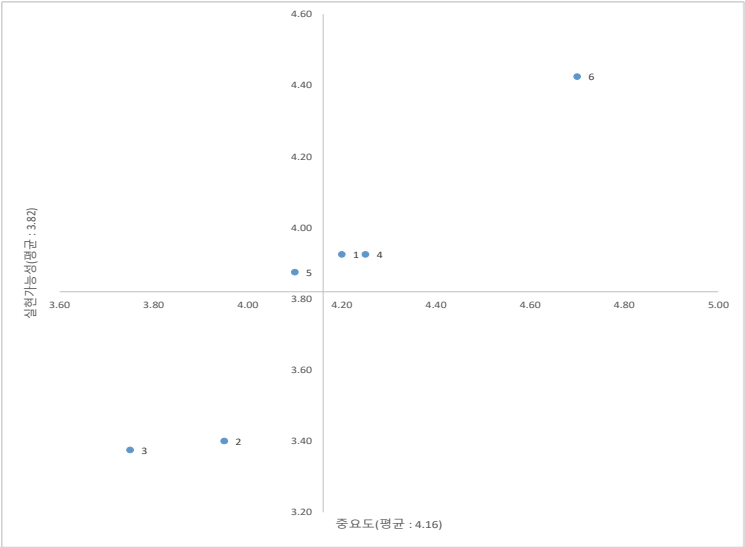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는 1)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이 필요(장애영역별, 정도별, 특성과 흥미별 맞춤형 개별수업 중심), 4) 유아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앱 개발(인공지능 포함), 6)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문항이 해당되었다.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2) AI 도입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장애영유아 지원 확대, 3) 공간에 대한 부적응은 많은 경험으로 긴장도를 낮춰주는 교육적 효과가 있으므로 VR체험을 통한 교육 접근 필요 문항이 포함되었다.

〈표 Ⅲ-1-13〉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에 관한 분석결과표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LFF
	평균	표준 편차	CVR	CV	평균	표준 편차	CVR	CV	
1)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이 필요(장애 영역별, 정도별, 특성과 흥미별 맞춤형 개발수업 중심)	4.20	1.30	0.60	0.31	3.93	1.33			I
2) 시 도입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장애영유아 지원 확대	3.95	1.24	0.40	0.31	3.40	1.34			Ⅲ
3) 공간에 대한 부적응은 많은 경험으로 긴장도를 낮춰주는 교육적 효과가 있음으로 VR 체험을 통한 교육 접근 필요	3.75	1.45	0.35	0.39	3.38	1.41			Ⅲ
4) 유아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앱 개발(인공지능 포함)	4.25	1.10	0.75	0.26	3.93	1.25			I
5)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공학기기 개발	4.10	1.19	0.55	0.29	3.88	1.22			Ⅱ
6)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 특수교육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발, 교육주체 참여 가능한 플랫폼 구축	4.70	0.69	0.85	0.15	4.43	0.93			I

〔그림 Ⅲ-1-10〕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분석결과 LFF



다. 소결

1)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

-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12개 항목 중, 유보통합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5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만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법적 당위성 실현, 둘째, 장애영유아의 교육권/교육평등성 보장, 셋째, 교육-보육-특수분야 공공성 강화, 넷째, 특수교육대상자/발달지연 아동 증가, 다섯째,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임.
- 유보통합의 방향에 해당하는 16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4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영유아 실태조사(통계자료) 통합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둘째,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해소(치료지원비, 통학비 등), 셋째,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초등수요조사 및 입학유예자 문제 해결, 넷째, 일반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유아특수교육과의 협력적 지원 강화 문항이 해당됨.

2) 교사 자격양성 체계

-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에 해당하는 25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3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4년제 유아특수교사 자격, 양성체계는 현행 유지(별도의 교사양성기관을 마련하기보다 현재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이 합의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 둘째,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영아발달, 영아 교육 및 지원 등 장애영아 관련 교과목 신설, 셋째, 유아특수교육과 학부 재입학/편입학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한 자격 획득 (지역별 유아특수교육과가 없는 경우, 방통대 유아특수교육과 신설 가능,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경력인정으로 실습기간 단축 가능) 문항이 해당됨.

3) 기관 운영

- 기관운영에 해당하는 36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8개

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유아학교 모델 강화, 둘째, 영아학급 및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지원책 마련(현재 영아학급 영아교실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근거만 있음), 셋째, 기존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방과후과정 제도 개선(지원인력 지원, 방학 등원, 긴급돌봄 등 돌봄운영시간 최적 지원 등), 넷째, 특수학급만의 방과후과정, 긴급돌봄, 돌봄 교실이 아닌 통합학급 영유아들과 함께 운영되는 형태를 지향, 다섯째, 연령별 유아특수교사 배치, 여섯째, 일반·특수 공동담임제 운영(서울 더공감교실 참조), 일곱째, 기관장 자격기준에 특수교육과정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 과정 포함, 여덟째, 중도장애 영유아 담당 및 일과 중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배치 필요 문항이 해당됨.

4) 재원·재정지원체계

- 재원·재정지원체계에 해당하는 8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4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 지원의 균등화, 둘째, 0-2세 장애 영아 지원(0-2세 장애영아 조기 선별 및 지원 업무 수행 경비 지원체계 마련), 셋째,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통일, 지도점검 동일 적용, 넷째, 특수교육 관련 예산의 각급 유치원 교부 시 목적사업비로 교부 문항이 해당됨.

5) 행정 및 전달체계

- 행정 및 전달체계에 해당하는 17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8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 대상자 선정 체계 일원화, 둘째, 장애 조기 선별과 조기 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셋째,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적검사, 추가검사 등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장애조기선별을 위한 진단평가 의무화, 넷째,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지연의심 아동에 대한 교육청 정보 연계, 다섯째, 유아특수교육 행정 담당 전문직 구성(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시 교육청의 특수교육과에 유아특수교육 행정담당 장학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여섯째, 교육부 내 유아교육정책과/국립특수교육원/지역교육청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또는 특수교육정책과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일곱째, 4세대 나이스의 오류 해결 및 유아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 여덟째,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현재 진단평가 접수, 결과지 출력의 기능, 이름검색 불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엑셀로 명부관리 중) 문항이 해당됨.

6) 법제도

- 법제도에 해당하는 18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모두 높게 나타난 문항은 7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장특법의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 명시, 둘째, 장특법(제 19조 제2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 삭제, 의무교육제도 재정비,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 셋째,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의 지위 명시(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양자에 모두 자격기준을 명기), 넷째,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강화,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법안 마련, 다섯째, (가칭) 통합 영유아교육법을 만든다면, 유아특수, 장애영유아 근거조항 반드시 포함, 여섯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진단평가 후 관리 대상자 인원 증가 대비, 행정인력 지원 강화, 일곱째, 지원금 제공과 함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제화 문항이 해당됨.

7)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에 해당하는 14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3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깜깜이 유보통합’, ‘답정너 유보통합’이 아닌,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중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활동 필요, 둘째,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유특 전문가 포함, 셋째,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교육, 유아특수 전문가 보완 문항이 해당됨.

8)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에 해당하는 12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5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둘째, 유아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IEP 수립 연구 강화 및 정책적 활성화, 셋째,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 교사용 지도서에는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환경수정 방안 포함, 넷째, UDL(보편적 학습 설계) 관점의 모드를 위한 교육과정 고려, 다섯째,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영역별 삽화 자료등이 포함된 놀이자료 개발 문항이 해당함.

9)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에 해당하는 6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항목 3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이 필요(장애영역별, 정도별, 특성과 흥미별 맞춤형 개별수업 중심), 둘째, 유아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앱 개발(인공지능 포함), 셋째,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문항이 해당됨.

2. 정책토론회 및 자문회의 의견 결과 분석

가. 장애영유아 보육계의 의견

- 1)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 토론회〉 내용 정리(정책핵심 관계자 의견)

[유보통합 필요성]

- 현재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이원화는 국가적 낭비.
- 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녀가 다른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부모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선택에 따른 부담을 지우는 것.
-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차별이므로 모든 장애영유아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

[유보통합 방향성]

- 유보통합 시 연령별(0~2세/3~5세) 이원화에 반대함. 복지부, 교육부로 부처 이원화하는 것은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며,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있음.
- 학문적으로 유아는 0~8세이며, 가소성이 매우 높은 연령대인 장애영아가 포함되어야 함.
- 초중등과의 연계성, 통합적 지원 체계를 고려하여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함.
- 장애아동과 함께 발달치연 아동 지원도 고려해야 함.
- 영아를 포함하여 유보통합을 할 때 사립 유치원을 어떻게 통합해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판단됨.
- 상향 통합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하며, 세부 사항에 매몰되지 말고 큰 맥락에서 통합을 이끌어가야 함.
- 유보통합 시 의료, 교육, 재활치료 지원이 함께 제공되는 원스톱 시스템 마련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장애통합 학급을 운영하는 완전 통합 방향을 지향해야 함.
- 특수학급 의무화는 특수학급이 있어서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임.(이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됨.)

[교사자격]

- 교과목 구성이 중요함.
- 유아특수교사 수를 늘려야 하며,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유아특수교사의 명칭을 변경을 고려할 수 있음.(ex.영유아특수교사)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 대상으로 한시적 학위제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과도기적으로 시험제도를 통한 자격 부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그러나 대학 정원 확대는 매우 신중해야함. 국가자격시험, 특수직무교육 등 다양한 자격 취득 경로를 한시적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음.
- 영아과정, 유아과정, 교직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임. 현재 유아특수교사는 영아과정이 필요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재직자는 교직과정 교과목 이수가 필요함.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하며, 유예기간이 필요함.
- 현행 유아특수교사 제도를 유지하되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아동심리이해뿐만 아니라 부모심리이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 장애영유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유아특수교사가 보다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식됨. 교육과정을 밝은 것이므로 전문가 자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저녁, 야간, 주말 과정 등을 개설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함. 기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는 (가칭)통합교육지원사로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유아특수교사 관련 대학의 지역 편중이 심함.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을 늘릴 필요가 있음.

[기관운영]

- 유아특수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장애전담어린이집 등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관 간 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문제이며, 특히 사립 기관 통합은 난제임.
-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보육을 제공하고 방과후나 방학 등에도 돌봄을 제공했었는데, 통합 시 유치원이 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임.
- 장애전담어린이집의 장점이 재활치료까지 통합되어 있다는 것임. 통합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함.
- 아이중심의 통합, 공공성을 강화(공립 유치원 확대)하는 통합의 방향을 지향해야 함.

[행정체계]

- 유아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영역적 접근,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평생교육 관점에서 장애영유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법]

- 장특법, 장보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함.
- 정부조직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함.(이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개진됨.)
-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행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 제정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재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교부율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
- 기존 지자체 보육예산이 교육청으로 제대로 이전될 수 있을 것인지 보아야 함.

[정책결정과정/부모 국민참여/방향성 제언]

- 관련 당사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장애영유아 발달 진단 평가가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소통, 정보교육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함.
- 융합적, 초학문적 접근이 필요함.
- 용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명칭을 통합하고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유보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중복사업이 많았음. 이를 통합하는 작업 필요.
- 전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자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자문회의

가) 원장 및 장애영유아 관련 협회(부모단체 포함) 의견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영유아]

-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영유아: 누리과정, 유보통합 등의 정책 시행에 있어 장애영유아는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놓일 가능성이 큼.
- 연령 기준: 유아교육 대상은 만 0세-8세이니 0-2세도 유아학교에 포함하여야 함.
→ 관련 의견: 용어의 통일이 필요함(만 0세부터 취학전 아동 등)
- 의견 1) 0-5세 통합: 조기발견, 조기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연령을 분리 하면 안 됨.
- 의견 2) 0-2세, 3-5세 분리한 통합: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영아, 유아로 연령을 분리 하면 좋겠음.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확대할 필요성]

- 팬데믹 이후 발달지연, 사회적관계에 어려움 겪는 유아들이 많아진 실정에 영유아발달 선별검사 등을 통한 국가적 대처가 시급함.

- 장애로 등록된 영유아뿐만 아니라 발달지연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유아, 미숙아, 발달 추적이 필요한 유아 등을 포함한 '특별한 교육지원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설립인가 기준 및 프로그램]

- 통합 또는 전담 기관이 담당하는 등의 모습을 갖추어 영유아를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통합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개별아동을 위한 별도공간, 치료 공간(재활교육실) 등을 통해 장애영유아가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을 구성해야 함.
- 특수/장애아 교육·보육 기관을 두어 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지역은 소규모 통합기관이나 거점 통합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특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중증 장애아) 편성의 개수를 정하여 교사 당 3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을 제안함.
- 보육시간이 길고 방학 중에 돌봄을 하는 장애아어린이집의 취원율이 높은 이유는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재활치료프로그램 등의 덕분이라고 생각함. 장애영유아의 재활 및 현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스톱지원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교사 자격·양성체계의 어려움]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교육대학원에서 유아특수학과를 전공하여도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임.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영유아의 연령 기준은 나누지 않고, 유아특수교사를 영아전문 특수교사, 유아전문 특수교사로 나누는 방안으로 연령별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음.
- 현행 유아특수교사 양성체제로 영유아에게 필요로 하는 수만큼 교사를 배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별양성과정과 같은 형태로 교육부의 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에 낮은 장애인식을 보여주는 것일 뿐임.
- 유아특수교사 또한 영아보육 관련 보육을 추가 이수하여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방통대 유아교육학과 제언]

- 의견 1) 특수교육을 배우고 진입한 특수교사와 장애 보육과정을 짧게 배우고 온 교사에게는 현장에서의 차별점이 있음.
- 의견 2) 방송통신대학의 사범계열(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을 졸업한 자에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유아특수교육과를 개설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을 것임.

[교사 대 아동 비율]

- 교육기관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유아 4명을 담당하고, 보육기관은 교사 1인당 3명의 장애영유아를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 수에 차이를 보이는 것임.
- 유아특수교육 자격이 있는 약 4,000명의 교사가 보육기관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교수 의견

[설립인가 기준]

- 유아학교로 설립을 하여 상향평준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예. 경사로, 엘리베이터, 특수화장실 등 설치).

다) 교사 의견

[교사 자격·양성체계의 어려움]

- 유보통합 계획 이후 학점인정교육기관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관련한 인터넷 광고를 빗발치게 하고 있음. 이에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자격 강화 및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음.
- 장애영유아 교사자격 통합 논의 이전에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통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교사 처우개선]

- 유아특수교육과를 졸업한 특수교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취업의 갈등을 할 때, 처우 때문에 어린이집의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처우개선이 필요함.

나. 유아특수교사 측 의견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 토론회 내용 정리(정책책임관계자 의견)

가) 원장 및 장애영유아 관련 협회(부모단체 포함) 의견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를 한계성에 초점을 맞춘 대상이 아니라 능력이 상이한 다양한 집단, 개인으로 인정하고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장된 교육기관 근거리 배치 원칙을 준수하여 가까운 곳에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들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교사 자격·양성체계의 어려움]

-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차이로 인한 교사 전문성에 차이가 생기므로 교사 전문성을 유아 특수교사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음. 유아특수교사 양성기관인 대학교, 대학원 편입 및 입학 등의 과정을

- 통해 전공과목, 교직과목 등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함.
- 유아특수교사는 모자라지 않으며 교육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임용되는 교사 수가 적기 때문임. 기존에 이미 포화상태인 유아특수교육과 배출 졸업생의 임용난이 있음.
 - 유아특수교육기관 확대 및 유아학교 설립을 통한 유아특수교육 수요가 충족되어야 함.
 - 교육부-교육청 산하에서 장애영아 조기개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함.

[설립인가 기준 및 프로그램]

- 방과후 과정 돌봄활동의 지원인력이 시·도교육청 내에서 지원되어 교육과 돌봄활동에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소외되면 안 됨.
- 다양한 운영형태(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유지되어야 하며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 교사의 배치가 필요함.
- 특수교육센터 학급인가 형식, 운영 방법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나는 점에 있어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함.
-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실 및 순회교육,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 등 다양한 형태를 유지 하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체계가 필요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장애영아 학급인가 기준 및 개별화가족지원 계획에 근거한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강화해야 함.

[교사 대 아동 비율]

- 학급당 교사 수를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현재 1:4인 교사 대 아동 비율에서 1학급 2교사제를 유아학교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음.
- 방과후과정 운영의 어려움 중 하나인 보조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종일반 형태로 보육이 합류되면 장애영유아도 교육과 보육의 흐름에서 배제되는 일없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

나) 교사 의견

[교사 자격·양성체계의 어려움]

-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영유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유보통합을 하는 데에 반대함.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있는 국가부처를 먼저 통합하고 관리 소통체계를 하나로 만든 후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보통합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학급 형태 및 교육과정 운영, 교사 근무형태에 대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특수교육대상영아교육은 영아를 직접 관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별화가족 지원계획수립에 대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특수교육대상아동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관련 이수과목, 교직과목에 차이가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유아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을 정비해야 함. 이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유아특수교육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필요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위해 공정성이 담보된 입학절차를 통해 특수교육, 유아교육,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 학계 의견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영유아]

- 누리과정, 유보통합 등의 정책 시행에 있어 장애영유아는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놓일 가능성이 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확대할 필요성]

- 경계선(위험군) 영유아도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특수교육 대상자 재정의, 법령 등) 준비를 해야하며, 재정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교육지원이 필요한 유아]

- 3-5세 특수교육 대상자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유아수용계획에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특수교육의 방법]

- 특수교육 대상자가 어떤 유형의 교육기관에 배치되든 교육지원 내용에 통합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선별과 선정을 위한 방법 마련]

- 선별과 선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의료기관에서의 선별 과정, 교육기관에서의 선정 과정 등을 통해 선별과 진단에 대한 부모의 충격이나 망설임이 교육의 지연이 되지 않아야 함.
- 사회복지혜택, 치료방법, 양육 방법 등을 부모와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치료사, 간호사, 교사)가 필요함.

[교사 자격·양성체계의 어려움]

- 유아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학교에 통합을 위한 유아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아특수교사 과정의 선수과목을 듣고 대학원에 입학하여 전공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을 해야 함.

IV

장애영유아 국가책임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01 정책 방향과 과제

02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로드맵

IV. 장애영유아 국가책임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1. 정책 방향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된 환경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과 장애영아 무상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생애초기부터 평생교육까지 이음새 없이 연결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요구,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여 현실가능한 장애영유아 관련 유보통합의 그림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의견조사에서 도출된 정책 우선 순위와 차순위 정책¹⁰⁾ 과제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1〉 정책 우선 순위 및 차순위 정책 과제 요약

국가책임교육 기반,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실현	
유보통합의 필요성	유보통합의 방향
- 만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법적 당위성 실현 - 장애영유아의 교육권/교육평등성 보장 - 교육-보육-특수분야 공공성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발달지연 아동 증가 -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 (정책차순위) - 장애영유아의 공교육 확대 및 정착지원(국공립 기관 신증설 등)	-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영유아 실태조사(통계자료) 통합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해소(치료지원비, 통학비 등), -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초등수요조사 및 입학유예자 문제 해결, - 일반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유아특수교육과의 협력적 지원 강화 (정책차순위) - 초중등과의 연계 강화, 생애주기별 제도 마련 - 유치원(유아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10)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모두 높아 LFF의 1사분면에 위치한 정책과제들을 정책우선순위 과제로, 중요도는 높으나 실현가능성이 다소 낮은 LFF의 2사분면에 위치한 정책과제들을 정책 차순위 과제로 판단하였다. 정책 차순위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실현가능성을 높이면 차후 의미를 주는 중요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의미한다.

구분	정책 주제	정책 방향
교사 자격양성 체계	자격, 양성, 정원 방향	• 4년제 유아특수교사 자격, 양성체계는 현행 유지 •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영아발달, 영아교육 및 지원 등 장애영아 관련 교과목을 신설
	장애영유아보육교 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 획득 방법	• 유아특수교육과 학부 재입학/편입학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한 자격 획득
기관운영	기관유형 및 신설	•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유아학교 모델 강화
	0-2세 장애영아	• 영아학급 및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지원책 마련 (현재 영아학급 영아교실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근거만 있음)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 기존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방과후과정 제도 개선(자원인력 지원, 방학 등원, 긴급돌봄 등 돌봄운영시간 최적 지원 등) • 특수학급만의 방과후 과정, 긴급돌봄, 돌봄교실이 아닌 통합학급 영 유아들과 함께 운영되는 형태 지향
	교직원 배치/운영	• 연령별 유아특수교사 배치 • 일반·특수 공동담임제 운영(서울에서 '더공감교실' 예시) • 기관장 자격기준에 특수교육과정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 과정 포함 • 중도장애 영유아 담당 및 일과 중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 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배치
재원·재정지 원 체계	재원·재정지원 체계	•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 지원의 균등화 • 0-2세 장애 영아 지원: 0-2세 장애영아 조기 선별 및 지원 업무 수행 경비 지원체계 마련 •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통일, 지도점검 동일 적용 • 특수교육 관련 예산 각급 유치원에 교부시 목적사업비로 교부 (정책 차순위) • 지원금 미지급 규제 마련(에듀파인/나이스 미도입, 감사거부 기관)
행정 및 전달체계	장애조기선별 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 대상자 선정 체계 일원화 • 장애조기선별과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 요 •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적검사, 추가검사 등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장애조기선별을 위한 진단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지연의심 아동에 대한 교육청 정보연계 (정책 차순위)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유아특수교사 진단평가 담당자를 두고 장애조 기 선별을 위한 '찾아가는 진단평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센터/지자체- 지역교육청/교육부 -교육청/부처간 통합 연계	• 유아특수교육 행정담당 전문직 구성(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체 계 마련시 교육청의 특수교육과에 유아특수교육 행정담당 장학사 등 의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성) • 교육부 내 유아교육정책과/국립특수교육원/지역교육청에 유아특수 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또는 특수교육정책과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정책 차순위) • 장애영유아와 일반유아의 학비를 모두 유아학비로 지원하는 법 제 도가 필요

구분	정책 주제	정책 방향
	행정 시스템 전문화	4세대 나이스의 오류 해결 및 유아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 -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현재 진단평가 접수, 결과지 출력의 기능, 이름검색 불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엑셀로 명부관리 중) (정책 차순위) - 어린이집 정보공시 장애 영유아를 위한 항목 추가
법제도	현행 유지/기존제도개선	- 장특법의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을 명시 필요 - 장특법(제 19조 제2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 삭제, 의무교육 제도 재 정비,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 -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의 지위 명시(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양자에 모두 자격기준을 명시) -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법안 마련
	통합법 마련시	(가칭) 통합법을 만든다면, 유아특수, 장애영유아 근거 조항을 반드시 포함
	정부조직법 개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진단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 인원 증가대비 행정인력 지원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지원금 확대와 함께 회계 투명성 보장을 위한 법제화 필요
정책결정과 정/부모 및 국민참여	유보통합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소통, 참여 문제	-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중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활동 필요 (정책차순위) -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더라도 함께 하는 토론회가 필요 (정책차순위) - 법적으로 무상 및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 및 간담회 필요 (정책차순위) -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토론회와 YouTube 생중계 진행으로 해당 시간 내에 참여하지 못하는 관련인들(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 자문단, 정책연구기관 의사결정과정 및 구성/대표성의 문제점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유아특수 전문가 포함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교육, 유아특수 전문가 보완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 유아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IEP 수립 연구 강화 및 정책적 활성화 -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사용 지도서에는 반드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환경수

구분	정책 주제	정책 방향
		정의 방안 포함 • UDL(보편적 학습 설계)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영역별 삽화 자료 등이 포함된 놀이자료의 개발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이 필요(장애영역별, 정도별, 특성과 흥미별 맞춤형 개별수업 중심) • 유아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앱 개발(인공지능 포함) •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정책차순위) •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공학기기 개발

가.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1) 정책 방향

본 연구에서 유·보 전문가들은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법적 당위성 실현, 장애영유아의 교육권/교육 평등성 보장, 교육-보육-특수분야 공공성 강화, 특수교육대상자/발달지연 아동 증가,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들었다. 차순위로는 초중등과의 연계 강화와 생애주기별 제도 마련, 유치원(유아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 책 방 향
- 만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법적 당위성 실현 - 장애영유아의 교육권/교육평등성 보장 - 교육-보육-특수분야 공공성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발달지연 아동 증가 -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 (정책차순위) - 초중등과의 연계 강화, 생애주기별 제도 마련 - 유치원(유아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부는 교육개혁과 지방소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의 실현과 교육평등성 보장, 조기발견과 치료를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관할부처가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필요한 유보통합 정책 방향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영유아 실태조사(통계자료) 통합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해소(치료지원비, 통학비 등), 유치원-어린이집 초등수요조사 및 입학유예자 문제 해결이 제안되었고, 넷째, 일반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유아특수교육과의 협력적 지원 강화가 제안되었다.

정 책 과 제

-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영유아 실태조사(통계자료) 통합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해소(치료지원비, 통학비 등)
-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초등수요조사 및 입학유예자 문제 해결
- 일반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유아특수교육과의 협력적 지원 강화

2) 정책 과제

정책과제 1-1. 특수교육통계로 일괄 통합, 장애영유아 실태조사 실시

보육통계, 장애인 통계로 교육통계, 특수교육통계와 이원화되어 있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통계를 특수교육통계로 일원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일괄 통합하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관 미이용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장애/비장애, 기관 이용자/미이용자를 모두 포함한 모든 영유아를 지원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0-5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장애영유아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정책의 본질을 실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과제 1-2. 장애영유아의 초등연계 및 입학유예자 문제해결, 장애 위험군 영유아를 포괄하는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주도의 범부처 협의 회 구축

교육부로 통합되었으므로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주도로 장애위험 및 장애아동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장애아동의 정책을 기획하고 유연한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장애영유아가 출발부터 초등취학 이후, 성인이 되기까지 치료, 교육, 돌봄, 자립에 이르는 범부처, 원스톱 종합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 사무가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유치원 어린이집 사무와 완전히 통합되는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영유아 정책은 생애주기별로 연계되어야 하고, 영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이음새없는 연계와 범부처의 통합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권고를 받은 약 4만명의 영유아들 중 약 70-80%가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모두 장애위험군의 영유아이므로 교육부 유아특수교육 체제 내에서 모든 영유아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출생 직후 의료와 보건의 영역에서 교육과 복지의 영역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기관, 부모,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유아 조기중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발선 평등의 원칙을 튼튼하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과제 1-3. 0-5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법제화를 통한 교사지원, 지원금 의무화

의무교육 체제로 취약 영유아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다. 보다 확실하게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0-5세 장애영유아를 위한 치료비, 통학비 등의 교육과 돌봄 비용을 국가가 모두 지불하도록 지원금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0-2세 장애영아는 제도적으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으나, 0-5세 장애영유아는 모두 의무교육화하여 양질의 교사를 배치하고 치료와 통학비, 교육 제반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책과제 1-4. 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특수교육대상자 재정의, 법령 등) 정비 및 재정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가 모두 교육부 체계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다면, 사실상 0-5세 의무교육 시스템과 다를 바 없다. 앞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어떤 유형의 교육기관에 배치되든 교육지원 내용에 통합교육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의 제도 정비와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수용계획에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포함되어 모든 영유아가 차별없는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하며, 이를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정책과제 1-5. 0-2세 장애영아 교육과 돌봄 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해외 유럽국가들은 유아교육의 질을 우선시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가 교육부 단일 부처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교육과 보육 서비스는 연령, 영유아의 발달 특성, 영유아가 속한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영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0-2세 장애영아의 교육과 돌봄, 기관보육과 가정보육의 선택지가 보다 다양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 돌봄의 분리가 아닌 통합적 관점으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과제 1-6. 0-2세 장애영유아 부모의 가정교육 및 부모교육(어머니 무릎학교) 강화, 자녀양육수당과 유급 육아휴직제도 안착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들에서는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영유아에게 제한이 있는 공적 지출을 하고 있었으며 자녀양육수당과 유급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여 0-2세 장애영유아 부모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교육청에서 장애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예컨대 어머니 무릎학교 등)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장애와 장애위험에 있는 영유아와 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영유아의 조기개입과 조기교육을 빠르게 지원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교사 자격·양성 체계

1) 정책 방향

본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에서 4년제 유아특수교사 자격, 양성체계는 현행 유지,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영아발달, 영아교육 및 지원 등 장애영아 관련 교과목을 신설, 유아특수교육과 학부 재입학/편입학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한 자격 획득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현실가능하지 않은 유보통합 정책보다 현재 4년제 중심인 유특교사 자격, 양성체계를 유지하되, 장애영아의 교육과 지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이 유특교사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에도 유아특수교육과 학부 재입학/편입학,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가능하므로, 현행 루트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해외 사례에서도 유아교사 자격은 대부분 3-3.5년의 교육 기간을 요구하나 특수교사의 경우는 일반교사 자격 취득 후 시험을 치루거나 상위과정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유보통합 또는 유보 분리된 국가 모두에서 기관유형과 상관없이 장애영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사와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있었다.

정 책 과 제

- (자격, 양성, 정원 방향) 4년제 유아특수교사 자격, 양성체계는 현행 유지(별도의 교사양성기관을 마련하기보다 현재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이 합의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
- (자격, 양성, 정원 방향)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영아발달, 영아교육 및 지원 등 장애영아 관련 교과목을 신설
-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 획득 방법) 유아특수교육과 학부 재입학/편입학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한 자격 획득 (지역별 유아특수교육과가 없는 경우, 방통대 유아특수교육과 신설 가능,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경력인정으로 실습기간 단축 가능)

2) 정책 과제

정책과제 2-1. 현행 자격과 양성체계를 유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의 교원 자격을 획득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본 연구에서 유·보 전문가들은 4년제 중심인 현행 유특교사 자격, 양성체계를

유지하되, 장애영아의 교육과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이 유특교사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에도 유아특수교육과 학부 재입학/편입학,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교원 자격 획득이 가능하므로, 현행 루트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별양성과정과 같은 형태로 교육부의 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와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족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국가자격체계를 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자격 획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이 비학위과정(특별직무교육과정)이 아닌, 학부 재입학/편입학,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면, 기존의 제도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대학원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곳과 재교육(자격증 부여 안됨) 기관 둘로 나뉘는데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이 많지 않다. 특수교사자격에 한해서만 일반교사자격 있는 교사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과 수료하면 특수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현재 보육교사자격만 있는 자는 재교육하는 교육대학원 입학도 어렵기 때문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의 교원 자격 획득을 위해 교육대학원 진학을 해야한다고 정책을 정한다면, 4년 학사학위를 소지한 보육교사의 입학을 가능하게 하거나, 대학원에서 학부과정을 선수학점으로 더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대학에서 전공 불일치 석사생의 경우, 학부에서 선수학점 이수를 하도록 한다. 보육교사의 경우 전공불일치의 경우도 아니므로 필수로 요구되는 학점을 더 이수하도록 하여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 재입학/편입학을 위해서는 현재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이 합의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직 교사의 경우, 자격증 획득을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제 2-2. 0-5세 (영)유아학교 교원 정원, 자격, 처우 등에 관한 정책 연구 및 구체안 마련

유보통합을 앞두고, 0-5세 (영)유아학교 체제에서의 유아특수교사의 정원과 자격,

처우에 대한 구체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기관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유아 4명을 담당하고, 보육기관은 교사 1인당 3명의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므로 교사 수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정원과 자격, 처우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정책연구를 발주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2-3.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영아발달, 영아교육 및 지원 등 장애영아 관련 교과목을 신설

유보통합시 영아학급 운영과 영아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사 양상과정에서 영아발달과 영아교육, 지원에 관한 교과목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 기관 운영

1)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유아학교 모델 강화, 영아학급 및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지원책 마련(현재 영아학급 영아교실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근거만 있음), 기존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방과후과정 제도 개선(지원인력 지원, 방학 등원, 긴급돌봄 등 돌봄운영시간 최적 지원 등), 특수학급만의 방과후 과정, 긴급돌봄, 돌봄교실이 아닌 통합학급 영유아들과 함께 운영되는 형태를 지향, 연령별 유아특수교사 배치, 일반·특수 공동담임제 운영(서울에서 더공감교실 예시), 기관장 자격 기준에 특수교육과정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 과정 포함, 중도장애 영유아 담당 및 일과 중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배치를 중요도도 높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보았다.

정 책 방 향

-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유아학교 모델 강화
- 영아학급 및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지원책 마련(현재 영아학급 영아교실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근거만 있음)
- 기존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방과후과정 제도 개선(지원인력 지원, 방학 등원, 긴급돌봄 등 돌봄운영시간 최적 지원 등)
- 특수학급만의 방과후 과정, 긴급돌봄, 돌봄교실이 아닌 통합학급 영유아들과 함께 운영되는 형태 지향
- 연령별 유아특수교사 배치
- 일반·특수 공동담임제 운영(서울에서 '더공감교실' 예시)
- 기관장 자격기준에 특수교육과정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 과정 포함
- 중도장애 영유아 담당 및 일과 중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배치

2) 정책 과제

정책과제 3-1.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영)유아학교 모델 강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체제를 구축하여 상향평준화된 (영)유아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영)유아학교 모델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립 인가 기준에 맞게 모든 규정을 상향화할 필요가 있다(예. 경사로, 엘리베이터, 특수화장실 등 설치).

정책과제 3-2. 영아학급 및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지원책 마련

장애 영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무상교육'대상자이다. 영아기 조기개입의 중요성, 가족지원의 필요성은 영아가 체계적인 교육의 대상이나, 현재 현재 영아학급 영아교실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체계적인 안내와 지침, 지원책이 부족하다. 앞으로 유보통합을 고려한다면, 영아학급,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책과제 3-3.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제도 개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

육기관)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학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 당 1일 이상 추기로 배치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역시 방과후 과정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원인력 지원, 방학 등원, 긴급돌봄 등 돌봄운영시간 최적 지원 등의 차원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유치원 방과후과정 제도를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제도개선을 함께 논의해야한다. 방과후과정 지침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배려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 정도나 특성, 전담교사의 거부로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나가야 한다.

정책과제 3-4. 특수학급만의 방과후 과정, 긴급돌봄, 돌봄교실이 아닌 통합학급 영유아들과 함께 운영되는 형태 지향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실 및 순회교육, 유치원 특수학급 운영 등 다양한 형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돌봄과 통합학급도 함께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별,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과 학급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비장애 통합 형태의 교육과 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3-5. 연령별 유아특수교사 배치, 일반·특수 공동담임제 운영 (서울에서 ‘더공감교실’ 예시)

연령별로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일반-특수가 공동담임제를 운영하는 방식의 제도 운영을 추천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더공감교실’의 사례를 반영하여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일반-특수교사의 공동담임제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3-6. 기관장 자격 기준과 연수과정에 특수교육과정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 과정 포함

기관장의 리더십에 따라 유아특수교육과정과 장애영유아보육의 질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이에 기관장 자격 기준에 특수교육 전공자를 우대하고 특수교육과정과 장애영유아보육에 대한 이해과정을 연수화하여 장애/비장애 영유아의 통합교육을 현장에 내실있게 운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과제 3-7. 중도장애 영유아 담당 및 일과 중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배치

현재 유아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이 상충되면서 보건교사의 유치원 배치에 대해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되므로 학교보건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의 배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중도장애 영유아의 건강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의 유치원 배치는 필수적이다. 만약 보건교사 배치가 어렵다면 간호사를 유치원에 채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현재 국공립유치원 43곳에 모두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다(윤두현, 2023. 12. 7).

라. 재원·재정지원 체계

1) 정책 방향

재원·재정지원 체계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 지원의 균등화, 0-2세 장애 영아 지원: 0-2세 장애영아 조기 선별 및 지원 업무 수행 경비 지원체계 마련,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통일, 지도점검 동일 적용, 특수교육 관련 예산 각급 유치원에 교부시 목적사업비로 교부를 중요도가 높고 실현가능성도 높은 정책으로 보았다.

정 책 방 향

-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 지원의 균등화
- 0-2세 장애 영아 지원: 0-2세 장애영아 조기 선별 및 지원 업무 수행 경비 지원체계 마련
-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통일, 지도점검 동일 적용
- 특수교육 관련 예산 각급 유치원에 교부시 목적사업비로 교부

2) 정책 과제

정책과제 4-1.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 지원의 균등화

유보통합 시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을 균등하게 지원할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3-5세 유아를 특수교육대상 유아로 포함하고 이를 위한 의무교육 재정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유보통합 정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책과제 4-2. 0-2세 장애 영아 지원: 0-2세 장애영아 조기 선별 및 지원 업무 수행 경비 지원체계 마련

유보통합 시 0-2세 장애 영아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특히 영아를 지원할 담당교사의 전문성 지원이 필요하다.

-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교육지원) 제2항에 따라 영아학급 교원 배치에 관한 시도교육청 규정 개정
-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교육지원) 제4항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현행 법 유지를 통해 전문성 있는 교사 배치

정책과제 4-3.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통일, 지도점검 동일 적용, 특수교육 관련 예산 각급 유치원에 교부시 목적사업비로 교부

유치원-어린이집의 회계규칙과 지도점검이 학교 체제하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기관에 교부할 때 목적사업비로 교부하여, 특수교육 예산 편성과 지출이 타 사업에 밀려 축소되지 않도록 교부할 필요가 있다.

마. 행정 및 전달체계

1) 정책 방향

행정 및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대상자 선정 체계 일원화, 장애조기선별과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적검사, 추가검사 등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장애조기선별을 위한 진단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지연의심 아동에 대한 교육청 정보연계, 유아특수교육행정담당 전문직 구성(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시 교육청의 특수교육과에 유아특수교육 행정담당 장학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성), 교육부 내 유아교육정책과/국립특수교육원/지역 교육청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또는 특수교육정책과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4세대 나이스의 오류 해결 및 유아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를 중요하고도 현실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보았다.

정 책 방 향

-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대상자 선정 체계 일원화
- 장애조기선별과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적검사, 추가검사 등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장애조기선별을 위한 진단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지연의심아동에 대한 교육청 정보연계
- 유아특수교육 행정담당 전문직 구성(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시 교육청의 특수교육과에 유아특수교육 행정담당 장학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성)
- 교육부내 유아교육정책과/국립특수교육원/지역교육청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또는 특수교육정책과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 연구사 배치
- 4세대 나이스의 오류 해결 및 유아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
-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현재 진단평가 접수, 결과지 출력의 기능, 이름검색 불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엑셀로 명부관리 중)

2) 정책 과제

정책과제 5-1.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대상자 선정 체계 일원화

부처 이원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속한 다양한 지원 대상 유아들을 선정하는 체계를 교육부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로 등록된 영유아뿐만 아니라 발달지연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유아, 미숙아, 발달 추적이 필요한 유아 등을 포함한 ‘특별한 교육지원 대상’을 보다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5-2. 장애조기선별과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장애조기선별과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 영유아에 대한 조기중재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에 학부모 대상 가이드북 제작, 기관에서의 심화평가권고 대상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연수, 홍보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5-3.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적검사, 추가검사 등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장애조기선별을 위한 진단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거나 정밀 추적 검사 등에 대한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진단평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검사를 했으나,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조기중재가 어려워진다. 의료기관에서의 선별 과정, 교육기관에서의 선정 과정 등을 통해 선별과 진단에 대한 부모의 충격이나 망설임이 교육의 지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5-4.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지연의심아동에 대한 교육청 정보연계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시 지연의심아동에 대해 교육청과 정보를 연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연의심아동을 상담, 정보연계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복지혜택, 치료방법, 양육 방법 등을 부모와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치료사, 간호사, 교사) 배치도 필요하다.

정책과제 5-5. 교육부-교육청 내 유아특수교육담당 전문인력 배치

유보통합시 교육부와 교육청에 유아특수담당 전문 인력인 연구사를 배치하여, 통합적으로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5-6.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접수, 결과지 출력의 기능, 이름검색 등이 불가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엑셀로 명부관리를 할 정도로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이 비통합, 비고도화되어 있다. 이에 개선이 필요하며, 4세대 나이스의 오류 해결과 함께 유아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바. 법제도

1) 정책 방향

법제도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장특법의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을 명시 필요, 장특법(제 19조 제2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 삭제, 의무교육 제도 재정비,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의 지위 명시(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양자에 모두 자격 기준을 명기),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법안 마련, (가칭) 통합 영유아교육법을 만든다면, 유아특수, 장애영유아 근거조항이 반드시 포함,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진단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 인원 증가대비 행정인력 지원 필요, 지원금 확대와 함께 회계 투명성 보장을 위한 법제화를 중요하고 실현가능성있는 정책으로 보았다.

정 책 방 향

- 장특법의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을 명시 필요
- 장특법(제 19조 제2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 삭제, 의무교육 제도 재정비,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
-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의 지위 명시(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양자에 모두 자격기준을 명기)
-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법안 마련
- (가칭) 통합법을 만든다면, 유아특수, 장애영유아 근거 조항을 반드시 포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진단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 인원 증가대비 행정인력 지원 필요
- 지원금 확대와 함께 회계 투명성 보장을 위한 법제화 필요

2) 정책 과제

정책과제 6-1. 장특법에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기준 명시 필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장애영아 학급인가 기준에 근거한 교육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장애영아와 관련하여 학급설치기준과 인원수가 정해

져 있지 않아, 영아학급이 아님에도 장애영아가 배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장애영아 학급 설치 기준과 인원 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장애 영아 학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유아학교 내 장애영아 학급의 법적 근거 마련

또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보통 교실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영아학급을 교실로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의 교육환경조차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예산 편성 시 장애 영아 학급 운영 항목 및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정책과제 6-2. 장특법(제 19조 제2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 삭제, 의무교육 제도 재정비,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

특수교육법 제19조에 따르면,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간주조항이 담겨있다. 간주조항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의무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였다. 유보통합이 완성되면 관련 기관들의 질을 높이고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하여야 하며, 장특법의 의무교육 간주조항도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제 6-3.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의 지위 명시

유아교육법 내에 유아특수교사의 지위를 명시하고, 유아교육법 제 2조(정의), 제 11조 (입학)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추가해야 한다. 유치원을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유치원을 다녀도 유아교육법 상에서는 정작 배제되어 있다.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보통합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유아교육법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특수교사의 지위도 불분명하므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양자에 모두 자격기준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가칭) 유보통합법

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으나,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법 제도 하에서 개선할 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11조(입학)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추가

정책과제 6-4.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법안 마련

특수학급 신증설이 쉽지 않으나, 당장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제대로 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6-5.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진단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 인원 증가대비 행정인력 지원 필요

유보통합이 되면 시도교육청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확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조기진단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0-5세 영유아들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연구를 통해 추가 행정지원 인력을 고려하고, 이에 알맞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사.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1) 정책 방향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깜깜이 유보통합’, ‘답정너 유보통합’이 아닌,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중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 활동 필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유특 전문가 포함,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교육, 유아특수 전문가 보완을 중요하고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보았다.

정 책 방 향

-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중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활동 필요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유아특수 전문가 포함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교육, 유아특수 전문가 보완

2) 정책 과제

정책과제 7-1.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중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활동 필요

유보통합의 정책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 현장 전문가, 학부모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잘못된 뉴스를 접하거나, 유보통합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 이에 체감이 되는 유보통합 정책을 만들어야하며, 이를 제대로 홍보해야할 것이다. 소통과 홍보활동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국민적 호응이 뒤따를 것이다.

정책과제 7-2.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추진단에 유아특수 전문가 보완 및 포함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과 추진위원회에 유아특수 전문가들이 더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교육부는 이러한 주장에 관련 TF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으나, 심의기구에 유아특수 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포함되어야 하며, 유아특수계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진단에도 유아특수전문가가 포함되어 교육과정, 행재정, 교사 정책에 유아특수-장애영유아 정책들이 함께 융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1) 정책 방향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유아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IEP 수립 연구 강화

및 정책적 활성화,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사용 지도서에는 반드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환경수정의 방안 포함, UDL(보편적 학습 설계)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 영역별 삽화 자료 등이 포함된 놀이자료의 개발을 중요하고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보았다.

정 책 방 향

-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 유아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IEP 수립 연구 강화 및 정책적 활성화
-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사용 지도서에는 반드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환경수정의 방안 포함
- UDL(보편적 학습 설계)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영역별 삽화 자료 등이 포함된 놀이자료의 개발

2) 정책 과제

정책과제 8-1.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제도화

누리과정 개정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실행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장애/비장애 차별없는 교육과정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과제 8-2. 교육과정/IEP 수립연구 강화, IFSP 실행 근거 확보

장애영아 교육에서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하여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기준, IFSP 구성요소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IFSP 실행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1항 개정을 통해 장애영아를위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 근거 마련
-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에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제정
- ▶ 특수교육법 제18조(장애영아의교육지원) 1항에 IFSP에 근거한 적합한 조기교육의 필요를 교육당에게 요구하고, IFSP에 근거한 적합한 교육이 가족의 권리임을 안내하는 내용 추가

정책과제 8-3.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사용 지도서에는 반드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환경수정의 방안 포함

UDL(보편적 학습 설계)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영역별 삽화 자료 등이 포함된 놀이자료의 개발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장애영유아를 고려하는 교육과정(교육내용과 방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1) 정책 방향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이 필요(장애영역별, 정도별, 특성과 흥미별 맞춤형 개별수업 중심), 유아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앱 개발(인공지능 포함),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을 중요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보았다.

정 책 방 향

-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이 필요(장애영역별, 정도별, 특성과 흥미별 맞춤형 개별수업 중심)
- 유아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앱 개발(인공지능 포함)
-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2) 정책 과제

정책과제 9-1.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 필요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장애영역별, 정도별, 특성과 흥미별 맞춤형 개별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사 연수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과제 9-2. 유아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앱 개발(인공지능 포함)

디지털 기기나 앱 사용을 통해 장애유아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들며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에 유아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디지털 기기와 앱 개발을 통해 장애영유아도 다양하게 매체에 접근하고 활용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정책과제 9-3.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정부의 다양한 정책 플랫폼이 있으나 특수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타 플랫폼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한다면, 유아, 교사, 학부모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이 보다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다.

2.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로드맵

이상의 정책방향에 기반한 정책과제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2-1〉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과제 실행 로드맵

정책과제	추진시기			담당
	단기 (1-2 년)	중기 (5-6 년)	장기 (~10 년)	
①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1-1. 특수교육통계로 일괄 통합, 장애영유아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
1-2. 장애영유아의 초등연계 및 입학유예자 문제해결,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포괄하는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주도의 범부처 협의회 구축				교육부 관계부처합동
1-3. 0-5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법제화를 통한 교사지원, 지원금 의무화				교육부 시·도교육청
1-4. 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특수교육대상자 재정의, 법령 등) 정비 및 재정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교육부 시·도교육청
1-5. 0-2세 장애영아 교육과 돌봄 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				교육부 시·도교육청
1-6. 0-2세 장애영유아 부모의 가정교육 및 부모교육(어머니 무릎학교) 강화, 자녀양육수당과 유급 육아휴직제도 안착				교육부, 관계부처합동

정책과제	추진시기			담당
	단기 (1-2 년)	중기 (5-6 년)	장기 (~10 년)	
② 교사 자격양성 체계				
2-1. 현행 자격과 양성체계를 유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의 교원 자격을 획득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교육부
2-2. 0-5세 (영)유아학교 교원 정원, 자격, 처우 등에 관한 정책 연구 및 구체안 마련				교육부
2-3.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영아발달, 영아교육 및 지원 등 장애영아 관련 교과목을 신설				교육부
③ 기관 운영				
3-1.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영)유아학교 모델 강화				교육부
3-2. 영아학급 및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지원책 마련				교육부
3-3.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제도 개선				교육부 시·도교육청
3-4. 특수학급만의 방과후 과정, 긴급돌봄, 돌봄교실이 아닌 통합학급 영유아들과 함께 운영되는 형태 지향				교육부 시·도교육청
3-5. 연령별 유아특수교사 배치, 일반·특수 공동담임제 운영 (서울에서 ‘더공감교실’ 예시)				교육부
3-6. 기관장 자격 기준과 연수과정에 특수교육과정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 과정 포함				교육부 시·도교육청
3-7. 중도장애 영유아 담당 및 일과 중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배치				교육부 시·도교육청
④ 자원재정지원 체계				
4-1.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 지원의 균등화				교육부 시·도교육청
4-2. 0-2세 장애 영아 지원: 0-2세 장애영아 조기 선별 및 지원 업무 수행 경비 지원체계 마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4-3.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통일, 지도점검 동일 적용, 특수교육 관련 예산 각급 유치원에 교부시 목적사업비로 교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⑤ 행정 및 전달체계				
5-1.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대상자 선정 체계 일원화				교육부 시·도교육청
5-2. 장애조기선별과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교육부
5-3.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적검사, 추가검사 등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장애조기선별을 위한 진단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교육부
5-4.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지연의심아동에 대한 교육청 정보연계				교육부 시·도교육청

정책과제	추진시기			담당
	단기 (1-2 년)	중기 (5-6 년)	장기 (~10 년)	
5-5. 교육부-교육청 내 유아특수교육담당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시·도교육청
5-6.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교육부
⑥ 법제도				
6-1. 장특법에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기준 명시 필요				교육부
6-2. 장특법(제 19조 제2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 삭제, 의무교육 제도 재정비,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				교육부
6-3.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의 지위 명시				교육부
6-4.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법안 마련				교육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6-5.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진단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 인원 증가대비 행정인력 지원 필요				교육부 시도교육청
⑦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7-1.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중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활동 필요				교육부
7-2.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추진단에 유아특수 전문가 보완 및 포함				교육부
⑧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8-1.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제도화				교육부
8-2. 교육과정/IEP 수립연구 강화, IFSP 실행 근거 확보				교육부
8-3.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사용 지도서에는 반드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환경수정의 방안 포함				교육부
⑨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9-1.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 필요				교육부
9-2. 유아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앱 개발(인공지능 포함)				교육부
9-3.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교육부
(재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 시·도 자체 예산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청
(법령) 장특법, 유아교육법, 통합법 등 제·개정				교육부



참고문헌

- 강은진, 권미경, 박창현, 최윤경, 박혜원, 최일선, 이경옥, 김형미, 양성은, 김영아. (2022).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 실태조사 및 조기선별 도구 개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고인기. (2021).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비교연구**. 광주, 한국: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22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2b).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3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3b). **특수교육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3c). **유보통합 추진상황(2023. 11)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법 공청회 배포자료)**.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와. (2021).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발급 현황 (2011-2021년)**.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23).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방안(2023. 1. 30)**
- 교육부 아이행복연구자문단. (2023. 11).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 모델(안)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법 공청회 배포자료)**.
- 국립특수교육원. (2002). **미국의 특수교육: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전문요원 양성 연수보고서. 단행본.
- 김동일, 이주영, 안예지. (202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비로소, 서울대학교.
- 민혜진. (2000). **프랑스와 스웨덴의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고찰**. 서울, 한국: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나, 이승현, 권수진. (2022). **한국과 프랑스 교원양성체제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32(6), 47-83.

- 박은혜, 김명순, 신동주, 정미라 (2003). **세계의 유아교육제도**. 서울: 양서원.
- 박은혜, 장민영. (2014). 통합 요소별로 살펴본 8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현황 비교. **교육과학연구**, 45(1), 149-180.
- 박주원. (2021). 한국과 프랑스의 유아교사 양성제도 및 교육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JKEIA)**, 15(7), 107-123.
-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 (2021a). **장애아동 관련 실태조사 및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창현, 김근진, 김경희, 정유나. (2021b). **장애아동 종합통계 작성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혜미. (2018). 프랑스의 포용적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호(5), 5-16.
- 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 등록 현황(2013년 12월 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등록 현황(2014년 12월 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 등록 현황(2015년 12월 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6). 장애인 등록 현황(2016년 12월 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 등록 현황(2017년 12월 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 등록 현황(2018년 12월 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 등록 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 등록 현황(2020년 12월 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 등록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a).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 12월 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b). 2022년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a). 2023 보육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b).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내부자료).
- 서해정, 박경애, 이선화 (202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지표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석말숙, 최진희, 강정배, 우주형, 강지현, 최선아 (2022).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운영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비로소, 나사렛대학교.
- 손유진, 전윤숙. (2016). 일본과 한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양성 체제 분석. **일본근대학연구**, 54, 509-523.
- 신동주. (2015). 노르딕 국가의 ECEC제도 연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9(5), 73-99.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9. 27). CRC/KOREA/CP/5-6. para. 36.
- 윤두현(2023). ‘교원인가 아닌가?’ 불안한 유치원의 보건교사. **교육언론 창** (2023. 12.7일자)
- 이건희, 김정숙. (2013). 북유럽국가의 유아교육제도 비교: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7(1), 455-481.
- 이미선, 조광순. (2006). 미국의 특수교육 지원조직 관련 법규와 운영실태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2), 501-522.
- 정미라, 조희연, 안재진, (2009). **프랑스의 육아정책**.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탁현주, 박한숙. (2018). 한국과 일본의 유아교육제도 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0), 445-489.
- 통계청. (2023). 장애아전문, 통합 어린이집 현황. 대전: 통계청.
- 행정안전부. (201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행정안전부. (201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행정안전부. (201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행정안전부. (201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행정안전부. (201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행정안전부. (201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행정안전부. (201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행정안전부. (202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행정안전부. (202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 홍광식. (2011). 일본의 교원면허 갱신제 고찰.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6(1). 1-13.
- 황주희, 이하나, 김현승, 심석순, 최복천, 김용진, 김혜수, 김지민 (2022). **지역장**

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비로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hung Yuan Christian University. (2000). *Pre-service education program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Chung Li: Author.

English, J. M., & Kernan, G. L. (1976). The prediction of air travel and aircraft technology to the year 2000 using the delphi method, *Transportation Research*, 10(1), 1-18.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0). Opettajat ja rehtorit Suomessa 2019: Esija perusopetuksen opettajat. Opetushallitus.

Garvis, S., Lunneblad, J. (2018). Inequalities in Acces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Sweden. Deutsches Jugendinstitut. München, Germany.

Haug, K. H., & Storø, J. (2013). Kindergarten- a universal right for children in Norway.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7(2), 1-13.

Heikkilä, J., Hognestad, K., Kettukangas, T., Marit, B., Samuli, R. (2020). Review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as leaders in Finland and Norway-Governance and professionalism. Helsinki: EDUFI.

Hiilamo, H. (2009). Promoting children's welfare in the Nordic countries.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Finland.

Ho, H-K. (2014). Teacher preparation for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in Taiwan. Department of Education(.gov).

Kaga, Y., Barnett, S., & Barnett, J. (2012).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6(2), 1-20.

Kang, Y.-S., Lovett, D., & Haring, K. (2002). Culture and Special Education in Taiwan.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34(5), 12-15.

Kasprzak, C. (2020). A State System Framework for High-Quality Early

- Intervention and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40(2), 97-109.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Michelsson. K, & Byring, R. (1997). Early intervention in Filand. *Infant-Toddler Intervention*. 7(2). 133-139.
- Miller, P. S. & Staton, V. D. (2000). Recommended practices in personnel preparation. In S. Sandall, M. E. McLean & B. J. Smith (Eds). *DEC recommended practices in early intervention/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pp. 77-106. Reston, VA: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Ministry of Education. (1984). The Special Education Act. Taipei City: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1987). The regulations to register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recruit professionals. Taipei City: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02). Review principles for universities and colleges to apply for various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Taipei City: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0/2011). Education in taiwan. Taipei City: Author.
-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2014). *Kindergartens: Facts and analysis of kindergartens in Norway*.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Norway.
- OECD (2013). *Quality Matt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Norway 2012*. OECD Publishing.
- OECD. (2012/2013).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신동주·장혜진·이경옥 역).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 Staton, V.D., & McCollen, J. (2002). *Unifying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What Does the Research Tell Us?. Teacher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Teacher Education*

Division of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25(3), 1-25.
UNESCO. (2003). *Studies on higher education*. UNESCO. CEPES.

【참고 법령(안)】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9606호]
「유아교육법」[법률 제19737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법률 제14332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84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19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7954호]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9303호]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3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안, 2023. 11)

【참고 사이트】

한국보육진흥원,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3.do>에서 2023. 6. 29. 인출.

Government of Sweden. (2022). Statement of Government Policy. Stockholm Sweden.
<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9c187813e7b3488ea595c9e28e2411e5/statement-of-government-policy-2022-eng.pdf>에서 2023. 8. 30. 인출.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in Sweden (2023).
<https://www.skolverket.se/andra-sprak-other-languages/english-engelska#h-Nationalcertificationforteachers>에서 2023. 7. 7. 인출

<https://okm.fi/varhaiskasvatus>에서 2023. 7. 14. 인출

<https://www.skolverket.se/regler-och-ansvar/ansvar-i-skolfragor/extra-anpassningar-sarskilt-stod-och-atgardsprogram>에서 2023. 8. 30. 인출.



부록

부록 1. 1차 전문가델파이 조사지

장애영유아 분야 유보통합의 방향 설정과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지(1차)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장애영유아 분야 유보통합의 방향설정과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시 쟁점이 되는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유아특수 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지는 1차 조사지로 2회에 걸쳐 각 영역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조사지는 10월 3일까지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 subi0407@hanmail.net

필요하시다면 표의 칸을 추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고 만약 참고할 국내외 자료나 정보 등이 있으시다면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I. 영유아단계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방향 설정과 구체적 정책 제언을 위해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교사자격·양성체계/기관 운영/재원·재정지원체계/행정체계/법제도/정책 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중심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

(key point) 장애영유아 유보통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및 방향성을 기술 요망

3-5세 교육평등성 보장, 의무교육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현상 대응 등

비전, 아동의 이미지, 철학 등

필요성	방향(구체적으로 기술)
3~5세 유아 의무교육 사각지대 해소	

2. 교사자격·양성체계

(key point) 유특교사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제도 개선 관련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유특교사 자격 취득 방법, 경력인정 등 양성체계의 개선방안(0-5세 영유아교사 자격 또는 현행유지, 또는 일부 개선)에 따른 유특교사양성체계의 변화 방안 등
특수보육교사와 같은 새로운 트랙의 자격양성이 필요한, 필요하지 않은 이유 등
유특교사 정원 문제, 또는 보조교사 확보 문제 등

정책영역	방향 및 정책 개선방안

3. 기관 운영

(key point)장애통합,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기관운영 모델을 위한 제안
유아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통합학급 등)의 다양성 및 유형통합 등
의무교육 제도 하에 공공성 강화 방안
운영시간, 기관장 자격, 기본과정/방과후과정 운영방안 및 개선점 등
학급당 유아 수, 보조인력 지원 등
(영)유아학교/영유아학교 또는 제3의 모델 등
0-2세 학교제도 내 교육과 보육

정책영역	방향 및 정책 개선방안

4. 자원·재정지원체계

(key point)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세수가 줄고, 교부금 전체 파이가 줄고 있음) 하에
재원 확보 등 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시 고려할점

정책영역	방향 및 정책 개선방안

5. 행정체계

(key point) 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시 고려할점(보건, 복지, 여성 분야와의 통합적 관점)(장애조기선별 등 시스템 구축)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의 역할 정립 등
시군구 지자체 - 지역교육청 연계시 특수교육대상자 행정지원 관련 방안 등

정책영역	방향 및 정책 개선방안

6. 법제도

(key point) (가칭) 통합법, 장특법, 장복법과의 관계성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

정부조직법 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에 관한 의견 등

정책영역	방향 및 정책 개선방안

7.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key point) 유보통합정책결정과정에서의 소통, 참여의 문제해소방안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 자문단, 정책연구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등의 역할과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등(위원회 구성, 대표성,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배제단체, 혐오와 차별, 혐오 비존중의 문제 등)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부문 의견 상대적 소외 문제 등

정책영역	방향 및 정책 개선방안

II.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

1.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또는 이와 연동한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환경에 대한 개선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의견 요망

정책영역	방향 및 정책 개선방안

2. 디지털 인프라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의견 요망

인프라 구축, 초중등과의 연계, 운영 및 자금, 법제도, 기준 등

정책영역	방향 및 정책 개선방안

*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

- 성명:
- 소속기관:
- 관련분야 경력: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지는 다음 이메일(subi0407@hanmail.net)로 보내주십시오.

부록 2. 2차 전문가델파이 조사지

장애영유아 분야 유보통합의 방향 설정과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지(2차)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장애영유아 분야 유보통합의 방향설정과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시 쟁점이 되는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유아특수 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지는 2차 조사지로 2회에 걸쳐 각 영역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조사지는 10월 10일까지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ubi0407@hanmail.net, 연구자 카톡 계정). 조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 subi0407@hanmail.net

본 조사의 응답 결과가 연구 보고서에 활용될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10월 일 성명 : (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정책영역별로 개선(안)에 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에 숫자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또한 추가 및 수정보완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선(안)의 각 항목 아래에 추가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1) 2) 3) 4) 5)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예시) 3~5세 유아 의무교육 사각지대 해소	5	4

I. 영유아단계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방향 설정과 구체적 정책 제언

▷ 다음은 영유아단계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방향 설정과 구체적 정책 제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위 정책영역별로 개선(안)에 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에 숫자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또한 추가 및 수정보완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선(안)의 각 항목 아래에 추가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보통합의 필요성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1) 2) 3) 4) 5)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법적 당위성 실현/국가책무성 강화	5	
2) 장애영유아의 교육권/교육평등성 보장(교육기본법, 특수교육법, 장특법 등) -기관 격차 없는 장애영유아 기본권/권리보장		
3) 교육-보육-특수 분야 공공성 강화		
4) 장애영유아의 공교육 확대 및 정착지원(국공립 기관 신증설 등)		
5) 저출산 문제 해결(기관통합 질 제고)		
6) 생애주기별 장애영유아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7) 특수교육대상자/발달지연아동 증가		
8) 의무교육기반 장애-비장애 완전통합형 체제로 개편		
9)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발달지체 영유아와 장애위험 영유아의 증가)		
10) 양질의 교육보육 인프라, 인력 확충		
11)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		
12) 다양성 교육/인간 존중 통합교육 실행		

1-1. 보완 또는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2. 유보통합의 방향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1) 2) 3) 4) 5)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영유아 실태조사(통계자료) 통합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2) (부처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차별 해소(치료지원비, 통학비 등)		

3) (부차이원화 문제해결) 유치원-어린이집 초등수요조사 및 입학유예자 문제 해결		
4) (연령 이원화) 0-5세 교육부 체제 내, 0-2세 보육, 3-5세 교육으로 연령별 이원화		
5) (연령 일원화) 0-5세 교육부 체제 내, 0-5세 통합형태의 교육체제 일원화		
6) (연령 이원화) 0-2세 복지부, 3-5세 교8부 연령별 이원화		
7) 국공립 수준의 모든 영/유아를 위한 학교체제 마련(영유아학교/(영)유아학교)		
8) 사립 특수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형 제도 시행		
9) 유보통합이 되면 일반 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이 되어야 하며 유아교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의 적용 필요		
10) 초중등과의 연계 강화, 생애주기별 제도 마련		
11) 유치원(유아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12) 사립 기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법인화		
13) 기관 미이용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모든 영유아 포용)		
14) 일반아 중 발달지연 유아에 대한 유아특수교육과의 협력적 지원 강화		
15) 이원화 체제 하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0-2세, 유아특수교사 3-5세 담당하다가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특교사 자격을 획득하게 서서히 전환		
16) 교권, 인권이 모두 존중되는 학교시스템 구축		

2-1. 보완 또는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3. 교사자격·양성체제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자격, 양성, 정원 방향		
1) 4년제 유아특수교사 자격, 양성체계는 현행 유지 (별도의 교사양성기관을 마련하기보다 현재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이 합의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		
2) 4년제를 기준으로 관련학과 중심으로 통합 필요(장애영유아보육과 3년제→ 4년제)		
3) 유아특수교사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영아 발달, 영아교육 및 지원 등 장애영아 관련 교과목을 신설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

4) 유아특수교사양성대학 확대를 통한 정원 확보/지역간 유아특수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		
5) 현직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들의 자격연수를 통해 유특교사의 정원 확보 가능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한시적인 학과(특수교육 교원양성관련) 설치가 필요		
6)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양성 체계는 발달지연과 장애유형별 특수교육전문화 과정 등을 강화		
7) 유특교사들도 일원화 체계(0~5세)로 기관이 운영될 경우, 장애영유아 가족 심리 및 지원 체계, 보육 관련 보수교육을 시행(양성과정, 현직과정에서 이수)		
8) 4년제에서 “융합전공(보육+유아교육)” 과정 개설, 평생교육 대학(교육부)에서 재직자를 위한 학위과정을 통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과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통로 개설 -직전교육기관(대학)에서 수강했던 과목을 인정하고 전공과 교직과목을 추가하여 수강하게 함(단, 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사이버대학 등에서의 학점은 제외)		
9) 장애영유아교육의 질제고를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유아특수교사의 처우개선을 통일(급여, 퇴직금, 연금 등)		
10) 중도중복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진학 및 지원제도 마련 필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제도 개선(특수보육교사 제도 신설 등)		
11) ‘특수보육교사’ 자격 신설 및 양성(3~4년제/학과제 도입) -교대 학제개편에 따른 교사 재교육시스템 적용, 공무원 입직 경로 제도 적용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5년이상인자 특별직무과정 연수후 특수보육교사 자격 부여		
12) 유보통합에 적합한 교사 자격 명칭 변경(유아특수교사를 (영)유아특수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영유아)특수보육교사로 명칭 변경)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1급(실무경력 5년), 2급		
13)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 강화 취득교과목 추가, 실습과 대면과목 추가		
14) 유보통합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돌봄/방과후/0~2세 보육 지원 차별화 현재 교육부 통합지원교사 존재(교원자격증 가진 자)		
15)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경우, 4년제, 3년제, 2년제를 기준으로 경력에 따른 호봉 책정/연수기간 이수 후 소급 적용을 원칙		
보조교사 제도		
16) 특수교육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원)의 자격 기준 상향 필요		
17)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 중 일정 보수교육을 통한 특수교육보조인력(특수교육실무원) 전환		
18) 모든 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지금의 실무사와 같은 보조인력보다 전문적인 통합교		

육지원교사가 필요		
19) 현행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활용,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 자격 획득 방법		
20) 유아특수교육과 학부 재입학/편입학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한 자격 획득 (지역별 유아특수교육과가 없는 경우, 방통대 유아특수교육과 신설 가능,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경력인정으로 실습기간 단축 가능)		
21) 현직 근무교사, 올해 또는 내년 졸업예정자의 경우, 유특전공 교육과정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격연수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동안 과목을 이수)		
22) 장애아어린이집(장애전문, 장애아통합)에서 3년/5년 이상 장애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경력 교사에게는 보수교육(자격 연수 시스템) 마련을 통한 자격 획득		
23) 장애아어린이집(장애전문, 장애아통합)에서 3년/5년 이상 장애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경력 교사에게는 국가시험 제도 마련을 통한 자격 획득		
24) 장애아어린이집(장애전문, 장애아통합)에서 3년/5년이상 장애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경력 교사에게는 국가시험 + 보수교육(자격 연수 시스템 제도 마련을 통한 자격 획득		
25)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서 장애유아를 위해 헌신한 부분은 인정하나, 교사로서의 경력을 인정받는 시점은 교사 자격 취득 후부터 가능 -단, 교육부에 소속된 교원이 타업종의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교원이 될 경우 그에 준한 경력을 인정		

3-1. 보완 또는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4. 기관 운영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1)	2)	3)	4)	5)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기관유형 및 신설										
1) 현행 체제 유지(유치원-어린이집-유아특수교육기관)하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										
2) 영유아학교 유형으로 정비 - 유아특수학교: 유아반, 영아반 운영 - 일반 유치원(유아학교) 특수학급(유아반, 영아반) - 일반 유치원(유아학교) 통합학급(유아반, 영아반)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

3) 중증장애영유아 및 특수학급이 없는 기관 대상 특수교육대상 유아 순회교육 확대 (재택순회를 제외하고 주3회 분리형 순회교육 지양)		
4) 장애영유아특수보육기관 유형으로 정비 - 장애전문어린이집: 유아반, 영아반, 초등 방과후반 운영 - 장애통합어린이집 특수학급(유아반, 영아반) - 장애통합어린이집 통합학급(유아반, 영아반) - 영아 전문 어린이집		
5) 연령별 통합학급/완전통합 유아학교 모델 강화		
6) 현행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운영 모델 기반으로 완전통합 모델 필요(치료사 배치)		
7) 병원학교 형태의 학급 신설 (낮병동 이용 장애영유아 고려)		
0-2세 장애영아		
8) 0-2세 장애영아 학교제도에하에 보육 중심 개편		
9) 영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 후 교육 제공 필요		
10) 장애영아, 장애유아 연령별 이원화 체제로 발달적 지원 전문화		
11) 영아 교육기관 확대(특수학교 영아학급 설치 등)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0-2세 학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12) 영유아학교에 영아를 위한 교육과정, 교실구성, 시설설비 등 환경 조성		
13) 영아학급 및 영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지원책 마련 - 현재 영아학급 영아교실 설치 및 배치에 대한 근거만 있음		
운영시간		
14) 긴급, 아침, 저녁 돌봄 필요 가정 지원		
15) 장애영유아 부모 근로시간 감축 지원		
16)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부모의 요구를 반영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17) 기존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의 방과후과정 제도 개선(지원인력 지원, 방학 등원, 긴급돌봄 등 돌봄운영시간 최적 지원 등)		
18) 장애영유아 출석 인정 여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최소기준 등 공통의 일관된 규칙이 필요 -외부치료 등 타기관 서비스를 받고 오후에 등원하거나 주기적으로 방과후 과정에 결석이 많음		
19) 특수학급만의 방과후 과정, 긴급돌봄, 돌봄교실이 아닌 통합학급 영유아들과 함께 운영하는 형태를 지향		
교직원 배치/운영		
20) 연령별 유아특수교사 배치		
21) 유치원 기관장 자격증에 적합하도록 어린		

이집 관리자 자격증의 상향 필요		
22) 일반·특수 공동담임제 운영(서울에서 더 공감교실 예시)		
23) 기관장(관리자) 외에 교사에서 관리자 승진을 위한 경력인정 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과 유아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에는 차등 필요		
24) 교육부에서 일원화할 경우 기관장 자격은 유아특수학교 교장, 교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		
25) 기관장 자격기준에 특수교육과정 및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이해 과정 포함 필요		
26) 중도장애 영유아 담당 및 일과 중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간호사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배치 필요 - 보건소 연계, 지역사회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연계 체계를 마련, 교육청에서 채용한 순회형태의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		
27) 교사의 연구 및 교재교구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예. 8시간 근무 중 4시간 교육, 4시간 연구시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개편		
28)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기준으로 운영하며 유아특수교사 선발/배치 의무화		
29)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을 장애영아 보육전담으로 특화		
30)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기준으로 운영하며 파견형 순회교사(유아특수교사) 배치(단, 주3회 분리형 순회교육 지양)		
31)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고 관련 장비를 갖추어 건강장애 영유아를 위한 병원학교로 운영.		
32)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의 경우 무장애 공간으로 시공 후 지체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로 운영		
33)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의 경우 매입형으로 전환하여 임용으로 선발된 유아특수교사 배치		
34) 기존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의 경우 긴급 돌봄, 지역형 방과후 교실, 거점 치료실(언어/감각/체육 등)로 활용.		
학급당 영/유아수 및 보조인력		
35) 학급당 유아수 조정(3:1→2:1, 1:1), 보조인력 1명 지원		
36) 기저귀 착용, 공격행동, 자해행동이 있을 경우 중증으로 간주하여 학급당 유아 수를 줄여주거나 보조인력 배치		

4-1. 보완 또는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5. 재원·재정지원체계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1)	2)	3)	4)	5)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 재정 지원의 균 등화 -장특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 수행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										
2) 0~2세 장애 영아 지원 -0~2세 장애영아 조기 선별 및 지원 업무 수행 경비 지원체계 마련										
3) 상향적 유보통합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특수교육재정) 확보 필요 -지방교육 및 복지재정 교부금을 통한 장애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정확보										
4) 지원금 미지급 규제 마련 -에듀파인 및 나이스 미도입, 감사거부 기관										
5)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통일, 지도 점검 동일 적용 등										
6) 특수교육 관련 예산의 각급 유치원에 교부 시 목적사업비로 교부 - 다른 용도로 유용되지 않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하게 활용										
7)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장애영유아교육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려우므로 민간과 공동으로 지원을 확대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장애영유아교육 지원을 유도하고, 장애영유아교육에 대한 기부금을 세액공제하는 등										
8) 교육세 인상 등 세수의 추가 확보										

5-1. 보완 또는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6. 행정 및 전달 체계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1)	2)	3)	4)	5)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장애조기선별시스템 구축										
1) 특수교육 및 보육 지원대상자 선정 체계 일원화 -특수교육대상자/장애 영유아 보육 대상자 선정 절차, 진단 및 평가 시스템 구축										
2) 장애조기선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유아학교 입학 전 풀배터리 검사 의무화 -풀 배터리 (full battery) 검사: 아이의 정서, 사회성, 대인관계, 자기 지각, 가족										

관계, 주의력, 지적 발달 수준, 사고방식,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종합심리 검사		
3) 장애조기선별과 조기중재 및 유아특수 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4)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유아특수교사 진단평가 담당자를 두고 장애조기 선별을 위한 '찾아가는 진단평가' 프로그램 운영		
5)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적검사, 추가검사 등 의사의 결정이 있다면 장애조기 선별을 위한 진단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6)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지연의심아 등에 대한 교육청 정보연계		
지원센터/지자체-지역교육청/교육부-교육청/부처간 통합 연계		
7) 통합형 유아특수교육지원센터 구축 (모든 영유아 대상 건강, 교육, 양육, 사회보장, 선별 진단, 치료/재활, 가족 지원, 교육연수, 영아 조기선별, 기관연계 등의 복지, 보건, 여성, 교육 분야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		
8) 교육청 및 지자체 인력 연계 통합 -지방자치단체(226개)와 지역교육지원청(176개) 간의 관할 구역 불일치 해결 방안 마련 -시군구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행정지원을 공유하고 점차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9) 종합지원 체계를 위한 허브 필요 - 유아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모든 영유아 대상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 - 또는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 중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게 허브 기관을 정하고 허브 기관의 담당자를 정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역할 정립 및 분담		
10)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의 역할 정립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각 구별로 설치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청의 전반적인 교육과 양육지원 업무 -장애아동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11) 교육청의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내 유아교육 담당을 모두 유아교육과로 확대배치. 국립영유아교육원(가칭)을 신설하여 중심으로 교원연수, 보수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국립영유아교육원을 본부로 하고 각 교육청과 육종 등의 분담을 통해 현재의 시스템을 통한 현장지원을 함		
12) 장애영유아와 일반유아의 학비를 모두 유아학비로 지원하는 법 제도가 필요 -현재 서울, 대전, 부산 등 일부 지역에 서만 장애영유아의 학비를 무상교육비,		

일반 유아의 학비를 유아학비로 분리지원. 이에 각종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 교재교구 구입비, 급식비 등을 이중 지출하는 행정업무의 번거로움이 있음.		
13) 유아특수교육행정담당 전문직 구성 (복지시스템과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시 교육청의 특수교육과에 유아특수교육 행정담당 장학사 등의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성)		
14) 교육부내 유아교육정책과/국립특수교육원/지역교육청에 유아특수담당 전문인력 연구사 배치 또는 특수교육정책과에 유아특수담당 전문인력 연구사 배치		
행정 시스템 전문화		
15) 4세대 나이스의 오류 해결 및 유아특수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보완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개별화교육계획 연동, 장애영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 생활기록부 등 등록 관리)		
16) 어린이집 정보공시 장애 영유아를 위한 항목 추가		
17) 특수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현재 진단평가 접수, 결과지 출력의 기능, 이름검색 불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엑셀로 명부관리 중)		

6-1. 보완 또는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7. 법제도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1)	2)	3)	4)	5)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현행유지/기존제도개선										
1) 새로운 통합법 신설 보다 장특법과 장복법의 개정 필요										
2) 장복법의 장애유아 초등입학 5년 유예 조항 삭제										
3) 장특법의 특수교육대상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을 명시 필요										
4) 장특법(제 19조 제2항) 의무교육 간주 조항 삭제, 의무교육 제도 재정비,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										
5) 장특법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이용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동등한 교육받을 권리 지원 조항 신설										
6) 장특법 개정안 통과로 급당 학생 수 감축과 다양한 형태의 치료지원 강화										
7) 유아교육법 내 유아특수교사의 지위 명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양자에 모두 자										

격기준을 명기)		
8)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과밀학급인 경우, 특수학급을 신증설 법안 마련		
9) 어린이집 이용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 필요 (초등입학유예자 양산) -유보통합 이후에는 취학유예 아동은 의무교육 취학을 해야하는 것인지 취학유예 아동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통합법 마련시		
9) 장애인 교육 및 보육의 개념 정립 -교육 및 보육의 통합인지 또는 병합적 개념인지 정립		
10) (가칭) 통합 영유아교육법을 만든다면, 유아특수, 장애영유아 근거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특수교사의 정의 및 배치, 교육과정(IEP), 진단평가, 재활관련서비스, 행정지원 기타 등 법 규정 정리		
정부조직법 개정		
11) 현행 발의된 개정안(이태규 법안)에 동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교육부와 사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		
12) 현행 발의된 개정안(이태규 법안)에 반대 및 수정필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서 교육부에 영유아 보육의 사무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 필요		
1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진단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 증가 대비 행정인력 지원		
14) 기존 지자체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서서히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포함)		
15) 현행 발의된 개정안(전주혜, 조경태 법안/교육부장관 시행령)에 동의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지방재정교부금 사용을 위한 법 개정 필요		
16) 현행 발의된 개정안(전주혜, 조경태 법안/교육부장관 시행령)에 반대 및 수정 필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교육기관과 교육제도 운용을 위하여 쓰여야 할 지방교육재정을 어린이집에 쓰이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과 충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도 위반되므로 개선 필요		
17) 지원금 제공과 함께 회계투명성 보장을 위한 법제화 필요		

7-1. 보완 또는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8.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1)	2)	3)	4)	5)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유보통합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소통, 참여 문제										
1) '감각이 유보통합', '답정너 유보통합'이 아닌,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대중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홍보 활동 필요										
2) 토론회 이후 토론회 자료 탑재, 요약정리, YouTube 생중계 진행 시 핵심 편집 요약 등 참여자의 접근이 용이한 콘텐츠 제작 필요										
3)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토론회가 필요										
4) 법적으로 무상 및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 및 간담회 필요										
5) 선도교육청의 경우 공개토론회와 YouTube 생중계 진행을 지향하도록 하고, 해당 시간 내에 참여하지 못하는 핵심관계자들(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										
6) 유아특수교육 현장의 소리를 듣는 정책 입안 필요(설문조사, 협의회 등에서 배제)										
7) 교육부와 선도교육청 유보통합 TF팀에도 유아특수교육 현장 경험이 있거나 현장에서 근무 중인 유아특수교사가 포함 필요 (대부분의 선도교육청 유보통합 TF팀에서는 유아교육 장학사 또는 특수교육 내 특수 초·중등(타전공) 장학사들이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										
8) 일부 단체나 학회 등의 집단화된 이익주장 교사 비방/혐오 발언 제재,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필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 자문단, 정책연구기관 의사결정과정 및 구성/대표성의 문제점										
9) 유보통합 추진위 회의록의 빠른 시일 내 공개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10) 3차 유보통합 추진위 회의에서 일방적인 심의를 추진·의결한 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표명 필요 (16명 중의 6명의 반대 의견에 대한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사후처리 필요)										
11) 교육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에 유특 전문가 포함 (유보통합 추진위에 유특 현장교사와 유특전문가(장학사, 연구사, 교수), 학부모의 정책위원으로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요구됨)										
12)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교육, 유아특수 전문가 보완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음)										
종합지원 체계를 위한 허브/컨트를 타워										
13)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아특수 현장을 잘 파악하고 대변할 수 있는 유아특수교육의 컨트를 타워 구축 -교육부, 지역 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모두										

해당 기능을 수행할 인력이 부재(서울시 교육청-유아특수장학사 선발/국립특수교육원-유아특수교사 출신 연구사가 있음에도 유보통합, 유아특수교육과 관련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14) 특수 초·중등(타전공) 장학사들이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하기보다 유아특수 전공 장학사 배치 필요		

8-1. 보완 또는 이외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9. 기타

그밖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II.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

▷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위 정책영역별로 개선(안)에 대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에 숫자표시를 해주십시오. 또한 추가 및 수정 보완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선(안)의 각 항목 아래에 추가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또는 이와 연동한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환경에 대한 개선 사항

내용	중요도					실현가능성				
	1)	2)	3)	4)	5)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누리과정 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명칭 변경										
2) 누리과정 개정 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3) 누리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장애영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자료의 개발과 관리 필요 -중도중복, 감각장애, 심각한 공격 및 자해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 누리과정의 적용이 어려움.										
4) 현재 발간된 국립특수교육원의 참고자료를										

대신할 조금 더 전문적인,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발		
5) 유아특수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IEP 수립 연구 강화 및 정책적 활성화		
6) 유니버설 디자인의 철학이 교육내용과 방법에 포함, 교사용 지도서에는 반드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수정과 환경수정 방안 포함		
7) 장애영유아들의 놀이시간 확보가 제일 시급		
8) 누리과정 안에서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정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내용 추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포함		
9) UDL(보편적 학습 설계)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고려		
10) 0-2세 아동과 중복장애 영유아를 위한 기본교육과정과 같은 기본누리과정(가안) 개발		
11)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영역별 삽화 자료등이 포함된 놀이자료의 개발		
12) 현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장애영유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 마련		

2.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내용	중요도	실행가능성
	1) 2) 3) 4) 5)	1) 2) 3) 4) 5)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전혀그렇지않다 보통 매우그렇다
1)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지원(장애영역별, 정도별, 특성과 흥미별 맞춤형 개별수업 중심)		
2) AI 도입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장애영유아 지원 확대		
3) 공간에 대한 부적응 해결을 위해 VR체험을 통한 교육 접근 필요		
4) 유아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디지털 기기 및 앱 개발(인공지능 포함)		
5)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공학기기 개발		
6) 특수교육 플랫폼 구축 -특수교육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발 -교육주체 참여 가능한 플랫폼 구축		

3. 기타

그밖의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3.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연구 델파이조사 전문가 명단

구분	이름	소속	구분	이름	소속
1	이00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1	김00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
2	김00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과 교수	22	강00	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3	박00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23	원00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영유아보육과 명예교수
4	박00	백석대 유특과 교수	24	김00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
5	권00	삼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특교사	25	김00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6	황00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	26	배00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교수
7	정00	서울시교육청 유아특수 장학사	27	최00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특수과교수
8	심00	국립특수교육원 유특교사	28	고00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9	강00	광주여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겸임교수	29	김00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10	정00	공주대 강사	30	최00	경민대학교 아동보육과 겸임교수
11	김00	전주 유화학교 유특교사	31	조00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
12	정00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정책실장	32	김00	베다니 어린이집 원장
13	이00	전교조 특수교육 사무국장	33	권00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14	박00	백석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34	이00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교문
15	김00	전국유아특수교사협의회 회장	35	류00	부암어린이집 원장
16	오00	청주혜화학교 유아특수교사	36	김00	부평맑은내 어린이집 원장
17	김00	제천용두초병설유치원 교사	37	조00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18	이00	청주 오름빛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연합회 회장	38	윤00	개구리어린이집 원장
19	최00	부산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39	박00	꿈고래어린이집 원장
20	박00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40	구00	서호 어린이집 원장

장애영유아 국가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